

2018년도 4/4분기

자체 감사결과 보고

2019. 2. 25

감사위원회

1. 출연 및 직영병원 특정감사

감사배경 및 목적

- 2017년 감사기본계획에 따라 서울의료원과 직영병원인 어린이병원·은평병원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개선방향을 마련하기 위함

추진내용

- 기 간 : 2017. 8. 28.(월) ~ 10. 25(수) 【기간 중 30일】
- 대 상 : 3개 기관 (출연기관 1, 직영병원 2)
 - 서울의료원, 어린이병원, 은평병원, 시민건강국(보건의료정책과)
- 내 용 : 2014. 1월 이후 처리한 업무 전반
- 인 원 : 감사2팀장 등 8명(공익감사단 3명 포함)
 - ※ 공익감사단(세무사, 회계사, 노무사)과 합동 감사 실시로 민관 협치 구현

감사중점

- 일반행정(조직·인사, 직원채용 등)업무처리 적정여부
- 예산·회계분야 적정 처리여부
- 환자 관리 및 진료비 청구·수입 처리 적정 여부
- 의료기기·의약품 통합구매 및 관리 적정여부 등

지적사항 총괄

(단위 : 건, 천원, 명)

합 계			변상 (금액)	징계 (인원)	시 정 (금액)				주의 (인원)	개선	권고	통보	고발 (인원)	모범사례 (인원)
총건수	신분상 조치(인원)	재정상 조치금액			소계	추정 (환수)	감액	기타						
75	80	3,904		2	11	4		7	37		9	15		1
				(3)	(3,904)	(3,904)			(75)					(2)

□ 감사결과 처분요구 내역 및 조치현황 (2018.10.26.현재)

연번	처분요구 제목	처분유형	조치현황	비 고
1	진료미수금 관리업무 소홀 및 진료비 감면제도 운영 부적정(서울의료원)	통징주	보계의 조치 완료	- 서울의료원 원무팀-3326(2018.8.21.): 미수금 관리 개선방안 수립 - 서울의료원 원무팀-6523(2017.12.22.): 수가규정 개정 - 서울의료원 총무팀-15180(2018.8.6.): 신분상조치
2	직원에 대한 근무평정 및 성과급 지급 부당처리(서울의료원)	통	보 조치 완료	- 서울의료원 총무팀-19838(2018.10.11.): 직원성과급 환수청침 수립
3	의무기록 관리업무 소홀(서울의료원, 은평병원)	통주	보의 조치 완료	- 서울의료원 미비 의무기록 작성완료(2017.11.30.) - 은평병원 미비 의무기록 작성완료(2018.7.11.) -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8730(2018.6.11.): 신분상조치 - 서울의료원 총무팀-15180(2018.8.6.): 신분상조치
4	의료장비 활용 부적정(은평병원)	권(기관경고)	고 조치 완료	- 은평병원 진료부-4396(2018.10.17.): 장비심의위원회 개최, 양여 및 인력 충원 계획 수립
5	공문서 임의 작성 및 행사(어린이병원)	징주	계의 조치 완료	- 어린이병원 진료부-7918(2018.8.1.): 복무관리교육 실시 -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8730(2018.6.11.): 신분상조치 완료
6	임상연구과제 선정·관리 부적정(서울의료원, 어린이·은평병원, 보건의료정책과)	권통주	고보의 조치 완료	- 서울의료원 의학연구소-434(2018.4.19.): 임상연구 과제평가계획안 수립 - 어린이병원 진료부-3272(2018.3.5.): 임상연구 운영개선계획 수립 - 은평병원 진료부-657(2018.2.5.): 임상연구 운영개선계획 수립 -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11145(2018.4.9.): 시립병원 임상연구 개선 추진계획 수립 -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8730(2018.6.11.): 신분상조치 - 서울의료원 총무팀-15180(2018.8.6.): 신분상조치
7	임상연구비 지급에 대한 원천징수 업무처리 부적정(서울의료원, 어린이병원, 은평병원)	시주	정의 진행	- 서울의료원 의생명윤리위원회-254(2018.5.24.): 임상시험연구비 관리지침 수립 - 어린이병원 진료부-7917(2018.8.1.): 임상연구 원천징수 개선 결과보고 - 은평병원 진료부-3779(2018.8.3.): 임상연구비 소득세 수정신고 안내 -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8730(2018.6.11.): 신분상조치 - 서울의료원 총무팀-15180(2018.8.6.): 신분상조치
8	휴가 사용 부적정(어린이병원)	주	의 조치 완료	- 어린이병원 진료부-5696(2018.5.11.): 휴가 및 복무 관리 교육 실시 -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8730(2018.6.11.): 신분상조치
9	겸직허가 관련규정 미준수(서울의료원, 은평병원)	통주	보의 조치 완료	- 서울의료원 총무팀-1644(2018.1.26.): 겸직허가 신청 및 승인관련 내용 및 서식 통보 - 은평병원 원무과-13712(2018.10.24.): 관련규정 교육 -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8730(2018.6.11.): 신분상조치
10	외부강의 관련 규정 미준수(서울의료원, 어린이병원, 은평병원)	시통주	정보의 조치 완료	- 서울의료원: 2018.7.4. 행동강령 교육 실시 및 외부강의 대가 초과분 반환완료 - 어린이병원 진료부-7511(2018.7.18.): 외부강의 규정관련 교육 실시 및 출장비 중복수령 금액 환수 - 은평병원 원무과-10116(2018.8.6.): 외부강의 규정 업무처리 준수 교육 및 초과수령금액 반환 완료 -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8730(2018.6.11.): 신분상조치

연번	처분요구 제목	처분유형	조치현황	비 고
11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업무 부적정(서울의료원, 은평병원)	통 보	조치 완료	- 서울의료원 : 2018.7.3. 전산프로그램구축(처방시 보험 인정기준 자동설정완료) - 은평병원 원무과-10111(2018.8.6.):요양급여 기준 심사기준 관리계획 수립
12	채용 재공고 부적정 (어린이병원, 은평병원)	통 주	보 의 조치 완료	- 어린이병원 원무과-10515(2018.8.9.) : 담당직원 특별 교육 실시 - 은평병원 원무과-13712(2018.10.24.) : 담당직원 특별 교육 실시 -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8730(2018.6.11.) : 신분상조치
13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위원회 구성 부적정 (서울의료원, 은평병원)	주 의 (기관주의)	조치 완료	- 서울의료원 계약심사팀-3356(2018.8.3.) : 관련규정 준수 및 교육 실시 - 은평병원 원무과-13712(2018.10.24.) : 관련규정 교육실시
14	시 비급여수가 위원회 승인 절차 미준수 및 지도감독 업무 부적정(어린이병원, 은평병원, 보건의료정책과)	주 의	조치 완료	- 어린이병원 원무과-10609(2018.8.10.) : 담당직원교육 실시 - 은평병원 원무과-13712(2018.10.24) : 담당직원교육 실시 - 보건의료정책과-23805(2018.7.31.) : 서울시 비급여 수가 심의위원회 개선방안 수립 -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8730(2018.6.11.) : 신분상조치
15	대기환자 해소 등 의료인력 관리소홀(어린이병원, 은평병원)	통 보	조치 완료	- 어린이병원 진료부-7988(2018.8.2.) : 대기환자 감소방안 수립 - 은평병원 진료부-773(2018.2.12.) : 대기환자 감소방안 수립
16	외래환자 진료예약 프로그램 구축·운영 및 진료시간 준수 부적정(어린이병원)	시 주	정 의 조치 완료	- 어린이병원 진료부-7813(2018.7.30) : 진료예약 프로그램 재구축 및 진료시간 준수 계획수립 -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8730(2018.6.11.) : 신분상조치
17	어린이병원 병원학교 운영 부적정(어린이병원)	통 보	조치 완료	- 어린이병원 진료부-7922(2018.8.1.) : 새로운 형태의 교육제공 모델 설계 검토 수립
18	세입·세출외 현금 관리 부적정(어린이병원)	주 의	조치 완료	- 어린이병원 원무과-10515(2018.8.9.) : 담당직원교육 실시 -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8730(2018.6.11.) : 신분상조치
19	가족수당 및 자격수당 지급 부적정(어린이병원)	시 주	정 의 조치 완료	- 어린이병원 원무과-10609(2018.8.10.) : 담당직원교육 실시 및 부당지급 수당 환수 -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8730(2018.6.11.) : 신분상조치
20	수의계약 업무처리 부적정 (어린이병원)	주 의	조치 완료	- 어린이병원 원무과-10515(2018.8.9.) : 담당직원교육 실시 -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8730(2018.6.11.) : 신분상조치
21	추가합격자 결정 부적정 (은평병원)	통 주	보 의 조치 완료	- 은평병원 원무과-13712(2018.10.24) : 담당직원교육 실시 -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8730(2018.6.11.) : 신분상조치
22	공공기록물 관리소홀 (은평병원)	주 의 (기관경고)	조치 완료	- 은평병원 원무과-13712(2018.10.24) : 담당직원교육 실시 -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8730(2018.6.11.) : 기관경고
23	직원 복무관리 부적정 (은평병원)	주 의	조치 완료	- 은평병원 원무과-13712(2018.10.24) : 담당직원교육 실시 -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8730(2018.6.11.) : 신분상조치
24	공유재산 임대료 세입 예산 편성 및 수입처리 부적정 (어린이병원, 은평병원)	주 의 (기관주의)	조치 완료	- 2018.8.8. 어린이병원 임대수입 적정 세입예산과목편성 완료 - 2018.8.8. 은평병원 임대수입 적정 세입예산과목편성 완료
25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집행 부적정(은평병원)	주 의	조치 완료	- 은평병원 원무과-13712(2018.10.24) : 담당직원교육 실시 -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8730(2018.6.11.) : 신분상조치
26	수의계약 업무처리 부적정 (은평병원)	주 의	조치 완료	- 은평병원 원무과-13712(2018.10.24) : 담당직원교육 실시 -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8730(2018.6.11.) : 신분상조치

연번	처분요구 제목	처분유형	조치현황	비 고
27	공무 국외여행 관련 절차 미이행(은평병원)	시 주 권	정 의 조치 완료	- 은평병원 진료부-10846(2017.12.14.) : 항공료차액 반납 -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8730(2018.6.11.) : 신분상조치
28	수당 등 부가급여 지급 업무 처리 부적정(서울의료원)	권 시 주	고 정 의 조치 완료	- 서울의료원 총무팀-15342(2018.8.7.) : 상위직 관리자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 중단 및 부당지급된 부가급여 환수완료 - 서울의료원 총무팀-15180(2018.8.6.) : 신분상조치
29	징계처분자 보수규정 부적정(서울의료원)	통 보	조치 완료	- 서울의료원 총무팀-19882(2018.10.11.) : 징계처분자 실효성확보를 위한 보수규정 개정 완료
30	퇴직급 관련 보수규정 부적정(서울의료원)	권 고	진 행	- 내부검토 및 노조와 협의중
31	연·월차 보전수당 지급 부적정(서울의료원)	권 고	진 행	- 휴가, 휴직제도 개선예정 - 휴가, 휴직제도 개선 노사 TF 구성 : 2017.12.28. - 장기 연차수당 관련 논의 노사 TF 구성 : 2018.9.27
32	특별휴가 등 유급휴가 과다 운영 부적정(서울의료원)	권 고	진 행	- 휴가, 휴직제도 개선예정 - 휴가, 휴직제도 개선 노사 TF 구성 : 2017.12.28. - 장기 연차수당 관련 논의 노사 TF 구성 : 2018.9.27
33	상시지속업무 비정규직 채용 등 비정규직 과다운용 부적정(서울의료원)	통 보	조치 완료	- 서울의료원 총무팀-12347(2018.7.4.) : 정규직전환 심의결과 보고 및 방침 수립
34	계약제 직원 채용연령 제한 규정 부적정(서울의료원)	권 고	조치 완료	- 서울의료원 총무팀-20528(2017.11.30.) : 계약제 직원 고용예규 개정 완료
35	구내식당 수입 부가가치세 신고 부적정(서울의료원)	시 정	조치 완료	- 서울의료원 총무팀-16538(2018.8.24.) : 예산확보 및 부가가치세수정 신고납부 완료
36	수의계약 업무처리 부적정(서울의료원)	주 의	조치 완료	- 서울의료원 계약심사팀-3356(2018.8.3.) : 관련규정 준수 및 담당자 특별교육 실시 - 서울의료원 총무팀-15180(2018.8.6.) : 신분상조치
37	입찰공고기간 관련 규정 미준수(서울의료원)	주 의	조치 완료	- 서울의료원 계약심사팀-3356(2018.8.3.) : 관련규정 준수 및 담당자 특별교육 실시 - 서울의료원 총무팀-15180(2018.8.6.) : 신분상조치

2. 재난분야 현장조치행동매뉴얼 관리실태 감사

감사배경 및 목적

- 재난분야별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작성·관리 실태 적정 여부
-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에 대한 담당공무원 교육훈련 여부 등에 대한 점검을 통해 평소 재난대비 태세에 대한 경각심 제고

추진내용

- 감사대상 : 3개 분야 30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 감사기간 : 2018. 3. 19. ~ 4. 20(기간 중 20일)
- 감사인원 : 안전감사1팀장 등 5명

감사중점

-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의 작성 기준·절차 준수여부
- 매뉴얼의 구체성 및 적정성 여부, 재난 및 매뉴얼에 대한 교육훈련 여부, 비상연락망 주기적 수정 여부 등

지적사항 총괄

(단위 : 건)

합 계			변상 (금액)	징계 (인원)	시정(금액)				주의 (인원)	개선	권고	통보	고발 (인원)
총건수	신분상 조치인원	재정상 조치금액			소계	추징 (환수)	감액	기타					
9	-	-	-	-	3	-	-	3	5	-	1	-	-

□ 감사결과 처분요구 내역 및 조치현황

연번	처분요구 제목	처분유형	조치현황	비고
1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작성기준 등 미준수	시정	○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작성기준 표준안」 및 「재난 사고 초기대응 매뉴얼」을 반영하여 관련 매뉴얼을 정비토록 조치	조치중
2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승인 절차 미이행	주의	○ 향후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개정 시 승인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주의요구	조치완료
3	긴급재난문자 운용 미흡	주의 시정 권고	○ 인사이동 등에 따른 긴급재난문자 송출담당 변동 시 즉시 시스템상에 변경사항을 반영하도록 주의요구 ○ 긴급재난문자 시스템 상 재난정보 입력자를 일괄 현행화 조치하고 재난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긴급재난문자 송출훈련을 주기적으로 실시토록 함	조치완료
4	재난대비 매뉴얼 숙달훈련 미이행	주의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위기 유형별로 재난대비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숙달 훈련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주의요구	조치완료
5	법정 재난안전 전문교육 기한 내 미이수	주의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안전 전문교육을 법정기한 내에 이수 할 수 있도록 주의요구	조치완료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연 번	감사분야	관련기관	지적내용	처 분 요 구			
				처분 종류	신분상 조 치	재정상 조치	
						종류	금액(천원)
1	매뉴얼 작성기준	안전총괄본부 등 10개 실·국·본부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작성기준 등 미준수	시정	-	-	-
2	매뉴얼 승인절차	기후환경본부 등 9개 실·국·본부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승인 절차 미이행	주의	-	-	-
3	긴급재난문자	안전총괄본부 등 12개 실·국·본부	긴급재난문자 운용 미흡	주의 시정 권고	-	-	-
4	재난대비 훈련	안전총괄본부 등 10개 실·국·본부	재난대비 매뉴얼 숙달훈련 미이행	주의	-	-	-
5	재난안전 전문교육	안전총괄본부 등 10개 실·국·본부	법정 재난안전 전문교육 기한 내 미이수	주의	-	-	-

일련번호	1
------	---

감사위원회

시정요구

제 목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작성기준 등 미준수

관 계 기 관 안전총괄본부, 푸른도시국, 기후환경본부, 도시교통본부, 소방재난본부, 기획조정실,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재생본부, 시민건강국, 정보기획관

내 용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작성기준 표준안(국민안전처, 현 행정안전부), '16.10.31」¹⁾과 「재난사고 초기대응 매뉴얼(안전총괄본부 상황대응과, '17.3.13)」²⁾에 따르면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작성시 위 표준안에 따라 매뉴얼 작성규격을 통일토록 하고, 내용작성에 있어서 일반사항, 재난관리체계, 재난대응 절차 및 프로세스, 단계별 행동요령, 협업체계 등을 반영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재난사고 초기대응 매뉴얼」에서 규정한 주요조치사항을 소관 행동매뉴얼에 반영하여야 한다.

[표 1]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작성기준 표준안」에서 제시한 매뉴얼 작성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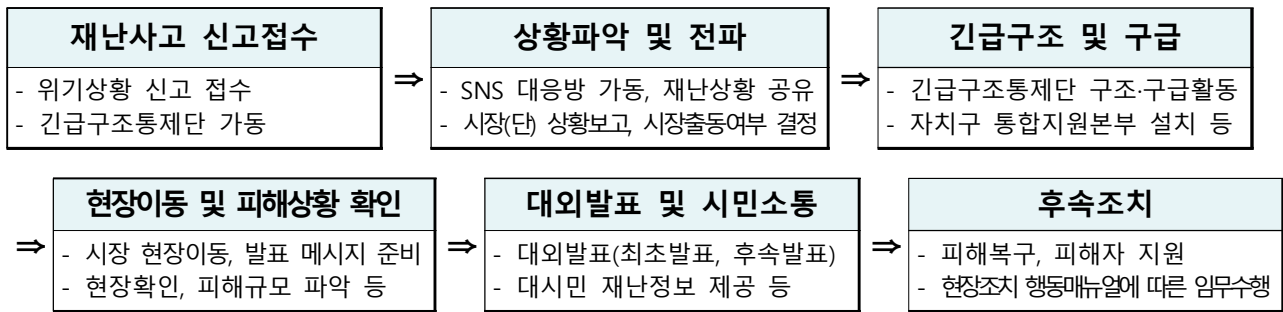
연번	작성항목	세부사항
1	매뉴얼 작성규격	용지규격(A4), 표지색상(빨간색), 서체, 제·개정 이력 등
2	매뉴얼 관리번호	자연재난, 사회재난, 주요상황으로 구분하여 관리번호 부여

1) 국민안전처에서는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작성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가이드 라인으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작성기준 표준안」을 각 지자체 등 현장대응 기관에 시달하여, 표준안에 맞게 매뉴얼을 개선토록 한 바 있다.

2) 안전총괄본부(상황대응과)에서는 재난사고 발생시 신속한 지휘체계 확립을 위해 재난발생 초기 지휘방법 및 유관 부서간 공동대응방안을 규정한 「재난사고 초기대응 매뉴얼」을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담당부서에 통보하여 소관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에 이를 반영토록 조치한 바 있다.

연번	작성항목	세부사항		
		목차	작성내용	
3	매뉴얼 주요 작성내용	1. 일반사항	매뉴얼 작성목적, 적용범위, 위기형태, 위기경보단계 작성	
		2. 재난관리체계	정부 및 지자체 재난관리체계 및 기관별 주요역할 재난안전대책본부, 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 비상연락망 등 작성	
		3. 재난 대응절 차 및 프로세 스	재난대응 절차도	재난발생 전부터 수습복구까지의 주요 핵심업무의 절차도 작성
			재난대응 단계	재난대응 단계를 시점에 따라 「징후감지」, 「초기대응」, 「비상대응」, 「수습복구」로 구분하고 단계별 대응지침 작성
			재난대응 프로세스	재난대응 단계별 지휘부와 대응부서의 임무와 역할을 작성
		4. 재난대응 단계별 행동요령	재난대응 단계별 조치내용의 방법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작성	
		5. 협업체계	통신지원, 교통대책 등 13개 협업기능별 협업업무 작성	
6. 부록	매뉴얼 내용의 보완·참고사항, 각종 서식, 담화문 등 작성			

[표 2] 「재난사고 초기대응 매뉴얼」에서 규정한 단계별 주요 조치사항



그런데도 30개 매뉴얼 확인결과 일부 매뉴얼 관리부서에서 다음과 같이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작성기준 미준수 및 재난대응 초기대응 지침을 미반영한 사례가 발견되었다.

①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작성기준 미준수

보도환경개선과 등 7개 부서에서는 7개 매뉴얼을 작성하면서 매뉴얼 표지색상, 관리번호, 제·개정이력 현황표 등 국민안전처에서 제시한 매뉴얼 표준서식을 준수하지 않았으며,

[표 3] 매뉴얼 표준서식 미준수 현황

연번	매뉴얼명	살국본부	관리부서	표준서식 미준수 현황	비고
1	지하도상가 안전사고	안전 총괄본부	보도환경개선과	- 제·개정 이력 현황표 누락	
2	한강교량 대형사고		교량안전과	- 겉표지 색상(빨간색) 미반영	

연번	매뉴얼명	실국본부	관리부서	표준서식 미준수 현황	비고
3	산사태	푸른 도시국	산지방재과	- 매뉴얼 관리번호 누락	
4	도시가스 수급	기후 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 겹표지 색상(빨간색) 미반영	
5	지하철 대형사고	도시교통본부	교통정책과	- 제·개정 이력 현황표 누락	
6	해외재난	기획 조정실	국제교류담당관	- 겹표지 색상(빨간색) 미반영 - 매뉴얼 관리번호 누락	
7	아파트공사장 붕괴	도시 재생본부	재생협력과	- 겹표지 색상(빨간색) 미반영 - 제·개정 이력 현황표 누락 - 매뉴얼 관리번호 누락	

도로관리과 등 6개 부서에서는 6개 매뉴얼을 작성하면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작성기준 표준안」에서 제시한 재난대응단계, 재난대응 프로세스, 재난대응 단계별 행동요령 등 주요 작성항목을 반영하지 않았다.

[표 4] 매뉴얼 작성기준 표준안의 주요 작성항목 미반영 현황

연번	매뉴얼명	실·국·본부	부서명	주요 작성항목 누락 내용	비고
1	도로함몰	안전총괄본부	도로관리과	- 재난대응 프로세스 - 재난대응 단계별 행동요령	
2	도시가스 수급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 재난대응 프로세스	
3	보건의료 마비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 재난대응 프로세스	
4	해외재난	기획조정실	국제교류담당관	- 재난대응 프로세스	
5	도로공사장 붕괴	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	- 재난대응단계, 재난대응 프로세스	
6	아파트공사장 붕괴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 재난대응단계, 재난대응 프로세스	

② 「재난사고 초기대응 매뉴얼」 주요 조치사항 미반영

도로시설과 등 10개 부서에서는 10개 매뉴얼을 작성하면서 서울시 「재난사고 초기 대응 매뉴얼」에서 규정한 주요 조치사항을 소관 행동매뉴얼에 반영하여야 하나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

[표 5] 「재난사고 초기대응 매뉴얼」 주요 조치사항 미반영 부서 현황

연번	매뉴얼명	실·국·본부	부서명	비고
1	도로터널 사고	안전총괄본부	도로시설과	
2	도로함몰		도로관리과	
3	산불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4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5	도시가스 수급		녹색에너지과	
6	지하철 대형사고	도시교통본부	교통정책과	

연번	매뉴얼명	실·국·본부	부서명	비고
7	재난대응분야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8	감염병	시민건강국	생활보건과	
9	병원시설 대형사고		보건의료정책과	
10	정보통신 마비	정보기획관	정보통신보안담당관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작성기준 표준안(국민안전처, '16.10.31.)」 과 「재난사고 초기대응 매뉴얼(안전총괄본부 상황대응과, '17.03.13)」 은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작성 시 반영하여야 할 지침으로서, 재난유형과 관리기관의 특성에 따라 소관 매뉴얼 형태가 서로 상이할 수는 있으나,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작성기준 표준안」 에서 정한 매뉴얼 작성기준을 따르지 않을 경우 재난대응에 필요한 주요 조치사항이 누락될 수 있으며, 다양한 형태의 매뉴얼 난립으로 매뉴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정부부처 등 상위기관 및 자치구 등 하위기관의 매뉴얼과의 연계성·통일성 부족으로 재난사고 발생 시 효율적 대처가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매뉴얼 담당부서에서는 소관 매뉴얼 작성시 각 재난의 유형과 기관의 특성을 감안하되 기본적으로는 통일된 지침을 반영하여 작성할 필요가 있다.

조치할 사항

안전총괄본부장(도로관리과장, 보도환경개선과장, 교량안전과장), 푸른도시국장(산지방재과장), 기후환경본부장(녹색에너지과장), 시민건강국장(보건의료정책과장), 도시교통본부장(교통정책과장), 기획조정실장(국제교류담당관), 도시기반시설본부장(토목부장), 도시재생본부장(재생협력과장)은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작성기준 표준안」 을 반영하여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정비하시기 바랍니다.(시정)

안전총괄본부장(도로관리과장, 도로시설과장), 푸른도시국장(자연생태과장), 기후환경본부장(생활환경과장, 녹색에너지과장), 도시교통본부장(교통정책과장), 소방재난본부장(재난대응과장), 시민건강국장(생활보건과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정보기획관(정보통신보안담당관)은 서울시 「재난사고 초기대응 매뉴얼」 에서 제시한 초기 지휘방법, 유관부서 공동대응 방안 등 초기대응 지침을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시정)

일련번호	2
------	---

감 사 위 원 회

주 의 요 구

제 목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승인절차 미이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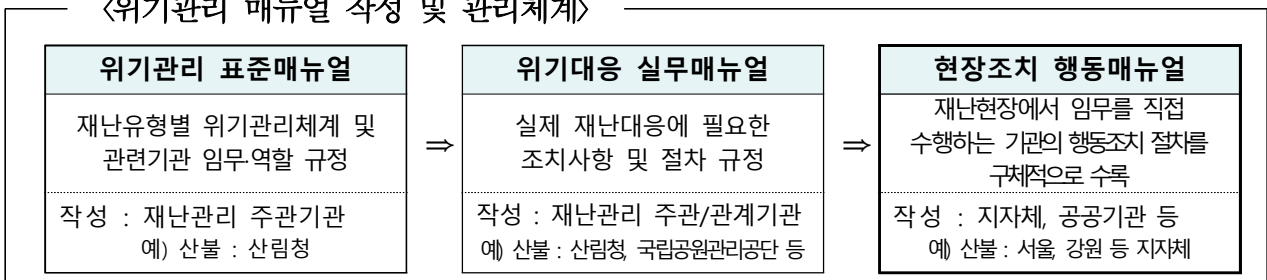
관 계 기 관 기후환경본부 등 8개 실·국·본부

내 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5(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운동)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재난유형에 따라 위기관리 매뉴얼을 작성·운동하여야 한다.

위기관리 매뉴얼은 재난관리 주관기관³⁾이 작성하는 위기관리 표준매뉴얼과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이 있고 재난관리 책임기관⁴⁾이 작성하는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이 있다.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 및 관리체계〉



재난관리 책임기관인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시행규칙」 별표2에 따라 재난유형별로 총 58개의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작성·관리하고 있다.

3) 중앙행정기관

4) 시·도, 시·군·구 등 지방자치단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5 제6항 및 제7항에 따르면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 재난유형의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조정·승인하고 지도·관리를 하여야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작성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은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서울시 재난수습 주무부서에서는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작성함에 있어서, 상위 위기관리 매뉴얼과의 연계성을 위하여 소관 재난관리 주관기관장의 조정·승인을 받아야 하고,

또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개정할 경우 이와 연계하여 자치구의 현장조치 행동매뉴얼도 개정하도록 하여 이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승인을 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최근 3년간 승인절차 이행여부 확인결과 녹색에너지과 등 2개 부서(2개 매뉴얼)는 재난관리 주관기관장에게 승인을 요청한 바 없고, 9개 부서(9개 매뉴얼)는 개정횟수 대비 일부(1~2회)만 승인요청을 하였다.

[표1] 최근 3년간('15~'17) 서울시 작성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에 대한 승인요청 현황

연번	매뉴얼명	주무부서	서울시 개정횟수	승인요청 횟수	비고
1	도시가스 수급	녹색에너지과	4	-	2개부서는 개정사항에 대해 승인요청을 한 바가 없음
2	지하철대형사고	교통정책과	2	-	
3	지진	상황대응과	5	1	9개부서는 개정횟수 대비 일부(1~2회)만 승인요청을 함
4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	생활환경과	3	2	
5	황사(미세먼지)	대기정책과	4	2	
6	산불	자연생태과	3	2	
7	산사태	산지방재과	4	2	
8	다중밀집건축물 붕괴	건축기획과	3	2	
9	감염병	생활보건과	2	1	
10	보건의료 마비	보건의료정책과	4	2	
11	식용수분야	생산관리과	4	1	

또한 소관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개정하면서 하천관리과 등 5개 부서(5개 매뉴얼)는 최근 3년간 자치구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에 대하여 개정승인을 한 바가 없었고, 상황대응과 등 5개 부서(5개 매뉴얼)는 개정횟수 대비 일부(1~2회)만 승인을 하였다.

[표2] 최근 3년간('15~'17) 자치구 매뉴얼에 대한 서울시 승인 현황

연번	매뉴얼명	주무부서	서울시 개정횟수	자치구 승인현황	비고
1	풍수해	하천관리과	1	-	5개 부서는 승인을 하지 않음
2	산사태	산지방재과	4	-	
3	황사(미세먼지)	대기정책과	4	-	
4	지하철대형사고	교통정책과	2	-	
5	보건의료 마비	보건의료정책과	4	-	
6	지진	상황대응과	5	1	5개 부서는 개정횟수 대비 일부(1~2회)만 승인을 함
7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	생활환경과	3	2	
8	산불	자연생태과	3	2	
9	다중밀집건축물 붕괴	건축기획과	3	2	
10	감염병	생활보건과	2	1	

이와 같이 승인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매뉴얼 간의 연계성이 떨어져 재난 발생 시 기관 간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하기 어려워 신속한 대응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조치할 사항

기후환경본부장(생활환경과장, 녹색에너지과장, 대기정책과장), 도시교통본부장(교통정책과장), 안전총괄본부장(상황대응과장), 푸른도시국장(자연생태과장, 산지방재과장), 주택건축국장(건축기획과장), 시민건강국장(생활보건과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상수도사업본부장(생산관리과장)은 향후,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개정 시 소관 재난관리 주관기관의 장에게 개정사항을 통보하여 승인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물순환안전국장(하천관리과장), 푸른도시국장(산지방재과장, 자연생태과장), 기후환경본부장(생활환경과장, 대기정책과장), 도시교통본부장(교통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보건의료정책과장, 생활보건과장), 안전총괄본부장(상황대응과장), 주택건축국장(건축기획과장)은 향후,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개정 시 이와 연계하여 자치구의 소관 현장조치 행동매뉴얼도 개정하도록 안내하여 승인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일련번호	3
------	---

감 사 위 원 회

주의요구/시정요구/권고

제 목 긴급재난문자 운용 미흡

관 계 기 관 물순환안전국 외 12개 실·국·본부

내 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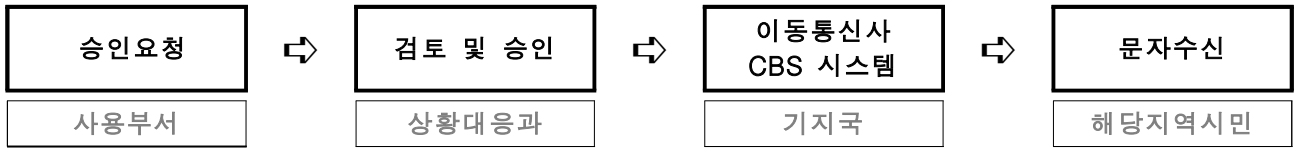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의2 제3항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재난에 관한 예보·경보·통지나 응급조치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해 필요한 정보의 문자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는 재난재해 상황의 발생이 예상되거나 발생한 지역에 관련 내용을 휴대폰 소지자에게 실시간으로 전달하고 이에 따른 대비 또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긴급재난문자 송출시스템(CBS , Cell Broadcasting Service)을 구축하였고 신속한 재난정보 제공을 위해 긴급재난문자 송출승인 권한을 광역시도로 이양⁵⁾하였다.

긴급재난문자는 서울특별시 긴급재난문자 운용규정 제5조에 지정되어 있는 39개 사용부서의 재난정보 입력자가 통합재난안전정보시스템(NDMS)에 접속하여 재난 정보를 입력·송출요청을 하고 운용책임자인 상황대응과장이 검토·승인하면 이동통신사를 통하여 해당지역 시민들에게 문자가 전송된다.

5) 2017. 8. 6. 긴급재난문자 송출승인 권한 광역시도 이양

[표1] 긴급재난문자 운영체계



① 긴급재난문자 재난정보 입력자 관리 미흡

「서울특별시 긴급재난문자 운용규정」 제5조에 따르면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작성·관리하고 있는 부서는 긴급재난문자 송출 사용부서로 지정⁶⁾되어 있으며, 사용부서 담당부서장은 재난정보 입력자의 업무변경, 인사이동 등으로 업무분장에 변동이 있을 경우 즉시 재난정보 입력자를 변경하는 등 재난정보 입력자를 지정·관리하여야 한다.

그런데 총괄부서인 상황대응과로부터 제출받은 긴급재난문자 송출시스템 상 재난정보 입력자 현황 확인결과 7개부서는 담당자를 변경하지 않았으며, 일부 담당자는 부서이동으로 관련 업무를 맡지 않고 있었으나 사용권한이 그대로 부여되어 있는 등 재난정보 입력자 관리에 미흡한 점이 확인 된다.

[표2] 긴급재난문자 재난정보 입력자 미변경 부서현황

연번	매뉴얼명	실·국·본부	부서명	비고
1	도로함몰	안전총괄본부	도로관리과	
2	지하도상가 안전사고		보도환경개선과	
3	한강교량 대형사고		교량안전과	
4	도시가스 수급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5	지하철 대형사고	도시교통본부	교통정책과	
6	병원시설 대형사고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7	정보통신 마비	정보기획관	정보통신보안담당관	

② 긴급재난문자 사용자 교육 미흡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제40조에 의하면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을 관리하는 공무원 또는 직원이 재난상황 하에서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의 내용을 이해하고 숙지하도록 평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여야 하고, 「서울특별시 긴급재난문자 운용규정」 제4조에는 운용책임자인

6) 해외재난 등 3개 분야 3개 부서는 제외

상황대응과장의 임무에 긴급재난문자 운용, 교육 전담인력 확보와 재난정보입력자 교육·훈련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운용책임자는 긴급재난문자 사용부서의 재난정보입력자에 대한 주기적인 훈련을 통하여 실제 재난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런데 자치구를 대상으로는 행정안전부 및 서울시(상황대응과) 주관으로 월 3회 긴급재난문자 송출훈련을 실시한데 반하여, 서울시 긴급재난문자 사용부서를 대상으로는 '17년 8월 긴급재난문자 송출권한 이양 이후 상황대응과에서 2차례(8월, 9월) 일부 부서를 대상으로 훈련 실시 후 감사시점('18.4.19.)까지 송출훈련을 실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긴급재난문자 송출관련 실제 대응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상황대응과 주관으로 긴급재난문자 사용부서를 대상으로 사전공지 후 2018. 4. 19. 송출훈련을 실시토록 하였다.

〈 긴급재난문자 송출훈련 개요 〉

- 훈련일시 : 2018. 4. 9.(목) 17시 02분
- 훈련대상 : 35개 부서(총괄부서인 상황대응과 등 4개부서 제외)
- 훈련방법 : [상황대응과] 상황발생 메시지 SNS(카카오톡) 전송 → [훈련대상부서] 재난문자 입력 및 승인요청 → [상황대응과] 검토
- 점검사항 : 상황발생 메시지 공지 후 긴급재난문자 승인요청까지의 소요시간 (20분 이내)

훈련결과 35개부서 중 18개 부서만이 적정 대응시간인 20분⁷⁾ 이내에 대응하였고, 20분을 초과하여 대응한 부서는 9개, 나머지 8개 부서는 담당자 변경으로 인한 업무 미숙지, 담당자 부재 등으로 대응하지 못하였다.

[표3] 긴급재난문자 송출훈련 결과

훈련대상 부서	부적정 대응부서		적정 대응부서 (20분 이내)
	20분 초과	미대응	
35개 부서	9개 부서 (평균 대응시간 74분)	8개 부서	18개 부서 (평균 대응시간 12분)

7) 행정안전부에서 훈련평가를 위해 적정 대응시간으로 정한 기준임

③ 긴급재난문자 송출관련 행동절차 미수록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5 및 국민안전처(現 행정안전부)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작성기준 표준안에 의하면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은 재난현장에서 임무를 직접 수행하는 기관의 행동조치 절차를 구체적으로 수록한 문서로 작성 시 누구라도 바로 실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산사태, 대형화재, 집중호우 등 각종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시민들에게 재난대응 행동요령 등 중요정보를 전달하는 긴급재난문자는 재난유형별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에 구체적인 행동절차를 수록할 필요가 있다.

또한 총괄부서인 상황대응과에서는 긴급재난문자의 신속한 발송을 위하여 사용부서로 하여금 재난유형별 긴급재난문자 표준문안을 작성하여 제출토록 한 바도 있다.

그런데 감사대상 30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중 긴급재난문자 송출 대상인 27개⁸⁾ 매뉴얼 확인결과 16개 매뉴얼에는 관련 내용이 수록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표4] 긴급재난문자 송출관련 행동절차 미수록 매뉴얼 현황

연번	매뉴얼명	실·국·본부	부서명	행동절차 수록여부	비고
1	대규모 수질오염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미수록 (16개)	
2	도로터널 사고	안전총괄본부	도로시설과		
3	도로함몰		도로관리과		
4	지하도상가 안전사고		보도환경개선과		
5	한강교량 대형사고		교량안전과		
6	도시가스 수급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7	지하철 대형사고	도시교통본부	교통정책과		
8	대형건축물 붕괴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9	감염병	시민건강국	생활보건과		
10	병원시설 대형사고		보건의료정책과		
11	상수도공사장 붕괴	상수도사업본부	시설과		
12	도로공사장 붕괴	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		
13	지하철공사장 붕괴		도시철도토목부		
14	아파트공사장 붕괴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15	공연·행사장 안전사고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16	한강수난사고	한강사업본부	수상안전과		

8) 해외재난 등 3개 분야는 긴급재난문자 사용부서로 지정되어 있지 않음

조치할 사항

안전총괄본부장(도로관리과장, 보도환경개선과장, 교량안전과장), 기후환경본부장(녹색에너지과장), 도시교통본부장(교통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보건의료정책과장), 정보기획관(정보통신보안담당관)은 향후, 인사이동 등으로 긴급재난문자 송출담당(재난정보 입력자) 변동 시 즉시, 시스템상에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주의)

안전총괄본부장(상황대응과장)은 긴급재난문자 송출시스템 상 재난정보 입력자를 일괄 현행화 조치하시기 바라며, 서울특별시 긴급재난문자 운용규정 제5조의 사용부서를 대상으로 긴급재난문자 송출훈련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재난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시정)

물순환안전국장(물순환정책과장), 안전총괄본부장(도로시설과장, 도로관리과장, 보도환경개선과장, 교량안전과장), 기후환경본부장(녹색에너지과장), 도시교통본부장(교통정책과장), 주택건축국장(건축기획과장), 시민건강국장(생활보건과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상수도사업본부장(시설과장), 도시기반시설본부장(토목부장, 도시철도토목부장), 도시재생본부장(재생협력과장), 문화본부장(문화정책과장), 한강사업본부장(수상안전과장)은 긴급재난문자 관련 행동절차는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에 수록할 필요가 있으므로 구체적인 행동절차를 수록하여 재난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권고)

감사위원회

주의요구

제 목 재난대비 매뉴얼 숙달훈련 미이행

관 계 기 관 안전총괄본부, 푸른도시국, 기후환경본부, 주택건축국, 시민건강국,
기획조정실, 도시재생본부, 문화본부

내 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14,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제40조, 「서울특별시 통합위기관리 기본지침(2017.4)」에 따르면

훈련주관기관의 장은 관계 기관과 합동으로 재난대비훈련(위기관리 매뉴얼의 숙달 훈련 포함)을 각각 소관 분야별로 주관하여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을 관리하는 공무원 또는 직원이 재난상황 하에서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의 내용을 이해하고 숙지하도록 평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고,

아울러 위기상황 발생시 공무원 등의 위기관리 능력을 함양하기 위해 위기유형별 주관부서로 하여금 위기관리 연습 및 훈련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감사대상 30개 매뉴얼에 대한 최근 3년간('15~'17년)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에 대한 훈련 실시여부 확인 결과

교량안전과 등 3개 부서(3개 매뉴얼)에서는 1~2회만 훈련을 실시하고, 생활환경과 등 7개 부서(7개 매뉴얼)는 훈련을 실시한 바 없다.

[표 1]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숙달훈련 이행 현황('15~'17년)

감사대상 매뉴얼	재난대비 훈련 미이행		재난대비 훈련 이행 (매년 실시)	비고
	최근 3년간 1~2회만 실시	최근 3년간 미실시		
총 30개 매뉴얼	3개 매뉴얼	7개 매뉴얼	20개 매뉴얼	

[표 2] 각 부서별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숙달훈련 미실시 현황

연번	매뉴얼명	실·국·본부	관리부서	매뉴얼 숙달훈련 미실시 현황('15~'17년)	비고
1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미실시	
2	도시가스 수급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	
3	대형건축물 붕괴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	
4	보건의료 마비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	
5	해외재난	기획조정실	국제교류담당관	"	
6	아파트공사장 붕괴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	
7	공연·행사장 안전사고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	
8	한강교량 대형사고	안전총괄본부	교량안전과	'15년,'17년 미실시	
9	산불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15년,'16년 미실시	
10	황사(미세먼지)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15년,'16년 미실시	

조치할 사항

안전총괄본부장(교량안전과장), 푸른도시국장(자연생태과장), 기후환경본부장(대기정책과장, 녹색에너지과장, 생활환경과장), 주택건축국장(건축기획과장), 시민건강국장(보건의료정책과장), 기획조정실장(국제교류담당관), 도시재생본부장(재생협력과장), 문화본부장(문화정책과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5조 제1항에 의거 위기유형별로 재난대비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숙달훈련을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시기 바랍니다.(주의)

일련번호	5
------	---

감 사 위 원 회

주 의 요 구

제 목 법정 재난안전 전문교육 기한 내 미이수

관 계 기 관 안전총괄본부

내 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9조의2, 동법 시행규칙 제6조의2 및 국민안전처 (현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 전문교육 운영지침(2017년)」에 따르면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자(관리자 및 실무자)는 재난안전분야 종사자 전문교육을 해당 업무를 맡은 후 1년 이내에 받아야 하며⁹⁾, 현장 조치 행동매뉴얼 담당부서의 담당과장, 담당팀장, 담당자를 재난안전분야 종사자 전문 교육 의무대상자로 명시하고 있다.

[표 1] 재난안전 전문교육 이수 기준(재난안전 전문교육 운영지침, 국민안전처 2017년도)

교육구분	교육시기	최소 교육시간	비 고
관리자(부서장) 전문교육	- 신규교육 : 1년 이내	7시간 이상	의무
실무자(팀장, 담당자) 전문교육	- 정기교육 : 매 2년마다	14시간 이상	

그런데도, 감사대상 30개 매뉴얼 중 의무교육대상인 22개 매뉴얼¹⁰⁾ 담당부서에

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7조의2에서는 재난안전 전문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교육기관으로 행정 안전부, 관계중앙행정기관, 시·도 소속 공무원 교육기관, 재난관리책임기관 소속 교육기관, 행안부장관이 정하는 민간교육기관을 규정하고 있다.

10) 서울시 보유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중 국민안전처 기준과 연관이 없는 재난유형의 매뉴얼은 재난안전 전문교육 대상에서 제외(2017년 재난안전 전문교육 추진계획, 상황대응과, 2017.3.30)

대한 재난안전분야 종사자 전문교육 이수여부 확인결과 물순환정책과 등 13개 부서 (13개 매뉴얼) 총 16명이(전체 교육대상자의 약 24%) 교육이수 법정기한인 1년을 초과하여 교육을 이수하였다

[표 2] 재난안전 전문교육 이수 현황(2017.12월말 기준)

교육이수 대상자	법정교육 기한 내 이수	법정기한 경과 후 이수	비고
총 66명	50명	13개 부서/13개 매뉴얼/16명	

[표 3] 부서별 재난안전교육 법정기한 경과 후 이수자 현황(2017.12월말 기준)

연번	매뉴얼명	실·국·본부	관리부서	법정기한 경과 후 이수자	비고
1	대규모 수질오염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관리자(1명)	
2	도로터널 사고	안전총괄본부	도로시설과	실무자(1명)	
3	설해		도로관리과	관리자(1명), 실무자(1명)	
4	한강교량 대형사고		교량안전과	실무자(1명)	
5	도시가스 수급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실무자(1명)	
6	대형건축물 붕괴 (다중밀집건축물)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실무자(1명)	
7	감염병	시민건강국	생활보건과	실무자(1명)	
8	상수도공사장 붕괴	상수도사업본부	시설과	실무자(1명)	
9	도로공사장 붕괴	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시설국)	실무자(1명)	
10	지하철공사장 붕괴		도시철도토목부 (도시철도국)	관리자(1명), 실무자(1명)	
11	아파트공사장 붕괴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실무자(1명)	
12	공연·행사장 안전사고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실무자(1명)	
13	한강수난사고	한강사업본부	운영부	관리자(1명), 실무자(1명)	

이러한 원인은 소관 부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담당자들이 대부분 타 행정업무와 매뉴얼 관리 업무를 중복으로 수행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업무비중이 낮은 재난매뉴얼 업무는 형식적으로 수행되는 경우가 많으며, 매뉴얼 담당자의 재난안전 교육에 대한 인식부족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재난안전교육의 내실화 및 이수실적 향상을 위해 서울시 재난안전 전문교육 총괄부서인 안전총괄본부(상황대응과)에서 의무교육 대상자에 대한 철저한 이수실적 관리가 필요하다.

조치할 사항

안전총괄본부장(상황대응과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9조의2, 동법 시행규칙 제6조의2에 의거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관리자 및 담당자가 재난안전 전문교육을 법정기한 내에 이수할 수 있도록 교육이수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3. 공동구 안전관리실태 감사

감사배경 및 목적

- 공동구 구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공동구내 화재 등 안전사고의 예방과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하여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하고자 함

추진내용

- 감사대상: 서울시설공단, 안전총괄본부(도로시설과)
- 감사기간: 2018. 4. 23. ~ 5. 25.(기간 중 15일)
- 감사인원: 안전감사2팀장 외 4명
- 감사범위: 공동구 안전 및 유지관리 전반에 관한 업무

감사중점

- 공동구 관리 운영에 관한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의 적정 여부
- 공동구 시설 및 수용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보수·보강의 적정 여부
- 화재 등 안전사고 발생 시 대응조치계획 및 작동상태의 적정 여부
- 공동구내 소방시설 등 안전시설물 및 수용시설물의 관리실태 등

지적사항 총괄

(단위 : 건, 천원, 명)

합 계			변상 (금액)	징계 (인원)	시정(금액)				주의 (인원)	개선	권고	통보	고발 (인원)	모범 사례 (인원)
총건수	신분상 조치인원	재정상 조치금액			소계	추징 (회수)	감액	기타						
17	4 (4)	0	0 (0)	0 (0)	3 (0)	0 (0)	0 (0)	3 (0)	5 (4)	1	0	8	0 (0)	0 (0)

감사결과 처분요구 내역 및 조치현황

(2018. 10. 23. 기준)

연번	처분요구 제목	처분종류	조치사항	비고
1	교량하부 구간의 공동구 정밀점검 누락	시정요구	누락구간 정밀점검 완료 ('18. 10. 1.)	완 료
2	철근배근도 등 현황도 부재로 내진성능평가 미흡	통보	공동구 철근배근도 도면복원 등 용역시행 예정	조치 중
3	공동구 자동화재탐지설비 (연기감지기) 설치 부적정 등	통보 기관경고	공동구 자동화재탐지설비 개량공사 등 조치 예정	조치 중
4	공동구내 체수지역 배수체계 재정비 필요 등 시설물관리 부적정	통보	배수체계 개선방안 공사발주 중	조치 중
5	공동구 점용료 등 부과·징수 부적정	통보 시정요구	공동구 점·사용 허가 조치계획 수립 중	조치 중
6	변전소 등에서 공동구 연결되는 단독구의 도로점용료 미부과	통보	도로점용료 부과 등 조치계획 수립 중	조치 중
7	서울특별시 공동구 설치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개정 필요	개선요구	조례개정 입안 절차 이행 중	조치 중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붙임과 같음

감 사 위 원 회

시 정 요 구

제 목 교량하부 구간의 공동구 정밀점검 누락

관 계 기 관 서울시설공단(공동구관리처)

내 용

서울시설공단에서는 1995. 1. 1.부터 “서울특별시 공동구 관리사무 대행 협약” 등에 따라 관리중인 ㉠공동구 등 7개 공동구¹¹⁾(연장 33.79km)에 대하여 2015. 4. 8. A사와 계약(금액: 182백만원, 기간: 2015. 4. 8. ~ 12. 3.)하여 “2015 공동구 정밀점검용역”을 완료하였으며,

이후 2017. 5. 12. B사 외 1개사와 계약(금액: 197백만원, 기간: 2017. 5. 16. ~ 12. 1.)하여 “2017 공동구 정밀점검용역”을 완료하였다.

2015년 정밀점검용역 결과 안전등급은 ㉠·㉡·㉢공동구는 A등급으로, ㉣·㉤·㉥공동구는 B등급으로 평가되었으며,

2017년 정밀점검용역 결과에서는 ㉦·㉧공동구는 A등급으로, ㉠·㉡·㉢·㉣·㉤·㉥공동구가 B등급으로 평가되어 관리하고 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안전점검의 실시),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시설물의 종류)와 제8조(안전점검의 실시 등)에 따르면 공동구는 제2종시설물이고 안전등급 A등급인 경우 3년에 1회 이상, B·C등급인 경우 2년에 1회 이상 정밀안전점검¹²⁾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이와 관련 서울시설공단에서 실시한 2015년 및 2017년 공동구 정밀점검용역의 각 과업내용서에 따르면 ㉢공동구의 과업범위는 공동구의 전체 길이 4.2km이며,

11) 7개 공동구: 2015년 정밀점검용역 시 6개 공동구(연장 32.8km) 이었으나 ㉢공동구가 2016. 12월 서울시설공단에 인수되어 2017년 정밀점검용역 시 7개 공동구(연장 33.79km)임

12) 정밀안전점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시설물의 상태를 판단하고 시설물이 점검 당시의 사용요건을 만족시키고 있는지 확인하며 시설물 주요부재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수준의 외관조사 및 측정·시험 장비를 이용한 조사를 실시하는 안전점검을 말함

특히 △△1교의 하부에 매달기 방법으로 설치된 공동구(연장: 140m, 폭: 7.732m, 높이: 1.67m)도 위 정밀점검용역의 과업범위에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위 용역사들은 2015년 및 2017년 ㉠공동구 정밀점검용역 업무를 수행하면서 과업범위 내에 있는 △△1교 하부구간에 철재구조체와 교량상판 등으로 구성된 공동구(연장: 140m)에 대하여 이 교량 관리부서(서울특별시 남부도로사업소)의 소관사항으로 판단하여 철재구조체 등에 대한 외관조사망도 작성 및 평가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등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고 누락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결과

서울시설공단에서는 정밀점검용역의 과업범위에 △△1교 구간이 포함됨을 인정하면서도 용역사에서 남부도로사업소(교량 관리부서)의 관리시설로 잘못 판단하여 점검 시 누락되었으며 성과품 최종 검토 시 해당구간은 손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7조(검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검사) 제5항에 따르면 계약담당자 또는 검사를 위임받은 자는 계약 이행내용을 확인하여 부당함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서울시설공단은 2015년 정밀점검용역 결과보고서에 교량 하부구간이 누락되었는데도 이의 시정조치 없이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2017년 정밀점검용역에서도 동일하게 누락되었는데도 이를 시정조치 하지 아니하고 용역을 완료하는 등 2회에 걸쳐 동일하게 누락되게 하였다는 것은 용역감독으로서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으로 서울시설공단의 주장은 이유가 될 수 없다.

금번 감사 시 현장의 공동구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2018. 6. 7. 감사자가 ㉠공동구관리소 소장과 2017 공동구 정밀점검용역 수행업체와 동행하여 시설물 점검을 실시한 결과 교량상판과 철재구조체간을 연결하는 일부 연결 볼트시공 부분에서 너트 풀림과 볼트 빠짐 현상이 확인되었고 대부분의 볼트가 부식된 상태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2018. 6. 12. 2017년 정밀점검용역을 실시한 용역사(B사)에서 이 △△1교 하부구간에 있는 공동구를 현장 실사한 결과 공용기간 증가 및 시공불량 등에 따른 볼트 탈락, 볼트체결 불량, 너트 탈락, 볼트 미세부식 등이 조사되어 재체결 및 재설치가 필요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치할 사항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은

- ① ㉠공동구 정밀점검용역에서 누락된 △△1교 하부구간의 공동구에 대하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2017년 시행한 해당 용역사로 하여금 자체 부담으로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토록 하여 용역보고서를 수정·보완토록 조치하고 점검결과에 따라 공동구 시설물을 보수·보강하시기 바라며,(시정)
- ② △△1교 하부구간의 공동구에 대한 정밀안전점검을 2회에 걸쳐 누락되게 하는 등 용역 감독업무를 소홀히 한 용역 감독자에게는 서울시설공단 「인사규정시행 내규」 제9장 규정에 따라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주의)

※ 신분상 조치: 정밀점검용역 업무 소홀 관련자 주의

감 사 위 원 회

통 보

제 목 철근배근도 등 현황도 부재로 내진성능평가 미흡

관 계 기 관 서울시설공단(공동구관리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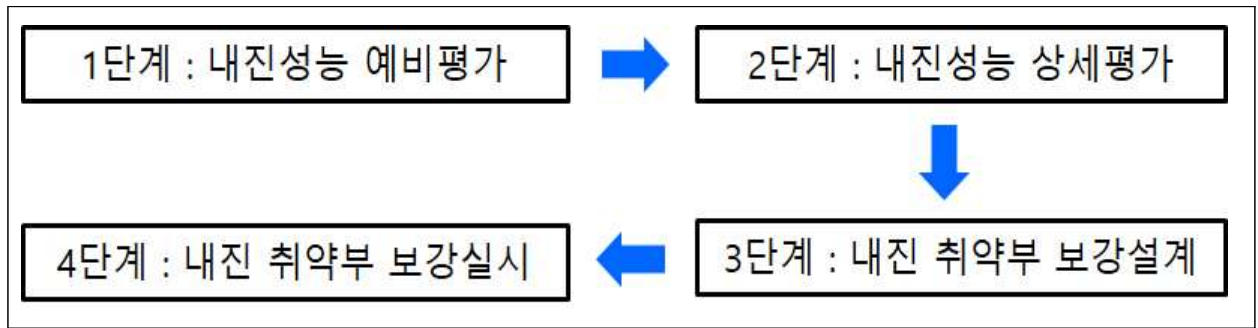
내 용

서울시설공단에서는 1995. 1. 1.부터 “서울특별시 공동구 관리사무 대행 협약” 등에 따라 관리중인 ㉠공동구 등 3개 공동구에 대하여 2012. 3. 13. 「지진·화산 재해대책법」 제14조(내진설계 기준의 설정) 및 제15조(기존 시설물의 내진보강 기본 계획 수립 등),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내진설계기준의 설정대상 시설) 등 규정에 따라 자연재해에 대비하고자 C사와 계약(금액: 26백만원, 기간: 2012. 3. 13.~ 2012. 9. 5)하여 “㉠, ㉡, ㉢공동구 내진성능평가용역”(이하 “이 건 용역”이라 한다)을 시행 하였다.

이 건 용역의 「공동구 내진성능평가용역 과업지시서」 3. 과업의 내용(1) 내진 성능 예비평가, 가. 일반사항 등에 따르면 과업대상 시설물에 대한 내진성능 평가에 필요한 구조물의 제원 및 재료특성, 설계 평면 및 종·횡단도, 지반지질도, 철근 상세도, 설계하중 등의 물성값은 실제 그 구조물의 물성값을 기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기존시설물 내진성능평가 요령」(한국시설안전공단)에 따르면 1단계 ‘내진 성능 예비평가(지진도, 취약도, 영향도 평가)’와 2단계 ‘내진성능 상세평가(저항강도, 소요내진성능 비교)’를 통해 3단계 내진 대책방안 수립(보수보강, 방법 등) 등 아래 [표]와 같이 단계적인 절차에 따라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표] 구조물 내진성능평가 흐름도



그런데 이 건 용역업자는 1단계 ‘내진성능 예비평가’를 위한 구조물의 취약도 평가를 하면서 공동구 구조물 대상 단면을 동일 타입 중 최저토포¹³⁾ 구간에 해당되는 ㉠공동구의 9개 구간 등 총 16개 구간(㉡공동구 2개 구간, ㉢공동구 5개 구간)을 선정하고 ‘서울시지반정보관리시스템’에 등재된 해당 지질자료를 적용하였다.

이 때 ㉠공동구의 9개 구간 중 하나인 11단지지선(STA.0+060)의 내진성능 예비평가에 적용한 B-3지점 지반지질도 상의 연암심도는 위 서울시지반정보관리시스템의 자료(이하 “지질주상도”라 한다)에 따르면 지표면에서 19.3m 깊이(G.L: -19.3m)로 등재되어 있으나 이 지질주상도와 다르게 지표면으로부터 약 9.0m 더 깊게 28.0m(G.L: -28.00m)로 적용하는 등 총 9개 지점 중 8개 지점에서 지질주상도와 다르게 심도를 적용하여 평가한 것으로 확인된다.

그리고 1단계 ‘내진성능 예비평가’ 결과에 따라 “내진보강 중요구조 그룹(취약도 지수: VI > 50)”으로 평가된 ㉠공동구의 신트리구간(4련식, 취약도 55점) 등의 2단계 ‘내진성능 상세평가’에 필요한 지진하중을 산정하면서 공동구 구조물의 철근콘크리트 단위중량 값은 국토교통부 「건설공사 표준품셈」에서 규정한 재료의 단위중량에 따르면 24.5kN/m³ 인데도 몰탈 단위중량 값인 21.0kN/m³ 로 적용하는 등 철근콘크리트 물성값을 관련규정과 다르게 적용하여 평가하였다.

또한 ㉠공동구의 경우는 준공 설계도서의 미비로 주철근만 확인(2011년 공동구 정밀점검용역 보고서)된 상태에서 대표단면(123개)의 2단계 ‘내진성능 상세평가’를 위한 지진하중에 대한 부재 검토를 하면서 5개 지점(타입 ①~⑤)¹⁴⁾의 주철근에 대한

13) 지표면과 지하 공동구 구조물간 깊이가 가장 얇은 부분을 말함

14) ①신트리간선: STA.0+640 ②이대병원간선: STA.0+460 ③3·4단지지선:STA.0+020 ④11단지 지선: STA.0+060 ⑤14단지지선:STA.0+140

내진성능 상세평가 결과에 따르면 최소 전단철근 필요 부재를 총 123개 단면 중 “기능 수행수준¹⁵⁾”에 해당하는 44개 단면과 “붕괴방지수준¹⁶⁾”에 해당하는 30개 단면 등 총 74개 단면¹⁷⁾으로 평가하고서도,

이 최소 전단철근 필요 부재(74개 단면)에 대하여 철근탐사장비 등을 통한 부재의 실제 설계 및 시공된 전단철근의 배근(직경 및 갯수 등) 유무를 확인하여 보강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는데도 전단철근의 배근상태를 미확인하고 부재 단면력을 미검토하는 등 보강방안을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이와 관련 이 건 용역업자는 관련문서 및 철근탐사 등 조사 없이 해당 부재에 전단철근이 배근된 것으로 가정하였으며, 그리고 ‘공동구 내진성능평가 용역 종합 보고서’에 따르면 전단철근(D13)은 ㉔·㉕공동구의 철근상세도를 참고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실제로는 ㉔·㉕공동구 철근상세도와는 관계없이 ㉔공동구 5개 지점 중 타입 ① ~ ③은 전단철근 직경 13mm(D13×4.0개 가정)로, 타입 ④ ~ ⑤는 전단철근 직경 16mm(D16×4.0개 가정)로 배근 상태를 임의 추정·적용하여 내진성능 상세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 결과 이 건 용역업자가 지질주상도(연암깊이) 적용 부적정, 철근콘크리트 단위중량 적용 부적정, 내진 취약부(최소전단철근 필요 부재)에 대한 보강방안 등을 미제시 함으로써 이 건 용역의 결과가 불완전하게 제시되었다.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결과

서울시설공단에서는 2012년 내진성능평가용역 당시 ㉔공동구는 철근도면의 부재로 구조체 정밀점검용역의 철근탐사 결과에 따라 주철근을 반영하였고,

전단철근에 대하여는 철근탐사 및 현장조사가 곤란하여 ㉔공동구와 비슷한 시기에 건설된 ㉔·㉕공동구의 표준단면도를 참고하여 전단철근 간격 등을 추정하여

15) 기능수행수준: 설계지진 하중 작용시 구조물이나 시설물에 발생한 손상이 경미하여 그 구조물이나 시설물의 기능이 유지될 수 있는 성능수준을 말함
16) 붕괴방지수준: 설계지진 하중 작용시 구조물이나 시설물에 매우 큰 손상이 발생할 수는 있지만 구조물이나 시설물의 붕괴로 인한 대규모 피해를 예방하고, 인명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성능 수준을 말함
17) 용역종합보고서 4.3 내진성능 상세평가결과 I (71쪽~86쪽 참조): 기능수행수준(신트리간선 13개 단면, 이대병원간선 10개 단면, 3·4단지지선 11개 단면, 11단지지선 5개 단면, 14단지지선 5개 단면), 붕괴방지수준(신트리간선 10개 단면, 이대병원간선 6개 단면, 3·4단지지선 8개 단면, 11단지지선 3개 단면, 14단지지선 3개 단면)은 최소전단철근 필요 단면임

평가를 시행한 사항이나, 용역결과에 따르면 모든 단면의 부재력은 발생값이 보유 강도를 만족하고 건설당시 충분한 안전율이 적용되어 작용하중(소요역량: kN/m^2)이 설계 강도의 범위(공급역량: kN/m^2) 내에 있으므로 “내진1등급 수준”(1,000년 빈도, 0.154g 수준 \Rightarrow 리히터규모 6.5에 해당)에 해당하는 내진성능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므로 내진성능의 문제는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감사기간 중 계약상대자인 C사로 하여금 ㉠공동구 11단지 지선(STA.0+060) 및 이대병원 간선(STA.0+460)에 대한 2개 단면을 임의 선정하여 재계산한 결과 12개 부재의 작용하중(소요역량)에서는 휨모멘트, 전단력, 압축력 등이 당초 납품된 성과품 대비 최저 4%에서 최대 44%까지 증가하는 결과로 나타났다.

따라서 서울시설공단에서 용역 시행한 공동구 내진성능평가용역 성과는 그 대상 구조물의 제원을 근거로 실제의 물성값에 근거로 평가하지 않는 등 그 성과물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지므로 실제 물성값을 적용한 재평가가 필요하므로 서울시설공단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조치할 사항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은

㉠공동구에 대하여는 구간별 중요도 및 현상태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철근배근도 등 복원도면을 작성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복원도면이 작성된 이후의 정밀안전점검 등을 하는 때 용역사로 하여금 위의 추정 값을 실제 값으로 대체하여 내진성능평가가 재이행 되도록 조치하시기 바라며,

2012년 용역수행한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당해 노선의 최인접 구간의 지질 주상도를 재선정하고 콘크리트 단위중량을 정상화하여 재평가하고 용역결과가 보정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통보)

감사위원회

통보 및 기관경고

제 목 공동구 자동화재탐지설비(연기감지기) 설치 부적정 등

관 계 기 관 서울시설공단(공동구관리처)

내 용

서울시설공단에서는 1995. 1. 1.부터 “서울특별시 공동구 관리사무 대행 협약” 등에 따라 관리중인 ㉠공동구 등 6개 공동구에 대하여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시설안전부)장으로부터 도시기반시설인 지하 공동구에 대하여 기 설치된 자동화재탐지설비(이하 “자동탐지설비”라 한다)인 정온식감지선형감지기(이하 “선형열감지기”라 한다)와 유기적으로 연동되고 상호 보완 작동되도록 광전식연기감지기(이하 “연기감지기”라 한다)를 추가 설치하는 “현장중심 공동구 특별안전점검 결과 처리계획(도시기반시설본부장 방침 제276호, 2008. 5. 6.)”을 통보받아 2008. 10. 22. D사(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와 “공동구 연기감지기 구매·설치”(이하 “이 건 구매·설치공사”라 한다) 계약을 맺어 2008년에는 ㉠·㉡·㉢공동구를 대상(금액: 179백만원)으로 연기감지기 762개, 중계기데이터 100개소를 수정·설치 완료하였으며,

2009년에는 ㉣·㉤·㉥공동구를 대상(금액: 60백만원)으로 연기감지기 207개, 중계기데이터 29개소를 수정·설치 완료(2009. 7. 8.) 하였다.

1. 연기감지기 경계구역과 선형열감지기 경계구역간 불일치

이 건 구매·설치공사의 「공동구 연기감지기 구매·설치 제안요청서」, 공사계약 특수조건인 「2008년 작업지침서」 및 「2009년 세부지침서」에 따르면 연기감지기는 공동구내 현재 설치되어 있는 선형열감지기의 중계기에 연결하되, 화재경계구역¹⁸⁾을 기설치·운영 중인 선형열감지기 중계기구역의 범위 내로 선정하여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18)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제3조(정의)에서 규정한 소방대상물 중 화재신호를 발신하고 그 신호를 수신 및 유효하게 제어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함

한편, 기 설치된 선형열감지기용 중계기는 공동구 내에서도 전기 및 통신용 공동구 구간에 설치되어 있으며, ㉠공동구 등 6개 공동구 총연장 32.80km(관리연장: 66.90km)에 대하여 126개소의 구간으로 나누어 화재경계구역이 설정·운영되고 있다.

그런데 계약상대자는 연기감지기를 설치하면서 ㉠공동구 등 6개 공동구의 총 126개 화재경계구역 중 ㉡공동구를 제외한 5개 공동구의 55개소 화재경계구역(중계기구역)에서는 중계기 감지구역을 기존의 선형열감지기 중계기구역(화재경계구역)에 맞지 않게 합하거나 나누어 분할시키는 방법으로 임의 조정하여 설계도서와 다르게 설치하였다.

그리고 중계기 프로그램 수정¹⁹⁾의 경우에도 계약수량 126개에서 11개소가 줄어든 115개만 수정되었고, 연기감지기는 ㉢공동구에서 계약수량 343개 보다 20개가 부족하게 설치되었으며, ㉠·㉡·㉢공동구에서는 계약수량 565개 보다 34개가 더 많이 설치되는 등 아래 [표]와 같이 계약내용과 다르게 임의 변경하여 설치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연기감지기 등 설치 현황

(화재경계구역/중계기: 개소, 연기감지기: 개)

구분	공동구명	화재경계구역 설정(Zone)			중계기 데이터 수정			연기감지기 신설		
		기존 운영	정상설치(일치)	임의변경(불일치)	계약수량	설치수량	증·감	준공수량	설치수량	증·감
합계		126	71	55	126	115	(감)11	975	989	(증)14
I 그룹	㉠	23	5	18	23	18	(감) 5	198	206	(증) 8
	㉡	42	25	17	42	39	(감) 3	343	323	(감)20
	㉢	35	18	17	35	34	(감) 1	227	249	(증)22
II 그룹	㉣	19	18	1	19	18	(감) 1	140	144	(증) 4
	㉤	3	3	-	3	-	-	37	37	-
	㉥	4	2	2	4	3	(감) 1	30	30	-

2. 소방용 중계기 전원용배선(케이블) 규격 등 임의 변경

서울시설공단에서는 2008. 7. 10.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로부터 이 건 구매·설치공사 설계내역서를 통보받았으며, 이 내역서에 따르면 연기감지기 구매·설치에 적용할 전원배선은 FR-CVV(1.5SQ×2C)의 종류·규격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서울시설공단에서 2008. 9. 3. 협상에 의한 계약발주에서 제시한 “제안요청서”와 이 건 구매·설치공사 건의 계약특수조건인 「2008년 작업지침서」

19) 공동구 내부에 설치된 중계기에서 동작된 상태를 수신기에 보내어 화재구역을 표시할 수 있도록 중계기 및 R형 수신기 데이터를 추가 보완 설치하는 내용으로 중계기 내부의 ROM 데이터를 추가 수정하는 것을 말함

및 「2009년 세부지침서」에 따르면 적용법규는 소방법 등에서 정한 관련규정을 준수하되, 전선 및 케이블의 종류와 규격의 품질기준은 설계서에서 제시한 종류 및 규격, 그 이상의 종류로 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계약상대자는 공동구 내부에 연기감지기를 추가 설치하면서 전원배선을 설계도서(종류·규격: FR-CVV, 1.5SQ×2C)와 다른 규격의 트레이용 난연전선케이블(종류·규격: TFR-CVV, 1.5SQ×2C)로 공동구 내 선반(Tray)에 올려놓는 방식으로 연장(L) 9,164m를 설치²⁰⁾하였으며,

특히, 이 전원배선(TFR-CVV, 1.5SQ×2C, 설치방법: 보호관 인입 등)은 소방용의 내화·내열배선이 아닌데도 천장 면에 별도의 보호관 등에 인입하지 아니하고 노출 상태로 연장(L) 19,196m를 부착·설치²¹⁾하는 등 총연장(L) 28,360m를 설계변경 절차이행 없이 임의 변경(종류·규격, 설치방법 등)하여 설치하였다.

3. 소방용 중계기 통신용배선(케이블) 규격 미달 제품 설치

이 건 구매·설치공사의 설계서와 「연기감지기 구매·설치 세부지침서」(2.1) 전선 및 케이블(2.1.1) 일반품질수준에 따르면 ㉠공동구 연기감지기 설치에 소요되는 소방용 중계기 통신배선은 차폐용의 FR-CVV SB(1.5SQ×2C) 규격에 의한 연장 790m를 배선하여 연기감지기 30개를 설치토록 되어 있다.

그런데 계약상대자는 ㉠공동구에 연기감지기를 설치하면서 설계도서에서 규정된 통신배선(규격:FR-CVV SB 1.5SQ)을 사용하지 않고 설계서와 다른 용도(FR: 보호관 인입용 → TFR: 트레이용) 그리고 굵기(1.5mm → 1.25mm), 내부 선심수(線心數)(2개 → 3개)가 다른 트레이용의 통신배선(규격: TFR-CVV SB 1.25SQ ×3C)으로 설계변경 절차이행 없이 임의 변경하여 규격 미달 통신배선을 설치하였다.

그 결과 계약상대자가 연기감지구역을 기존 구역에 불일치하게 설치, 전원·통신용 배선의 규격 등을 임의 변경 설치함으로써 화재발생시 다른 화재경계구역에서 발화된 것으로 표시되어 초기 소화 혼란 발생, 그리고 내화 및 내열 성능 저하 등으로 인한 자동탐지설비의 기능 상실이 우려된다.

20) ㉠공동구 중 대1-57구간(L=2,290m), 중1-89구간(L=650m), 대3-65구간(L=2,080m), ㉡공동구 중 지선구간(L=3,259m) 등 총연장 9,164m임

21) ㉠공동구 중 대1-32구간(L=2,210m), ㉡공동구 중 본선구간(L=5,851m), ㉢공동구 전구간(L=4,239m), ㉣공동구 전구간(L=5,846m), ㉤공동구 전구간(L=1,050m) 등 총연장 19,196m임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결과

- ① 서울시설공단에서는 2002년 최초 공동구내 자동탐지설비인 선형열감지기 설치 시 설치간격 등으로 인하여 구역별 연기감지기 설치 수량에 차이가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기존의 선형열감지기와 연기감지기 상호간 화재경계구역의 불일치 사항에 대하여는 2008년, 2009년 연기감지기 설치공사는 기 구축된 화재탐지설비의 화재경계구역 기반 상에서 추가 설치한 사항으로 화재경계구역의 임의 변경(불일치) 사항은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감사기간 중 ㉠공동구 관리소장 등 6개 공동구관리소장이 각 공동구에 대하여 전수 조사하여 확인한 「공동구 연기감지기 설치관련 현황조사서」에 따르면, ㉡공동구의 경우는 기 설치된 중계기 3개소를 통해 설정하도록 설계된 연기감지기 경계구역을 2개 중계기로 임의 통합하는 등 동일 중계기 상에서 선형열감지기 구간과 연기감지기 상호간의 감지구역 불일치는 준공도면 대비 55개소가 확인되었으므로 화재경계구역의 불일치가 없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이는 같은 화재경계구역 내에서 연기감지기의 추가설치 여부의 문제가 아니고 일정 지점에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연기감지기(중계기감지구역)와 선형열감지기 경계구역(중계기감지구역) 간의 불일치로 인하여 다른 화재경계구역에서 화재가 발생된 것으로 표시될 수 있어 초기 소화에 혼란발생 등 문제점이 있는 것을 지적한 것으로 현장 환경을 감안한 재정비가 필요하다.

- ② 서울시설공단에서는 설계도서의 전원배선 규격 FR-CVV 표기는 2008. 6월 물가자료(물가정보, 거래가격)가 F-CVV로 표기된 점으로 보아 전선규격의 오류로 판단하여 TFR-CVV를 적용한 것이고 FR-CVV와 TFR-CVV는 동일 성능의 배선으로 “일반용”과 “트레이용”의 차이만 있을 뿐, 난연성능으로 인해 트레이 및 천장 등에 노출 설치되더라도 적용성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구 「자동화재탐지설비 화재안전기준(NFSC203)」(소방방재청고시 제2007-14호, 2007. 4. 12. 기준) 제11조 제2호에 따르면 감지기 상호간의 배선은 ‘내화(耐火)전선이나 내열(耐熱)전선’ 또는 ‘600V 비닐절연전선²²⁾’, 감지기와

22) 소방청 2016년 국가화재안전기준 해설서인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203) 해설서」 제11조(배선) 제2호의 해설에 따르면 구 「NFSC 203」 제11조 제2호에서 허용한 ‘다만, 감지기 상호간 배선은 600V비닐절연전선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규정은 제품 생산여부가 불분명하고, 화재시 배선의 단락 및 단선 등의 문제로 소방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당 전선 사용규정을 2015. 1. 23. 개정시 삭제되었다. 현재는 감지기 사이 배선은 내열배선에 의하도록 개정됨

수신기 상호간의 배선은 전자파 방해를 방지하기 위한 실드선 등 ‘차폐전선’, 그 외 배선은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102)」(이하 “NFSC 102”라고 한다) 별표 1의 규정에 따른 ‘내화전선 또는 내열전선’으로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므로 연기감지기 감지회로 배선은 설계도서 및 위 기준에서 허용하고 있는 ‘내화전선·내열전선’ 내지 ‘600V 비닐절연전선’을 사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특별히 현장여건 등으로 배선의 종류 및 규격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 문서에 따라 기술검토 등을 하여 설계변경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는데도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선반용의 TFR-CVV의 규격으로 위 「NFSC102」 별표 1에서 규정한 공사방법(내열배선)²³⁾과 다르게 설치하였다. 그리고 「작업 지침서」(1.4.2) 등에서 규정한 시험성적서 등에 의한 전기용품 안전성(난연성능 등)에 대한 검증 없이²⁴⁾ 공동구 천장 면에 노출된 상태로 연장 19,196m를 부적합하게 설치한 것이므로 서울시설공단의 주장은 이유가 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하여 안전감사옴부즈만 자문에서도 ‘국가화재안전 규정은 전원케이블에 관한 사항은 있으나 제어케이블에 대하여는 명시가 없다. 따라서 제어케이블은 전기설비기술기준에 따라야 한다.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194조에 따르면 케이블 트레이공사에 난연케이블은 트레이공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트레이에 시공된 부분은 큰 문제가 없어 보이나, 트레이용인 TFR-CVV 케이블을 천장 면에 노출 시공된 연장 19,196m에 대하여는 금속관이나 2중금속제가요전선관 또는 합성수지관에 수납(인입)하여 시공하도록 시정 조치가 필요하다’는 자문의견이 제시되었다.

따라서 현재의 시공상태를 재조사하고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검토하여 「국가화재안전기준」 및 「전기설비기술기준」 등 규정에 부합하도록 재정비 방안을 마련하여 조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③ 서울시설공단에서는 설계도서는 “FR-CVV SB 1.5SQ”로 표기되었으나 시중 물가정보지에 “TFR-CVV SB 1.5SQ”로 표기되어 이를 적용하였고 케이블 소선수를 당초 1.5SQ×2C(송신선1, 수신선1) → 1.25SQ×3C(송신선1, 수신선1, 예비선1)로 변경한 사항은 운영 중 송수신 2회선 중 1회선 고장에 대비하여 규격을 1.25SQ×3C로 변경되었다고 주장하였다.

23) 금속관, 금속제가요전선관, 금속덕트 또는 케이블(불연성덕트에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공사방법에 따라야 함
 24) 현장 납품된 두원전선(주)의 전원케이블인 TFR-CVV 1.5SQ×2C는 한국전지전자시험연구원장으로부터 2010. 6. 10. 최초 “전기용품안전인증서(HH01010-2012F)”가 발부된 것으로 확인됨

그러나 통신배선의 굵기가 작고(약 17% 축소) 규격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문서에 따라 설계변경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도 이의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설계·계약된 사항을 시중 물가정보지에 맞추어 시공하였다는 주장은 타당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타 공동구 설치 사례에서도 통신배선은 “TFR-CVV SB 1.5SQ” 규격으로 설치되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근거 없는 모순된 변명에 불과하므로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공동구 내부에 설치된 연기감지기는 화재발생시 수신반에 화재정보를 가장 먼저 전달하는 자동화재탐지설비로 관련규정 및 계약된 설계도서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데도 이에 위반되게 설치되었으므로 현재의 상태를 면밀히 조사하고 각종 시설기준에의 적합성 등에 대하여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재정비 등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조치할 사항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은

- 55개소에서 연기감지기 중계지구역(Zone)과 선형열감지기 중계지구역(Zone)이 불일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화재경계구역의 체계에 맞게 연기감지기가 설치 되도록 하는 등 현장 환경을 고려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조치하고,
 - 설계규격과 다르게 설치한 ㉠공동구 등 5개 공동구의 천장 면에 노출 설치된 선반용 전원배선(TFR-CVV 1.5SQ×2C) 연장 19,196m에 대하여는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보완시공 방안을 마련하여 조치하시기 바라며,
 - ㉡공동구의 규격 미달 통신용배선(TFR-CVV SB 1.25SQ×3C) 연장(L) 790m에 대하여는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에 따라 보완 조치 하시기 바랍니다.(통보)

서울시설공단(공동구관리처)은

- 지하공동구 내 연기감지기 구매·설치하면서 설계검토 등에 대해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이 있어 이에 「서울특별시 행정감사 규칙」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경고합니다.(기관경고)

감 사 위 원 회

통 보

제 목 공동구내 체수지역 배수체계 재정비 필요 등 시설물관리 부적정

관 계 기 관 서울시설공단(공동구관리처)

내 용

1. ☑공동구내 체수지역의 배수체계 재정비 필요

서울시설공단에서는 1995. 1. 1.부터 “서울특별시 공동구 관리사무 대행 협약” 등에 따라 ☑공동구 시설물에 대한 경비, 점검 및 유지보수공사 등 관리대행 사무를 수행하고 있다.

「공동구 설치 및 관리지침」(국토교통부 훈령 제413호, 2014. 8. 12.) 제12조 (급·배수설비) 제1항 제2호, 「공동구 설계기준」(국토교통부, 2016. 6. 30.) 4. 설계 4.2 부대설비 4.2.1 기계설비 (2)급·배수설비에 따르면, 배수펌프, 집수정, 저수조 등 배수설비는 공동구 내 최저점에 설치하며 배수펌프는 수중펌프 설치를 원칙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서울시설공단(공동구관리처)은 ☑공동구 내의 주변지역으로부터 하향 구배 구간(좌우 약 100m)인 E-Line 300m 지점(체수구간)에 인접 환기구 등으로부터 빗물 유입과 공동구 배면으로부터 침투되는 지하수 등 체수를 위한 집수정(가로 10.88m, 세로 5.3m, 높이 0.53m, 면적 81.7㎡)을 운영하면서

수중 배수펌프를 공동구(집수정) 바닥판에서 완전 배수가 될 수 있는 최저점(바닥판보다 30cm 이상 아래)에 위치하도록 설치·운영하지 아니하고, 공동구의 바닥판과 동일한 위치(레벨)에 설치·운영하고 있었다.

그 결과 배수펌프를 완전 배수가 될 수 있는 최저점(바닥판보다 30cm 이상 아래)에 설치·운영하지 않음으로써 공동구 바닥판에서 높이 30cm 이상까지 체수가 되어야만

수중펌프가 작동하여 배수가 이루어지고, 높이 30cm 이하까지는 체수가 되어도 배수가 이루어지지 않아 별도의 배수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장기간 물이 고여 습기 등으로 전기 및 통신선로 등 수용시설의 관리 및 공동구 시설물 관리에 유해요인이 발생되게 하였다.

2. ☐공동구 바닥 들뜸부 원인규명 및 보수 등 조치 필요

서울시설공단(공동구관리처)에서는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1998. 4. 30. 제정) 제5조(관리사무의 위임) 및 「서울특별시 서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1983. 8. 17. 제정) 제19조(대행사업)에 따라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 공동구 관리사무 대행 협약”을 체결하여 ☐공동구(2004. 10월 준공) 시설물 관리대행 사무를 수행하고 있다.

공동구관리자는 「공동구 설치 및 관리지침」(국토교통부 훈령 제413호, 2014. 8. 12.) 제24조(유지관리 방법) 등에 따라 각종 안전점검으로 발견된 결함사항에 대하여는 발생 시기, 위치 및 형태와 그 원인 및 장애 추이를 정확히 평가·판정하고, 이에 따른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그런데 서울시설공단(공동구관리처)에서는 ☐공동구 B-Line 275m 부근에 바닥슬래브 신축이음부에 신축이음재(실란트) 이탈 및 바닥판에 약 2~3cm의 단차가 발생되어 있는데도 원인규명 등을 통한 유지보수, 관리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결과

서울시설공단에서는 ☐공동구 체수구간에 대해 인수 시부터 체수 되었던 구간으로 53cm의 단차가 있고 바닥판으로부터 20~44cm 높이에 철재 바닥판 통로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배수펌프도 바닥판 위에 설치되어 있어 단차부분을 집수정으로 간주하여 관리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당해 체수구간은 상습체수가 발생되지 않지만 배수체계 재검토를 위해 현재 추진 중인 “공동구 내부 상습체수구간 개선 실시설계용역”(이하 “실시설계용역”이라 한다) 추가과업에 포함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공동구의 본체 구조물은 전기선로 등 시설물의 수용과 관리자의 통행을 위한 것으로 집수정과 공용으로 기능을 발휘할 수 없고 구조물 자체에 물이 차 있는 경우에는 수용시설의 안전과 유지관리에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으며 물이 30cm 고여야 펌프가 가동(펌프가 가동되어도 약 30cm까지 체수)되므로 상시체수가 발생하는 구간인데도 이를 상승체수가 아니라는 주장은 이유가 되지 않는다.

또한, B사 외 1개사와 계약을 맺어 2017. 5. 12. ~12. 1.까지 실시한 ㉠ 공동구 정밀점검용역결과에 따르면 체수구간(용역보고서상 Sta 302~309m 지점)의 체수발생 해결을 위한 레벨측량 등을 통해 종합적인 배수체계 검토가 필요하다고 명시되어 있었다.

그러나 서울시설공단은 1995. 1. 1.부터 2018. 5월 현재까지 정기점검(분기별 1회) 및 순찰(주 1~3회), 배수설비 작동점검(주 1회) 등을 실시하면서 체수발생의 원인분석, 물의 유입경로 등에 대한 조사와 대책을 수립하지 않았다.

그리고 서울시설공단 공동구관리처-2272호(2018. 4. 9.)에 따르면 2017년 공동구 정밀점검 및 현장조사 결과에 따라 공동구 내부 상승체수구간 개선을 위하여 2018. 4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시행하면서도 위 정밀점검용역에 포함된 당해 체수구간에 대하여는 용역의 과업범위에 포함하지 않았다.

서울특별시 안전감사옴부즈만의 의견에 따르면 ‘우선적으로 공동구로 들어오는 외부 유입수 및 지하수에 대한 유입량 확인 등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원인 규명이 필요하고 구조적 안전성 확보, 지하매설물 현황조사, 유지관리 편리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서울시설공단에서는 위 ㉠공동구의 체수구간에 대해 물 유입경로와 유입량 조사, 현재의 배수체계 및 구조물의 안전성 검토 등을 통해 원인을 규명하고 배수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조치할 필요가 있다.

조치할 사항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은

- ① ㉠공동구 체수구간의 발생 원인을 규명하고 이에 적합한 배수체계를 재설계하여 재정비하시기 바라며

☐공동구 내 결함이 있는 신축이음부는 그 원인을 규명하여 무근콘크리트의 들뜸부 절취 및 단면보수 등을 하고 그 이후 지속적으로 추적 조사·관리하시기 바랍니다.(통보)

② 체수발생의 원인규명 및 그에 따른 시정조치 없이 장기간 방치하는 등 시설물 유지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자에 대하여 서울시설공단 「인사규정시행내규」 제9장 규정에 따라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주의)

※ 신분상 조치: 시설물 유지관리 업무 소홀 관련자 주의

감사위원회

통보 및 시정요구

제 목 공동구 점용료 등 부과·징수 부적정

관 계 기 관 안전총괄본부(도로시설과), 도시교통본부

내 용

서울특별시 안전총괄본부(2007. 7. 30. 이전 건설안전본부)에서는 「서울특별시 공동구 설치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1975. 12. 27. 제정, 이하 “공동구 점용료 등 조례”라 한다)에 따라 공동구²⁵⁾를 점용하는 자에게는 점용료와 공동구의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개축, 유지 등)인 관리비²⁶⁾를 부과·징수하고 있고, 공동구를 사용하는 자에게도 사용료를 부과·징수하고 있다.

2013년 이후 공동구 점용료 및 관리비, 사용료의 부과·징수 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공동구 점용료 등 부과·징수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계	47,157	6,797	6,933	8,361	7,421	8,820	8,819
점용료	37	0	0	37	0	0	0
사용료	1,725	267	274	282	293	297	312
관리비	45,389	6,530	6,659	8,042	7,128	8,523	8,507

1. 점용료 부과 대상을 사용료로 부과하여 공정성 저하

서울특별시 안전총괄본부(2007. 7. 30. 이전 건설안전본부)에서는 서울지방경찰청(2012. 12. 12. 이후 서울특별시 도시교통본부로 이관)으로부터 아래 [표 2]와 같이 1993년 이후 3차례에 걸쳐 허가 신청된 공동구 등 8건의 공동구내 교통정보 CCTV 카메라용 케이블(10.4km, 이하 “CCTV 케이블”이라 한다)에 대하여 사용허가 처리하여 매년 사용료를 부과·징수해 오고 있다.

25) 공동구란 전기·가스·수도 등의 공급설비, 통신시설, 하수도시설 등 지하매설물을 공동 수용함으로써 미관의 개선, 도로구조의 보전 및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함

26) 관리비는 관리비총액에 대한 점용면적비율에 따라 당해 공동구를 점용한 자가 함께 부담하고 사용료를 징수한 때에는 사용료를 공제한 금액을 관리비총액으로 함

[표 2] CCTV 케이블에 대한 공동구 사용허가 내역

허가년도	사용자	사용목적	연장(m)	공동구명	인근 토지 적용내역
총 계			10,448		
2006	서울지방 경찰청 (’12.12.12. 이후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교통정보 CCTV 카메라용 케이블 설치	445	㉠	○○○동 2, 30-1
			592	㉡	△△동 88-1, 281-2
			1,192	㉢	▷▷동 51, 34
2004	"	"	725	㉠	○○○동 2, 1-6
			1,434	㉡	▽동 927-5 △△동 88-1, 320
			1,340	㉢	◁◁동 51 ◇◇동 37
			1,720	㉣	▮▮동 236 ▽▽동 1376-4
1993	"	"	3,000	㉠	○○○동 2-2, 4-6, 5-2, 3-6, 3-2, 4-2, 8-1

※ 위 CCTV 케이블의 소유권은 2012. 12. 12. 서울특별시장(도시교통본부장)에게 이관

이에 서울특별시 도시교통본부(가과, 이하 “가과”라 한다)는 아래 [표 3]과 같이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이 CCTV 케이블(10.4km)에 대하여 매년 공동구 사용료로 287백만원(년 평균)을 서울특별시 안전총괄본부(도로시설과, 이하 “도로시설과”라 한다)에 납부하고 있다.

[표 3] CCTV 케이블 사용료 징수내역

(단위: 천원)

구 분	평 균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용료	287,582	267,264	274,064	282,016	292,842	296,766	312,545

「공동구 점용료 등 조례」 제4조(점용허가 등) 내지 제6조(관리비)에 따르면 공동구 설치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 자가 공동구를 점용하거나 사용하는 때에는 서울특별시장(도로시설과)에게 공동구 점용(사용)허가를 신청하도록 되어 있고,

특히 「공동구 점용예정면적 산정기준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훈령 제569호, 2002. 5. 30. 제정, 이하 “공동구 점용지침”이라 한다) 제3장 제2절 3-2-3(점·사용자)에서는 신규로 공동구를 영구점용하는 자에게는 점용료와 관리비를 징수하고 공동구를 일시점용(5년 이내를 말함)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도로시설과에서는 「공동구 점용료 등 조례」 제4조(점용허가 등) 내지 제6조(관리비), 「공동구 점용지침」 등 관련규정에 따라 공동구에 설치하는 CCTV 케이블이 최초 1993년에 교통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이용할 목적으로 설치되고,

설치된 이후부터 현재까지 존치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5년 이내의 일시점용이 아닌 영구점용에 당연 해당하므로 최초 1993년 허가 시 그리고 각각 2004년, 2006년 확장(추가) 허가하는 때에도 사용허가(사용료 부과·징수)가 아닌 점용허가(점용료 및 관리비 부과·징수)로 변경(전환) 조치하여야 했다.

그리고 가과에서도 최초 허가 신청시는 물론 이후 확장(추가) 신청하는 때 공동구에 설치된 CCTV 케이블을 5년 이내의 일시점용이 아닌 영구점용으로 점용허가 신청(변경: 전환)을 하여야 했다.

그런데 도로시설과(2007. 7. 30. 이전 건설안전본부 시설관리1부)는 최초 1993년에 1건을 허가하면서 CCTV 케이블이 도로 이용자에게 지속적으로 교통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5년 이상 운영되어야 하는 시설물임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으며,

특히 위 [표 2]의 사용허가 내역에서와 같이 최초 1993년에 1건을 허가한 이후 11년이 지난 2004년에 4건 그리고 13년이 지난 2006년에 3건의 CCTV 케이블을 각각 확장(추가) 허가하면서도 공동구의 점용기간(1993년 1건)이 5년 이상 지속되고 있음을 당연 알 수 있었는데도,

2004년 이후 2차례 걸쳐 「공동구 점용지침」에 따라 사용허가를 점용허가로 변경(전환)하도록 CCTV 케이블의 관리기관인 가과(2012. 12. 12. 이전 서울지방경 찰청)에 알리어 시정(사용 → 점용허가)되도록 조치하지 아니하고 관행적으로 사용허가로 처리하였다.

이후 2018년 현재까지 사용허가를 점용허가로 변경(전환) 없이 매년 사용료를 부과·징수 처리하고 있다.

또한 가과에서도 사용허가가 아닌 점용허가로 신청이나 변경(전환)요청을 하지 아니하고 매년 사용료 부과에 대한 이의 없이 사용료를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그 결과 CCTV 케이블이 1993년부터 2018년 현재까지 사용허가 처리됨으로써 가과는 사용료를 과다 납부(예산 낭비)하고 있고, 한국전력공사 등 타기관의 공동구 점용자는 점용료·관리비를 과소 납부(이득 발생)하게 된 결과를 초래하였다.

※ 관리비는 관리비총액에 대한 점용면적비율에 따라 당해 공동구를 점용한 자가 함께 부담하고 사용료를 징수한 때에는 사용료를 공제한 금액임을 관리비총액으로 함

이와 관련 점·사용료 등의 부과·징수 내역을 확인·분석한 결과 아래 [표 4]와 같이 가는 매년 약 210백만원(사용료)을 과다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의 반대 급부로 공동구 관리비 부과대상자 중 한국전력공사는 93백만원/년간, (주)케이티 51백만원/년간 등 점용료·관리비의 재정상 이익을 얻게 되는 결과가 초래되고 있다.

[표 4] 사용료 대비 점용료 등 재산정 내역

(단위: 천원)

구 분	공동구명	사용허가 사용료①	점용허가			차 액 (①-②)
			계②	점용료	관리비	
합계		312,545	101,928	11,232	90,696	210,617
2018년 (5월기준)	㉠	124,851	23,801	0	23,801	101,050
	㉡	68,072	13,736	2,556	11,180	54,336
	㉢	76,112	44,981	6,496	38,485	31,131
	㉣	43,510	19,410	2,180	17,230	24,100

※ 공동구의 내용연수는 40년이고 2018. 5월 기준으로 ㉠공동구 40년 이상 경과, ㉡·㉢·㉣공동구는 31년 경과되어 잔존 내용연수는 9년임

2. 사용료를 허가 건별로 산정하지 아니하고 토지가격 등 통합·평균 적용 산정

「공동구 점용료 등 조례」 제4조(점용허가 등) 내지 제6조(관리비)에 따르면 공동구를 사용하고자 하는 때는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이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의 월 사용료는 (사용면적×인근토지가격의 10퍼센트)/12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사용료는 허가 대상 건별로 인근의 토지가격을 적용하여 산정하여야 하며, 토지는 그 용도에 따라 가격 차이가 있으므로 도로와 유사한 용도의 토지를 선정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도로시설과(2007. 7. 30. 이전 건설안전본부 시설관리1부)에서는 CCTV 케이블(8건)에 대하여 점용허가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사용허가로 처리하면서도 1993년부터 2007년까지는 각각의 건별(8건)로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였으나 2008년부터는 위 [표 2]의 CCTV 케이블에 대한 공동구 사용허가 8건을 각각의 건별로 사용료를 산정하지 않고 정당한 이유 없이 8건을 통합하여 전체 토지 가격의 평균 가격을 적용하여 사용료를 부과·징수 처리하였다.

한편 “☐공동구 14단지 지선구간”은 2006년 사용허가할 당시에는 인근 토지 가격을 학교용지인 △△동 281-2로 적용하였으나 2008년부터는 대지인 △△동 282-2을 적용하여 사용료를 산정하여 부과·징수하였다.

그 결과 8건을 각각 건별로 사용료를 산정하지 아니하고 통합하여 사용료를 산정하고, 인근 토지의 가격을 부적정하게 적용함으로써 사용료가 과다 부과·징수 되어 공정성 저하를 초래하였다.

이와 관련 최근 5년간 부과된 사용료를 사용허가 건별로 인근 토지가격의 평균 값을 적용하여 재산정하고 2006년에 사용허가된 “☐공동구 14단지 지선구간”은 △△동 281-2(학교용지)의 토지가격을 적용하여 재산정한 결과 아래 [표 5]와 같이 년 평균 11,807천원이 가과에 과다 부과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5] 공동구 사용료 부과현황 및 재산정 내역

(단위: 천원)

구 분	평 균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차 액(①-②)	11,807	10,892	11,476	11,899	12,071	12,698
부과사용료①	291,646	274,064	282,016	292,842	296,766	312,545
재 산 정②	279,839	263,172	270,540	280,943	284,695	299,847

3) 무단점유자(서울교통공사 등) 과태료 미부과 및 무단점유시설에 대한 관리비를 제3자(한국전력공사)에게 부과·징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44조의3(공동구의 관리비용 등) 및 「공동구 점용료 등 조례」 제4조(점용허가 등) 및 제6조(관리비)에 따르면 공동구 설치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 자가 공동구를 점용하거나 사용하려면 그 공동구를 관리하는 공동구관리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공동구 점용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공동구를 점용한 자는 당해 공동구의 관리에 소요되는 관리비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국토계획법」 제144조(과태료)에 따르면 같은 법 제44조의3(공동구의 관리비용 등) 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동구를 점용하거나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도로시설과에서는 2015. 8. 27. 서울시설공단으로부터 아래 [표 6]과 같이 공동구내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점유시설 현황, 과거의 미허가 점유시설에

대한 과태료 부과사례²⁷⁾ 등 관련자료를 보고 받고서도 2018. 5월 현재까지도 과태료 부과 처분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6] 공동구내 점용허가 받지 아니한 점유시설 현황

공동구명	사용기관	설치구간	연장(m)	규격(mm ²)	설치일
합계			3,695		
㉔	소계	-	3,595	-	-
	A방송국	◇◇◇방향1,600m~△△방향110m	1,490	200	1993. 8.
	서울메트로	◇◇◇방향1,600m~11단지620m	1,395	250	1995.10.
	도시철도공사	◇◇◇방향1,600m~890m	710	325	1995.10.
㉕	도시철도공사	▽▽변전소~▽▽나루역 (M Line 2,500~2,600m)	100	250	-

그리고 위와 같이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 점용된 서울교통공사(舊(구) 서울메트로 및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의 전력선 2,205m에 대한 점용허가 및 무단 점용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징수하지 아니하고 이 무단 점용한 서울교통공사의 전력선에 대한 관리비 형식으로 한국전력공사의 ㉔·㉕공동구 관리비 784,486천 원에 포함하여 부과·징수 처리하였다.

이에 한국전력공사는 무단 점용자인 서울교통공사의 관리비를 도로시설과에 대납하고 대신에 대납한 금액(㉔·㉕공동구 관리비의 0.6%)에 해당하는 4,963천 원을 서울교통공사에 분담금으로 청구하여 받고 있었다.

그 결과 무단 점용자에게 과태료 미부과, 무단점유시설(서울교통공사 전력선)에 대한 관리비를 제3자(한국전력공사)에게 부과·징수함으로써 공정성 저하를 초래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결과

① 안전총괄본부(도로시설과)에서는 「국토계획법」에서 “사용”에서 “점용”으로의 전환에 대한 명시규정이 없고 「공동구 점용지침」에 사용료 부과기간(5년 이내)에 대하여 규정되어 있으나 “사용료의 점용료 전환” 명시규정이 없는 실정으로 확신이 없어 관례대로 사용료를 부과해 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공동구 점용지침」 제3장 제2절 3-2-3(점용료 및 사용료의 기준)에서는 점용료와 사용료를 정의하고 있고 사용료는 일시점용(5년 이내를 말한다) 하는

27) 2001. 5. 15. 감사원 감사(지하공동구 관리실태)에서 무단으로 통신케이블을 설치한 통신사업자로 하여금 소정의 절차를 거쳐 점용 및 사용하도록 처분하여 (주)파워콤 외 4개 통신사에 대해 점용허가 및 과태료 2.7억원 부과함(2004. 7. 19.)

경우로 5년 이내로 분명히 밝히고 있으므로 안전총괄본부(도로시설과)의 주장은 이유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위 법령 및 지침에서 사용료 부과대상을 일시점용의 5년으로 정의하면 그 자체로 누구든 인지할 수 있으므로 이에 덧붙여 사용료에서 점용료를 전환하라는 규정까지 있어야 된다는 것도 이유가 되지 않는다.

② 안전총괄본부(도로시설과)에서는 「공동구 점용료 등 조례」에 특별히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여 2008년 이후 관습적으로 허가건 전체를 통합하여 사용료를 산정하였고 서울시설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사용료 산출조서”에 오류가 없다고 판단하고 그대로 사용료를 부과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공동구 점용료 등 조례」 제4조 내지 제6조에서 허가신청에 따라 허가하고 이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허가 건별로 사용료를 산정하여 부과하여야 하는 것으로 안전총괄본부(도로시설과)의 주장은 이유가 되지 않는다.

③ 안전총괄본부(도로시설과)에서는 서울교통공사의 전력공급선로(케이블)는 기 허가된 한국전력공사의 점용구간 내에 설치되었기 때문에 존재 여부를 인지하지 못하였고 2014년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서울교통공사의 전력공급선로(케이블) 설치 현황자료를 제출받은 이후 설치된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관련 공동구 내 서울교통공사 전력공급선로(케이블) 설치는 최초 서울특별시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직접시행('95년~'96년), 점용허가자료를 찾지 못하여 허가절차 이행여부 확인이 어려운 실정이며 사실관계 확인 및 처리방안 등을 현재까지 검토 중인 관계로 한국전력공사에 관리비를 일괄 부과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이 2001년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에 따른 공동구내 무단 점용 시설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한 사실이 있고 이 건과 관련하여 서울시설공단으로부터 보고를 받고도 2년 9개월 이상 경과한 현재까지도 과태료 부과 절차 등도 없었고 공동구 관리비를 제3자에게 부과·징수하고 있는 것은 타당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

조치할 사항

도시교통본부장은

앞으로 교통정보 CCTV 케이블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공동구 설치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에 따라 공동구 점용허가로 변경 신청하여 연간 162,617천원 상당의 서울시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통보)

안전총괄본부장은

- ① 앞으로 교통정보 CCTV 케이블에 대하여 도시교통본부장에게 점용허가의 절차를 안내하여 「서울특별시 공동구 설치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에 맞게 점용료 및 관리비 등으로 납부되도록 조치와 사용료는 사용허가 건별로 산정·부과하여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조치하시기 바라며,(통보)
- ② 앞으로 공동구내 무단 점용시설에 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공동구 설치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등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 조치하고(통보), 그리고 점용료 등을 부과·징수하시기 바라며, 관련자에게는 과태료 등이 미부과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교육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시정)

※ 신분상 조치: 과태료부과 업무 소홀 관련자 주의

감사위원회 통보

제 목 변전소 등에서 공동구 연결되는 단독구의 도로점용료 미부과

관 계 기 관 안전총괄본부

내 용

서울특별시 자치구에서는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제5조(위임사무) [별표]에 따라 도로의 점용허가, 점용료의 부과·징수, 변상금의 부과·징수 등 도로관리에 관한 사무를 서울특별시시장으로부터 위임 받아 점용료 부과 등 도로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도로법」 제72조(변상금의 징수) 및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이하 “도로점용료 등 징수조례”라 한다)에 따르면 도로 점·사용 허가 받은 점용자에게 점용료(이하 “도로점용료”라 한다)를 부과·징수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도로를 점용한 기간에 대하여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부과·징수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서울특별시 ㉠구 등 5개 자치구에서는 점용료 부과 등 도로관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한국전력공사 등이 아래 [표]와 같이 변전소 등에서 도로 하부를 통하여 공동구 간을 연결하는 개별 단독구(이하 “단독구”라 한다) 7개소를 설치(운영)하여 해당 도로의 지하를 점용하고 있는데도

해당 자치구에서는 도로의 지하 점용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여 한국전력공사 등의 단독구 10개소 중 7개소에 대한 도로점용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위 7개소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도로점용료 등 징수조례」 제4조(점용료 등의 부과·징수)에 따른 변상금 부과 대상²⁸⁾에 해당하는데도 변상금 부과·징수도 이행하지 않고 있었다.

[표] 변전소 등에서 공동구 연결구간의 도로점용료 부과 여부 현황

(단위: m)

연번	구칭명	공동구명	변전소 등에서 공동구 연결구간 내역				도로점용료 부과여부	
			위치	높이	폭	연장 (공동구점합부 ~도로경계선)		
1	①구	㉠	○○동 739	2.3	3.2	91	한국전력공사	부과
2			○○동 719-1	2.3	1.9	608	(주)케이티	부과
3	②구	㉡	◇◇동 70-20	2.1	2.2	8	한국전력공사	미부과
4			◇◇동 72-4	2.1	2.2	36	한국전력공사	미부과
5	③구	㉢	△△동 314-7	3.0	3.6	40	한국전력공사	미부과
6			▽동 913-3	2.2	2.1	180	한국전력공사	미부과
7			▽동 917-3	2.3	1.9	15	(주)케이티	미부과
8	④구	㉣	◁◁◁동 2-11	2.0	3.0	50	한국전력공사	부과
9			◁◁◁동 4-6	2.4	4.1	4	(주)케이티	미부과
10	⑤구	㉤	▷▷동 161-2	2.3	3.2	20	한국전력공사	미부과

※ 참고로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도로점용료 및 변상금을 계산하여 본 결과 1년간 도로점용료는 3,393천원 상당의 금액이고 5년간 변상금은 20,363천원 상당의 금액인 것으로 나타남.

그 결과 무단 점용자에게 변상금 등을 부과하지 않음으로써 재정상 손실이 발생하였다.

조치할 사항

안전총괄본부장은

도로를 무단 점용하고 있는 자에게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 제72조(변상금의 징수) 및 자치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등의 규정에 따라 점용료 및 변상금 등이 부과·징수되도록 조치와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전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통보)

28) 도로점용에 대한 명시적인 도로점용허가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사정에 비추어 그 점유나 사용·수익을 정당화할 수 있는 법적 지위에 있는 자(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을 받은 자 등)에 대하여는 변상금을 부과할 수 없음(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8547 판결 참조)

감 사 위 원 회

개 선 요 구

제 목 “서울특별시 공동구 설치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개정 필요

관 계 기 관 안전총괄본부(도로시설과)

내 용

서울특별시 안전총괄본부(도로시설과)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에 따라 공동구의 설치 및 점용료 등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필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서울특별시 공동구 설치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이하 “서울시 공동구 조례”라 한다)를 제정·운영하고 있다.

위 「서울시 공동구 조례」 제4조(점용허가 등)에 따르면 공동구²⁹⁾의 설치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 자(부담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공동구를 점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동구 점용(사용)허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이를 허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서울시 공동구 조례」 제2조(정의) 및 제5조(점용료 및 사용료)에는 아래 [표 1]과 같이 공동구에 대한 정의 및 공동구를 점용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점용료와 사용료의 산정기준은 정하고 있으나, 점용료·사용료에 대한 용어의 정의와 각각의 점용기간 등 점용료·사용료 결정시 적용기준(점용과 사용의 구별)은 구체적으로 달리 정하여 두고 있지 않다.

반면에 국토교통부 훈령인 「공동구 점용예정면적 산정기준에 관한 지침」(이하 “국토교통부 공동구 지침”이라 한다)에는 아래 [표 1]과 같이 제1장 제2절(용어 정의)에서 “점용료”와 “사용료”의 용어를 각각 정의하고 있고,

특히 사용료는 공동구를 일시점용(5년 이내를 말한다)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다.

29) 공동구란 전기·가스·수도 등의 공급설비, 통신시설, 하수도시설 등 지하매설물을 공동 수용함으로써 미관의 개선, 도로구조의 보전 및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함

그리고 「국토교통부 공동구 지침」 제3장 제2절(점용료·사용료 결정의 적용기준)에서도 점용료·사용료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고, 사용료는 일시점용(5년 이내를 말한다)하는 경우에 부과하며 산출된 점용료를 점용 년수로 나누어 매년 징수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표 1] 「서울시 공동구 조례」와 「국토교통부 공동구 지침」의 점용료·사용료 관련사항 대비표

구 분	서울시 공동구 조례	국토교통부 공동구 지침
정 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동구란 『국토계획법』 제2조 제9호에서 규정한 시설물을 말한다.	제1장 제2절(용어의 정의) 5. “점용료”란 공동구의 설치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 자 및 공동구가 설치된 이후에 공동구를 점·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공동구를 영구점용하는 경우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을 말한다. 6. “사용료”란 공동구의 설치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 자 및 공동구가 설치된 이후에 공동구를 점·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공동구를 일시점용(5년이내를 말한다)하는 경우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을 말한다.
점·사용료 결정시 적용기준	제5조(점용료 및 사용료) ① 제4조에 따라 공동구를 점용 또는 사용 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사용료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1. 사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의 월사용료 : [사용면적 × 인근토지가격의 10%/ 12] 2. 사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의 월사용료 : [사용면적 × 인근토지가격의 20%/ 12]	제3장 제2절 3-2-3(점용료·사용료 결정시 적용기준) (1) 점용료: 신규 점용자가 영구점용하는 경우에 부과하며 점용료외에 별도의 관리비를 징수한다. (2) 사용료: 신규 점용자가 일시점용(5년이내를 말한다)하는 경우에 부과하며 산출된 점용료를 점용년수로 나누어 매년 징수한다.

이와 같이 「국토교통부 공동구 지침」에서는 점용료·사용료의 정의 및 결정 적용 기준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으나 「서울시 공동구 조례」는 점용료·사용료의 정의 및 적용기준 등이 미비되어 있다.

그 결과 공동구 관리부서인 서울특별시 안전총괄본부(2007. 7. 30. 이전 건설안전본부)에서는 1993년 이후 3차례(1993년, 2004년, 2006년)에 걸쳐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신청에 따라 공동구내 교통정보 CCTV 카메라용 케이블(이하 “CCTV 케이블”이라 한다) 10.4km(2012. 12. 12., 서울특별시로 소유권 이관)에 대하여 점용허가가 아닌 사용허가를 한 것으로 확인되며 이에 2018. 5월 현재까지 사용료를 부과·징수하고 있으며,

위 공동구 관리부서(서울특별시 안전총괄본부, 2007. 7. 30. 이전 건설안전본부)가 위 CCTV 케이블을 점용허가가 아닌 사용허가로 잘못 처리하여 아래 [표 2]와 같이 최근 5년간 서울특별시 도시교통본부로부터 1년에 약 210백만원(5년간 총액 약 1,050백만원)을 과다 부과·징수함으로써 이의 반대급부로 한국전력공사 등 타 기관의 공동구 점용자에게는 상대적으로 불공정하게 과소 납부(이득 발생)하게 되어 서울시 재정의 손실 발생을 초래하였다.

[표 2] 점용·사용 허가에 따른 점용료 등 비교 산출내역

(단위: 천원)

구 분	공동구명	사용허가 사용료①	점용허가			차 액 (①-②)
			계②	점용료(연간)	관리비	
합계		312,545	101,928	11,232	90,696	210,617
2018년 (5월기준)	㉠	124,851	23,801	0	23,801	101,050
	㉡	68,072	13,736	2,556	11,180	54,336
	㉢	76,112	44,981	6,496	38,485	31,131
	㉣	43,510	19,410	2,180	17,230	24,100

※ ㉠공동구는 내용연수 40년 이상 경과, ㉡·㉢·㉣공동구는 31년 경과되어 잔존 내용연수는 9년이며 위 [표] 상의 점용료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점용료를 잔존 내용연수로 나누어 연간금액으로 환산 적용함

따라서 「서울시 공동구 조례」의 점용료·사용료의 용어 정의, 적용기준 미비 등 비합리적인 운용은 공동구 점용자들에게 점용료·사용료 등의 불공정한 부과 및 서울시의 재정 손실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서울시 공동구 조례」의 합리적인 개정이 필요하다.

아울러 국토교통부에서도 지자체 자율성을 저해하는 관련 조문을 정비하기 위하여 2017. 10. 10. 「국토교통부 공동구 지침」 제2절(점·사용료 결정시 적용 기준)을 삭제하는 내용을 서울특별시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도시정책과-9780호) 한 후 2017. 11. 23. 이를 행정예고하고, 2017. 12. 19. 해당 지침의 개정사항을 서울특별시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재차 통보(도시정책과-12300호) 한 바 있다.

그리고 위 개정 사항을 통보하면서 특히 공동구관리자인 해당 지자체에서는 지침의 시행일(2018. 6. 20.)을 감안하여 점용료 또는 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 또는 개정하여 업무에 차질 없도록 조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안전총괄본부(도로시설과)에서는 위와 같이 국토교통부로부터 해당 조례 개정 안내를 받았으며 또한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점용료와 사용료의 적용에 있어 오류가 발생되어 공정성이 저하되고 있는 실정인데도 2018. 6. 20. 현재까지 「서울시 공동구 조례」에 대한 개정 등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었다.

조치할 사항

안전총괄본부장은

「서울특별시 공동구 설치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에 점용 또는 사용허가에 따른 점용료·사용료의 용어 정의 및 결정 적용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점용료·사용료 등의 불공정한 부과 및 서울시의 재정 손실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당 조례를 합리적으로 개정 조치하시기 바랍니다.(개선)

※ 신분상 조치: 조례개정 업무 소홀 관련자 주의

4. 2017년 하반기 건설공사장 하도급 관련 분야 감사

감사배경 및 목적

- 하도급 민원발생 등 부조리 개연성이 있는 건설 현장의 하도급 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를 통해 공정한 하도급 문화 정착에 기여

추진내용

- 감사대상 (6개소)

발주처	담당부서	대상 공사장
도시기반 시설본부 (3)	시설국 가부서	서울 ○○○○○○ 건립공사
	시설국 나부서	△△△△△△ △△△△ 및 시설현대화 사업
	시설국 다부서	◇◇◇◇◇◇ 확장공사 3공구
서울주택 도시공사 (3)	택지사업본부 라부서	◆◆◆◆ 도시개발사업3공구 기반시설조성공사
	건설안전사업본부 마부서	서울 □□□□□□□□ □□□ 아파트 건설공사
	건설안전사업본부 바부서	○○○○ ○○○ ○○○ 생활주택 및 ○○○ 장기전세주택 건설공사

- 감사기간 : 2017. 11. 9.~ 11. 29.(20일간)
- 감사인원 : 하도급감사팀장외 6명
- 감사범위 : 하도급분야 전반에 대한 관리 실태

감사중점

- 불법·불공정 하도급 행위 및 하도급 분야 관리감독 적정성 여부
- 책임감리(공사감독)의 하도급분야 업무수행 실태 등
- 건설기계 임대차 및 근로자 관리 적정성, 안전관리 적정 여부

지적사항 총괄

(단위: 건, 천원, 명)

합 계			변상 (금액)	징계 (인원)	시정(금액)				주의 (인원)	개선	권고	통보	고발 (인원)
총건수	신분상 조치인원	재정상 조치금액			소계	추징 (환수)	감액	기타					
55	15	0	0 (0)	0 (0)	2 (0)	0 (0)	0 (0)	2 (0)	21 (15)	0	0	32	0 (0)

□ 감사결과 처분요구 내역 및 조치현황 (2018.10.30.현재)

연번	공사현장	처분요구 제목	처분 유형	조치현황	비고
01		하도급계약서미작성·미교부 공사시행	통보 주의요구	- 위반 건설업체 행정처분 요청 -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조치 - 공사관계자 교육 - 신분상 조치완료	조치완료
02	서울 ○○○○○○ 건립공사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미발급	통보 주의요구	- 위반 건설업체 행정처분 요청 - 공사관계자 교육 - 신분상 조치완료	조치완료
03		건설기술자 배치 부적정	통보 주의요구	- 위반 건설업체 행정처분 요청 -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조치 - 공사관계자 교육 - 신분상 조치완료	조치완료
04		건설기계 대여업 등록없이 토사운반 시행	통보 주의요구	- 무등록 건설기계대여 행위 업체 고발 - 공사관계자 교육	조치완료
05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미발급	통보 주의요구	- 위반 건설업체 행정처분 요청 - 공사관계자 교육	조치완료
06	△△△△△ △ △ △ △ △ 및 시설현대화 사업	건설기술자 배치 부적정	통보 주의요구	- 위반 건설업체 고발 및 행정처분 요청 -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조치 - 공사관계자 교육 - 신분상 조치완료	조치완료
07		하도급계약시 불가변동 반영 부적정	통보 주의요구	- 위반 건설업체 행정처분 요청 -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조치 - 공사관계자 교육 - 신분상 조치완료	조치완료
08		대금e바로시스템 사용 부적정	주의요구	- 공사관계자 교육 - 신분상 조치완료	조치완료
09	◇◇◇◇◇ ◇	건설공사의 하수급인 자격 부적정	통보 주의요구	-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등 조치 - 공사관계자 교육 - 신분상 조치완료	조치완료
10	확장공사 3공구	대금e바로시스템 사용 부적정	주의요구	- 공사관계자 교육 - 신분상 조치완료	조치완료

연번	공사현장	처분요구 제목	처분 유형	조치현황	비고
11	◆◆◆◆ 도시개발 사업3공 구 기반 시설조성 공사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미발급	통보 주의요구	- 위반 건설업체 행정처분 요청 - 공사관계자 교육	조치완료
12		건설기술자 배치 부적정	통보 주의요구	- 위반 건설업체 행정처분 요청 및 고발 - 공사관계자 교육 - 신분상 조치완료	조치완료
13		대금바로시스템 사용 부적정	주의요구	- 공사관계자 교육 - 신분상 조치완료	조치완료
14		건설공사의 하수급인 자격 부적정	통보 시정요구 주의요구	- 위반 건설업체 행정처분 요청 및 고발 완료, 입찰참가제한 진행중 - 포장공사 시정조치, 공사관계자 교육 - 신분상 조치완료	조치중
15	서울 □ □□□□ □ □ □ □ □ □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미발급	통보 주의요구	- 위반 건설업체 행정처분 요청 - 공사관계자 교육	조치완료
16	아 파 트 건설공사	건설기술자 배치 부적정 및 현장 이탈	통보 주의요구	- 위반 건설업체 행정처분 요청 및 고발 - 위반 건설기술자 행정기관 통보 - 공사관계자 교육 - 신분상 조치완료	조치완료
17		공사감독자의 지정·배치기준 부적정	시정요구 주의요구	- 공사감독자 변경 배치 요구 - 관련자에 대한 교육 - 신분상 조치완료	조치완료
18		건설공사의 하수급인 자격 부적정	통보 주의요구	- 위반 건설업체 행정처분 요청 및 고발 완료, 입찰참가제한 진행중 -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조치중 - 공사관계자교육, 신분상 조치완료	조치중
19	○○○○ ○ ○ ○ ○ ○ ○ 생활주택	하도급계약서미작성·미교부 공사시행	통보 주의요구	- 위반 건설업체 행정처분 요청 -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조치 - 안전기시설관련 조사 확인 - 공사관계자 교육 - 신분상 조치완료	조치완료
20	및 ○○ ○ 장기 전세주택 건설공사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미발급	통보 주의요구	- 위반 건설업체 행정처분 요청 - 공사관계자 교육 - 신분상 조치완료	조치완료
21		건설기술자 배치 부적정 및 현장 이탈	통보 주의요구	- 위반 건설업체 행정처분 요청 및 고발 -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조치 - 위반 건설기술자 행정기관 통보 - 공사관계자 교육 - 신분상 조치완료	조치완료

5. 사면정비 및 조경(공원, 녹지) 특정감사

□ 감사배경 및 목적

- 사면정비 및 조경(공원·녹지) 분야의 특정업체 수의계약, 과다설계, 예산낭비, 불필요한 설계변경, 업체와의 유착관계 등 비리 개연성이 높은 부분에 대한 기관특정감사를 실시하여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실시함

□ 추진내용

- 감사대상 : 사면정비 및 조경(공원·녹지)분야 관련기관 중 표본선정
(市본청 : 2개소, 자치구 : 6개소, 투자기관 : 1개소)
- 감사기간 : '17. 9. 7.(목) ~ 10.23.(월).(기간 중 20일)
- 감사인원 : 안전감사3팀장 등 17명
- 감사범위 : 15.1.1.부터 처리한 업무 전반

□ 감사중점

- 공사 부당이행, 과다설계, 단가 부풀리기 등 예산낭비 여부
-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관리와 사용자재의 관리실태
- 특정업체 수의계약, 일감 몰아주기 등 특혜 여부

□ 지적사항 총괄

(단위 : 건, 천원, 명)

합 계			변상 (금액)	징계 (인원)	시정(금액)			주의 (인원)	개선	권고	통보	고발 (인원)
총건수	신분상 조치인원	재정상 조치금액			소계	추징 (환수)	감액					
27	37	2,633,199		5	8	6	2	11			3	
				(7)	(2,633,199)	(2,581,809)	(51,390)	(30)				

총 평

이번 감사는 '서울시 공무원 부정비리 차단 종합대책' 발표에 따라 시본청(2개), 자치구(6개) 및 산하공공기관(1개)을 대상으로 조경·녹지분야의 건설공사, 계약업무 등 비리 취약분야 전반에 대하여 2017.9.7.부터 10.23.까지 특별감사를 실시한 사항으로,

○ 감사결과 공무원과 업체 간의 유착관계나 일감 몰아주기 등 중대한 비위사항은 확인되지 않았음. 다만, 특정업체와 수의계약 체결, 불필요한 공종을 설계에 반영, 공사대금 과다 지급 등 공사 및 계약과정에서 업무를 소홀히 한 사례가 확인되었음

분야별 주요 지적사항

○ 첫째, 조경공사 분야

- 연결녹지 부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하부 토질의 단위중량값을 과다 산출·적용한 결과 인공경량토 치환 등 불필요한 공종이 설계에 반영되어 예산이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 관련 업무담당자, 감독자 등 문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기관에 징계를 요구하고, 공사관계자로부터 공사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해보전 받는 방안을 마련토록 요구하였음
- 동 사항에 대해 피감기관에서는 2018.11월 중 징계심의 인사위원회, 2019.2월 중 관련업체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위한 상벌심사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공사비와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 등 손해보전 방안을 마련 중에 있음

○ 둘째, 사방사업 분야

- 사방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시공자가 콘크리트 뿔어붙이기, 수목식재 공종 등을 시행하지 않거나 부족하게 시공하였음에도 발주청에서 검측 업무를 소홀히 하여 공사비를 감액하지 않고 준공처리한 사례가 확인되었음
- 동 사항에 대해 공사 관계자로부터 과다 지급된 공사대금은 회수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자격정지 등 행정조치를 완료하였으며, 공사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공무원에게는 징계를 요구하였음

○ 셋째, 계약 분야

- 가로변 유희공지 녹화를 위해 잔디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수의계약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용역에 대해 계약담당자가 관련규정 미숙지로 동일한 업자와 2015~2016년 중 연속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함
- 앞으로는 공개경쟁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게 하여 지방계약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요구 하였으며, 피감기관에서는 관련자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완료하고 유사사례 재발방지 교육을 실시하였음

□ 감사결과 처분요구 내역 및 조치현황

○ 처분요구 조치 결과('18.10월 기준)

연번	처분요구 제목	처분 종류	지적내용	조치사항	비고
1	연결녹지부지의 하부 지하철 5호선 구조물 안전성 검토 소홀에 따른 조경공사 설계변경 부적정	통보	-연결녹지부지 하부의 토질 단위중량 값을 과다 산출·적용한 결과 인공경량토 치환 등 불필요한 공중이 설계에 반영되어 2,318백만원의 예산낭비 초래 -토양치환 공중에 수반되는 인공 경량토 자재 등에 대해 임의가격 적용	-설계자, 시공업체 및 감리용역업체 입찰 참가자격제한 처분 -공사관계자에게 계약상 채무불이행 등을 사유로 손해보전을 받는 방안 마련 -관련자 신분상 조치	진행중
2	가로변 잔디관리 용역 발주(수의계약) 부적정	주의 요구	-수의계약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용역을 동일한 업자와 연속적으로 수의계약 체결	-전 직원 교육 실시완료 -관련자 신분상 조치	완료
3	공원 주차장 위탁 운영자(수탁자) 관리 소홀	통보 주의 요구	-공원 내 가설건축물 무단 설치·사용에 대해 행정조치 없이 관리하여 제3자에게 특혜제공	-주차장 사업자 행정처분 조치 -관련자 신분상 조치	완료
4	'17년 산사태 예방 사방공사 낙석방지책 설계변경 부적정	통보 주의 요구	-사방공사 중 당초 설계된 낙석방지책을 설치하지 않고 조경용 일반헨스로 임의 설치	-사면구간에 낙석방지망 및 고정핀 설치 등 안전성이 강화되도록 조치 -관련자 신분상 조치	진행중
5	'16년 예방 사방공사(계류보전) 방수로 시공 부적정	주의 요구 통보	-사방공사 중 골막이 방수로를 당초 설계단면적보다 작게 시공	-공사관계자 자격정지 처분 -관련자 신분상 조치	완료
6	1인 견적 수의계약 부적정	주의 요구	-공원 유지관리를 위한 작업용 전동차를 구매하면서 1개월에 한 대씩 분리 발주하여 1인견적 수의계약으로 구매	-전 직원 교육 실시완료	완료
7	수련관 옥상녹화 조성공사 시공 부적정	시정 요구 통보	-수련관의 옥상난간을 법적높이에 미달되게 시공	-난간부분 식재토심 조정하여 법적높이 확보 -공사관계자에게 주의통보	완료
8	'15년 산사태예방 사방사업(2지구) 공사감독 소홀	시정 요구	-사방사업 비탈면 고르기와 식물매트를 설계보다 적게 시공한 채 준공처리하여 공사비 22,130천원 예산낭비	-미시공 물량 환수조치 -관련자 신분상 조치	완료

연번	처분요구 제목	처분 종류	지적내용	조치사항	비고
9	가설 안전휀스 설계 부적정	주의 요구	-'15년~'16년 시행한 7개 사업에 가설 안전휀스를 손료가 아닌 구 매설치로 설계하여 13,459천원 과다 정산	-관련자 신분상 조치	완료
10	'16년 예방사방공사(산림사면) 준공 검사 소홀	시정 요구	-사방사업의 면고르기와 낙석방지 망 공종을 실제 시공한 면적보다 316㎡ 과다 정산 및 준공하여 9,858천원 예산낭비	-공사관계자에게 과다지급 공사 비 납부 요청 -관련자 신분상 조치	진행중
11	식생토양 옹벽 설치 설계대가 정산 부적정	주의 요구	-식생토양 옹벽 설치품을 납품업체 에서 받은 일위대가로 임의 적용 하여 과다설계 및 정산처리	-전 직원 교육 실시완료 -관련자 신분상 조치	완료
12	'16년 가로수 생육 환경개선사업 토양 개량 부적정	시정 요구	-토양개량을 위한 토파기를 당초 설계와 다르게 식재 지면으로부터 적게 시공한 채 정산 준공처리하 여 10,360천원 예산낭비	-공사관계자로부터 공사비 환수 조치 -관련자 신분상 조치	완료
13	'17년 도시구조물 벽면녹화 조성공사 토양개량 부적정	시정 요구	-토양개량을 위한 토파기를 당초 설계와 다르게 식재 지면으로부터 적게 시공한 채 정산 준공처리하 여 9,832천원 예산낭비	-공사관계자로부터 공사비 환수 조치 -관련자 신분상 조치	완료
14	건설공사의 하도급 계약 적정성 검토 소홀 및 전기공사 의 분리발주 미이 행	시정 요구	-석공사와 포장공사업자에게 하도 급하여야 할 공사를 조정시설물 공사업자에게 부적정하게 하는 등 공사감독 소홀	-해당공사 진행시 도급사가 직 접 시공하도록 처리 -관련자 신분상 조치	완료
15	건설공사대장 기재 사항 지연통보 및 확인업무 소홀 등	주의 요구 통보	-수급인은 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 을 발주자에게 지연통보하고 발주 지는 수급인으로부터의 통보여부 를 확인하지 않는 등 지도감독 업 무소홀	-공사관계자 시정명령 및 고발 -관련자 신분상 조치	완료
16	건설공사의 품질관 리 등을 위한 감독 업무 소홀	통보 주의 요구	-건설공사용 자재 미검사, 안전관리 계획서 미승인, 조정석 석면허용 기준 미검사 등 감독업무 소홀	-조정석에 대한 석면허용기준 검사 실시 -관련자 신분상 조치	진행중
17	조정석 관련 조 경수 등 시설물 인 수인계(이관) 제도 개선	통보	-조정수에 대한 하자검사 미실시, 하자보수보증금 이관 부적정 등 관련업무 소홀	-하자관리 주체 및 관리기관 등 을 명시하여 인계서 송부처리	완료

연번	처분요구 제목	처분 종류	지적내용	조치사항	비고
18	2016년 사방사업, 공사대금 부당집행 및 자재관리 부적정	시정 요구 통보	-콘크리트 뽀아붙이기, 수목식재 등 미이행 또는 부족 시공의 공사대금 110,706천원 과다지급 -발주청이 지급한 관급자재 중 미시공한 잔여분(2,693개, 25,583천원 상당) 미회수	-과다 지급된 공사대금 회수 및 미시공 자재 반납 조치 완료 -시공업체 및 감리용역업체 입찰 참가자격제한 처분('18.10.16) -관련자 신분상 조치	완료
19	2015년 사방사업, 공사대금 부당집행 및 설계변경 부적정	시정 요구 통보	-두께 12cm의 사면보호공, 길이 5m의 락볼트 등 미이행 공사대금 44,296 천원 과다지급 -설계변경하면서 삭제된 석축쌓기 공종의 부속된 공사비(자재 운반비, 22,690천원) 미감액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과다 지급된 공사대금 회수완료 -시공업체 및 감리용역업체 입찰 참가자격제한 처분('18.10.16) -관련자 신분상 조치	완료
20	공원조성사업, 도로 공사 품질관리 및 설계변경 부적정	시정 요구 통보	-공사시방서에 따른 도로공사 품질 시험 미이행 및 도로 동상방지층 미시공	-시공사에 재시공 통보 -부실벌점 부과확정('18.4.11.) -관련자 신분상 조치	진행중
21	목계단 품질시험 미이행 및 수종과 방부성능 사방기준 미달	시정 요구 통보	-품질시험계획 승인절차 및 목재 품질시험(방부시험) 미이행 -설계(국내산 낙엽송)와 다른 수종 (미송) 시공 및 방부성능(H4→ H3)도 미달	-다른 수종의 목재로 시공한 부분에 대한 공사대금 환수완료 -건설기술자 벌점부과 통보('18.6.11) -관련자 신분상 조치	완료
22	건물 등 철거공사와 폐기물처리용역의 계약방법 및 정산 부적정	주의 요구 시정 요구	-단일 사업 내에 철거공사 및 건설 폐기물 처리용역 등을 사업쪼개기로 1인 견적 수의계약 등으로 집행 -지장물 철거 및 폐기물처리 등 용 역 물량 중복으로 2,006천원 과 다지급	-과다 지급된 사업예산 환수조치 완료('18.2.28.) -관련자 신분상 조치	완료
23	서울대공원 입구 숲 조성 실시설계 용역 중복시행	주의 요구	-과업범위에 대한 설계를 이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용역을 타절하였 는데도 용역대금은 전액 지급 -용역 타절로 제외된 면적에 대한 실시설계용역을 추가로 시행하여 용역비 18,260천원이 낭비되는 결과 초래	-전 직원 교육 실시완료 -관련자 신분상 조치	완료

연번	처분요구 제목	처분 종류	지적내용	조치사항	비고
24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사업의 잔디 보호책 정산 부적정	시정 요구	-설계도에 잔디보호책 698경간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나 미설치 또는 경간이 축소되었는데도 준공 처리하여 5,782천원 과다지급	-과다 지급된 공사대금 환수완료 -관련자 신분상 조치	완료
25	2016년 사방사업, 목재 흠막이 추가 설계변경 부적정	주의 요구	-완만한 경사지로 자연경사가 가능함에도 목재 흠막이를 시공사가 설계변경 요구하자 세부 기술검토 없이 추가시켜 53,263천원 증액	-관련자 신분상 조치	완료
26	기존 옹벽의 안전성 미검토 등 설계변경 부적정	통보	-토사나 풍화암 등에 적용하는 Soil Nailing 공법을 암반지역에 추가하여 33,968천원 증액	-관련자 신분상 조치	완료
27	조달청 단가 계약된 물자는 조달청장에게 구매	통보	-초화류 등 조달청 단가 계약된 식물을 도급공사에 포함 구매 및 자체 입찰로 구매하였으나 조달청을 통해 구매하는 경우 예산 절감효과	-자치구, 사업소 등에 조달청 단가계약 체결된 물자 구매시 조달청을 통해 구매토록 통보 조치	완료

6. 서울거리예술축제 2018 안전관리실태 현장감사

□ 감사개요

- 감사명 : 서울거리예술축제 2018
- 감사대상 : 문화예술과
- 감사일시 : 2018. 10. 4. ~ 10. 7. (감사결과 통보 : 2018. 10. 26.)
- 감사자 : 일상감사팀장 등 5명

□ 감사 중점사항

- 행사 전 안전사고 예방 사전 준비 과정
- 행사진행 중 안전사고 예방 활동의 적정성
- 행사종료 후 행사장 정리 및 관람객 안전 귀가 대책 적정성
- 기타 시민, 관람객 불편사항 모니터링(민원접수 및 처리 적정여부) 등

□ 지적사항 총괄

(단위 : 건, 천원, 명)

합 계			변상 (금액)	징계 (인원)	시정(금액)				주의 (인원)	개선	권고	통보	고발 (인원)
총건수	신분상 조치인원	재정상 조치금액			소계	추징 (환수)	감액	기타					
6	0	0	0 (0)	0 (0)	0 (0)	0 (0)	0 (0)	0 (0)	6	0	0	0 (0)	

※ 현지시정 3건

붙임 안전관리실태 현장감사 결과 조치요구서 1부

안전관리실태 현장감사 결과 조치요구서

- 서울거리예술축제 2018 -

□ 행정상조치 : 개선요구(총 6건)

연 번	주요 지적사항	처분유형
1	<p>차도보행자 통제 미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광장 및 세종대로 등을 찾은 관람객들이 차도를 무단으로 보행 하는데도 이를 제재하거나 지도하는 안전요원 등을 배치하지 않아 교통사고가 일어날 우려가 있었으므로, ○ 향후 행사 진행시 차도를 건너는 보행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요원을 현장에 추가로 배치하거나 경찰 협조를 받아 교통지도를 하는 등의 형태로 개선요구 <p>⇒ 무단으로 차도를 보행 하지 못하도록 안전요원을 현장에 추가로 배치하거나 경찰의 협조를 받아 교통지도를 하는 등의 형태로 개선하시기 바랍니다.</p>	개선요구
2	<p>시설물 철거자 안전장비 미착용 및 시설물 철거 시 보행자 안전 위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사 종료 후 시설물 철거 시 근로자가 안전모 등 안전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철거작업을 하는 등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향후에 시설물 철거작업에 투입되는 근로자에게도 추가로 안전수칙을 교육하도록 개선요구 ○ 아울러 철거작업 시 철거차량 및 보행자가 혼재되어 교통사고가 일어날 수 있으므로 향후에, 차도를 건너는 보행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요원을 현장에 추가로 배치하거나 경찰 협조를 받아 교통지도를 하는 등의 형태로 개선요구 <p>⇒ 시설물 철거 시 투입되는 근로자들에 대해 안전교육을 실시 하고 철거 작업 시 안전요원들을 추가로 현장에 배치하거나 경찰의 협조를 통해 교통정리를 하는 등의 형태로 개선하시기 바랍니다.</p>	개선요구
3	<p>발전기 주변 안전펜스 미설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종대로 행사장에 설치된 발전기 주변에 안전펜스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관람객 등이 발전기 접촉 시 감전사고 등의 안전 	개선요구

연 번	주요 지적사항	처분유형
	<p>사고가 일어날 우려가 있었으므로 향후 행사 진행 시 발전기 현황을 파악한 다음 주변에 안전펜스를 설치하도록 개선요구 ⇒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발전기 주변에 안전펜스를 설치하도록 개선하시기 바랍니다.</p>	
4	<p>야간행사 시 자원봉사자 식별 곤란</p> <p>○ 행사장 주변에 안전관리요원 및 자원봉사자를 배치하였으나 자원봉사자의 복장이 야간에는 식별이 곤란한 검은색이어서 밤에 관람객이 도움을 요청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함 ⇒ 자원봉사자는 야간에도 식별이 용이한 야광조끼 등의 복장을 착용하도록 개선하시기 바랍니다.</p>	개선요구
5	<p>안전관리책임자 연락처 미기재</p> <p>○ 축제장 안내책자에 안전관리책임자 성명 및 연락처가 기재되지 않아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사고 대처를 어렵게 하였으므로, 차후 행사 진행시 안내책자에 지휘통제부의 연락처 또는 비상연락망을 기재하는 등의 형태로 개선이 필요함 ⇒ 차후 행사 진행시 사고대처를 신속하게 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안내책자에 지휘통제부 연락처 또는 비상연락망 등을 기재하는 형태로 개선하시기 바랍니다.</p>	개선요구
6	<p>불법 거리가게 설치 제한</p> <p>○ 세종대로 축제현장에서 관람객들의 주 동선에 불법 거리가게를 운영하는 현상이 적출되었으므로, 향후 행사 진행시 주관부서에서는 관람객들의 주 동선을 파악한 다음 해당 장소에 불법 거리가게의 운영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사전계도·단속대책을 관련부서와 협의 하에 수립하도록 개선 요구 ⇒ 불법거리가게 영업으로 관람객 및 보행자가 불편을 겪고 있는 사항이 적출되었으므로 향후 주관부서에서 관람객들의 주 동선에 맞춰 불법거리가게의 운영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사전계도·단속대책을 관련부서와의 협의 하에 수립하시기 바랍니다.</p>	개선요구

□ 현지시정 : 총 3건

연 번	주요 지적사항	처분유형
1	<p>행사장 내 전기분전함 관리 미흡</p> <p>○ 무교로 현장 및 세종대로 현장 등의 전기 분전함은 잠금장치를 하지 않아 관람객들이 분전함을 접촉할 경우 감전 등의 안전 사고가 일어날 우려가 있었음</p> <p>⇒ 전기 분전함은 잠금장치를 하여 감전사고 등 관람객들이 안전 사고에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p>	현지시정
2	<p>행사장 주변 전기배선 관리 미흡</p> <p>○ 서울광장, 광화문 광장 내 전기배선은 안전덮개를 하지 않아 피복이 관람객들에게 노출되어 감전 등 안전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었음</p> <p>⇒ 전기배선은 안전덮개 등으로 관리하여 관람객들이 안전사고에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p>	현지시정
3	<p>행사장내 위험지역(청계광장 분수대, 모전교 하부 등) 안전관리 미흡</p> <p>○ 관람객중 일부는 위험한 지역(청계광장 분수대, 모전교 하부 등)에 올라가거나 물가에 앉는 등의 행위로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으나 이를 제지하는 안전요원이 배치되어 있지 않거나 위험지역 근처에 보호펜스가 설치되지 않아 낙상사고 등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었음</p> <p>⇒ 관람객들이 위험지역에 올라가거나 위험지역 근처에 앉는 행위 등을 하지 못하도록 안전요원으로 하여금 계도하도록 조치</p>	현지시정

붙 임 감사결과 세부지적사항 1부

[붙임]

감사결과 세부지적사항

[개선요구]

① 차도보행자 통제 미흡

보행자 통행에 위험이 있는 차도는 행사장을 찾는 관람객들에게 출입을 통제하는 등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여야 하는데도

- 서울광장 및 세종대로 등을 찾은 관람객들이 차도를 무단으로 보행 하는데도 이를 제재하거나 지도하는 안전요원 등을 배치하지 않아 교통사고가 일어날 우려가 있었으므로,
- 향후 행사 진행시 차도를 건너는 보행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요원을 현장에 추가로 배치하거나 경찰 협조를 받아 교통지도를 하는 등의 형태로 개선요구

▶ 무단으로 차도를 보행 하지 못하도록 안전요원을 현장에 추가로 배치하거나 경찰의 협조를 받아 교통지도를 하는 등의 형태로 개선요구

② 시설물 철거자 안전장비 미착용 및 시설물 철거 시 보행자 안전 위협

시설물 철거 시 근로자는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보장하여야 하는데도

- 행사 종료 후 시설물 철거 시 근로자가 안전모 등 안전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철거작업을 하는 등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향후 시설물 철거작업에 투입되는 근로자에게도 추가로 안전수칙을 교육하도록 개선요구
- 아울러 철거작업 시 철거차량 및 보행자가 혼재되어 교통사고가 일어날 수 있으므로 향후에, 차도를 건너는 보행자들의 안전을 확보하

기 위해 안전요원을 현장에 추가로 배치하거나 경찰 협조를 받아 교통지도를 하는 등의 형태로 개선요구

시설물 철거 시 투입되는 근로자들에 대해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철거 작업 시 안전요원들을 추가로 현장에 배치하거나 경찰의 협조를 통해 교통정리를 하는 등의 형태로 개선요구

③ 발전기 주변 안전펜스 미설치

축제행사 진행시 전기위험시설과 관람객의 접촉을 차단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했어야 함에도

- 세종대로 행사장에 설치된 발전기 주변에 안전펜스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관람객 등이 발전기 접촉 시 감전사고 등의 안전사고가 일어날 우려가 있었으므로 향후 행사 진행 시 발전기 현황을 파악한 다음 주변에 안전펜스를 설치하도록 개선요구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발전기 주변에 안전펜스를 설치하도록 개선요구

④ 야간행사 시 자원봉사자 식별 곤란

야간행사 시에는 관람객 등이 자원봉사자를 쉽게 식별하고 유사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복장 등에서 차별화를 도모하는 것이 필요한데도

- 행사장 주변에 안전관리요원 및 자원봉사자를 배치하였으나 자원봉사자의 복장이 야간에는 식별이 곤란한 검은색이어서 밤에 관람객이 도움을 요청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함

자원봉사자는 야간에도 식별이 용이한 야광조끼 등의 복장을 착용하도록 개선요구

5] 안전관리책임자 연락처 미기재

축제기간 중 축제장 내에 현수막, 전단지 등을 활용하여 안전관리 책임자 성명, 연락처 등을 기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 축제장 안내책자에 안전관리책임자 성명 및 연락처가 기재되지 않아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사고 대처를 어렵게 하였으므로, 차후 행사 진행시 안내책자에 지휘통제부의 연락처 또는 비상연락망을 기재하는 등의 형태로 개선이 필요함

차후 행사 진행시 사고대처를 신속하게 할 수 있게 하기 위해
▶▶▶ 안내책자에 지휘통제부 연락처 또는 비상연락망 등을 기재하는 형태로 개선하도록 요구

6] 불법 거리가게 설치 제한

행사장 질서유지 및 통행자 불편 해소를 위하여 관람객의 주 동선에 불법 거리가게 설치를 제한하는 등 사전지도 및 단속대책을 마련했어야 함에도

- 세종대로 축제현장에서 관람객들의 주 동선에 불법 거리가게를 운영하는 현상이 적출되었으므로, 향후 행사 진행시 주관부서에서는 관람객들의 주 동선을 파악한 다음 해당 장소에 불법 거리가게의 운영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사전계도·단속대책을 관련부서와 협의 하에 수립하도록 개선 요구

불법거리가게 영업으로 관람객 및 보행자가 불편을 겪고 있는 사항이 적출되었으므로 향후 주관부서에서 관람객들의 주 동선에 맞춰 불법거리가게의 운영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사전계도·단속대책을 관련부서와의 협의 하에 수립하도록 요구

[현지시정]

① 행사장내 전기 분전함 관리 미흡

축제행사 진행시 전기위험시설과 관람객의 접촉을 차단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하는데도

- 무교로 현장 및 세종대로 현장 등의 전기 분전함은 잠금장치를 하지 않아 관람객들이 분전함을 접촉할 경우 감전 등의 안전사고가 일어날 우려가 있었음

▶ 전기 분전함은 잠금장치를 하여 감전사고 등 관람객들이 안전사고에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

② 행사장 주변 전기배선 관리 미흡

축제행사 진행시 전기배선은 안전덮개 등으로 피복이 벗겨지지 않도록 하는 등 안전조치를 함으로써 관람객에게 노출되지 않아야 하는데도

- 서울광장, 광화문 광장 내 전기배선은 안전덮개를 하지 않아 피복이 관람객들에게 노출되어 감전 등 안전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었음

▶ 전기배선은 안전덮개 등으로 관리하여 관람객들이 안전사고에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

③ 행사장내 위험지역(청계광장 분수대, 모전교 하부 등) 안전관리 미흡

행사장을 찾는 관람객들이 안전하게 관람할 수 있도록 안전요원을 배치하거나 근처에 보호펜스 등을 설치하여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하는데도

7. 계약심사제도 운영실태감사

감사배경 및 목적

- 예산절감, 적정 사업비 산정 등을 위해 실시하는 계약심사제도 운영실태를 점검하여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 등을 마련함으로써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함

추진내용

- 감사대상 : 서울시 계약심사과, 서울시설공단
- 감사기간 : 2017. 9. 21. ~ 11. 3.(기간 중 20일)
- 감사인원 : 일상감사팀장 외 5명
- 감사범위 : 2015. 1. 1.부터 처리한 계약심사 관련 업무

감사중점

- 관련 규정, 표준품셈, 시장조사 등에 의한 원가심사의 적정성
- 원가 감액의 타당성, 무리한 감액으로 인한 사업추진 지장 여부
- 계약심사 처리 기간, 이의신청 처리 등 관련 절차의 적정성
- 계약심사 대상사업 선정의 적정성 등

지적사항 총괄

(단위 : 건, 천원, 명)

합 계			변 상 (금액)	징계 (인원)	시정(금액)				주의 (인원)	개선	권고	통보	고발 (인원)
총건수	신분상 조치인원	재정상 조치금액			소 계	추 정 (환수)	감 액	기 타					
21	1	0	0	0	0	0	0	11 (1)	0	0	10	0	

□ 감사결과 처분요구 내역 및 조치현황

연번	처분요구	처분유형	조치현황	비고
1	계약심사 결과 지연통보	주의요구 통보	○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 결과 통보 확행 및 심사기간 연장 시 사업부서와 협의 후 공문을 통해 기간 조정토록 개선(계약심사 처리 매뉴얼 개정)	조치완료
2	일반관리비 계약심사 부적정	주의요구	○ 심사담당자를 대상으로 예정가격 작성요령 등 공사 원가심사 관련 교육 실시	조치완료
3	공사 경비항목 계약심사 부적정	주의요구	○ 심사담당자를 대상으로 예정가격 작성요령 등 공사 원가심사 관련 교육 실시	조치완료
4	퇴직공제부금비 계약심사 부적정	주의요구	○ 심사담당자를 대상으로 예정가격 작성요령 등 공사 원가심사 관련 교육 실시	조치완료
5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약심사 부적정	주의요구	○ 심사담당자를 대상으로 예정가격 작성요령 등 공사 원가심사 관련 교육 실시	조치완료
6	공사 산재보험료율 계약심사 불철저	주의요구	○ 심사담당자를 대상으로 예정가격 작성요령 등 공사 원가심사 관련 교육 실시	조치완료
7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된 자재의 계약심사 부적정	주의요구	○ 심사담당자를 대상으로 예정가격 작성요령 등 공사 원가심사 관련 교육 실시	조치완료
8	재심사 처리절차 불합리	주의요구 통보	○ 심사결과 통보 시 재심사(이의신청) 절차 안내하고 재심사 요청 시 원가분석자문회의 의무적 개최토록 개선(계약심사 처리 매뉴얼 개정)	조치완료
9	건설폐기물처리용역 계약심사 불합리	통보	○ 설계서 작성 시 운반비 산정의 기준이 되는 운반위치 등 조건을 구체적으로 작성토록 사업부서에 안내하고 공동된 심사 기준에 대해 심사직원 자체 교육 실시(감사결과 처분요구 조치계획 수립 시행, 계약심사과-3669)	조치완료
10	계약심사 근거자료 관리 소홀	통보	○ 계약심사 결과 통보문서에 견적서 첨부(첨부분서 부분공개)하여 시행(감사결과 처분요구 조치계획 수립 시행, 계약심사과-3443)	조치완료
11	승강장스크린도어 제작설치 사업 계약심사 미흡	주의요구	○ 심사담당자를 대상으로 예정가격 작성요령 등 원가심사 관련 교육 실시	조치완료

12	계약심사 조정률별 책임설명제 운영 불철저	통보	○ 조정률별 책임설명제 및 사업부서와의 사전협의 확행하고 결과통보서에 협의결과 명시토록 양식 개선(계약심사 처리 매뉴얼 개정)	조치완료
13	겸임심사자에 의한 계약심사 미흡	통보	○ 기술계약심사업무 워크숍 개최를 통해 심사 사례 전파 및 교육 등으로 겸임심사자 심사능력 향상	조치완료
14	계약심사 제외대상 지정 불합리	통보	○ 「계약심사 및 기술심의 업무처리 시행내규」 개정 추진중('18.7.1. 시행 예정) - 계약심사 제외사업 (감사 및 심사부서 사업, 정보화사업)을 계약심사 대상으로 변경	조치중
15	완제품·단순구매 물품 계약심사 제외 불합리	통보	○ 「계약심사 및 기술심의 업무처리 시행내규」 개정 추진중('18.7.1. 시행 예정) - 계약심사 제외사업 (완제품 구매) 중 가격비교가 가능한 경우 계약심사 대상에 포함하는 것으로 변경	조치중
16	설계변경 심사 업무처리 미흡	통보	○ '계약심사 및 기술심의 업무 매뉴얼' 제정을 통해 2018년부터 계약심사(설계변경) 시 심사내역서를 작성·통보 하는 것으로 개선	조치완료
17	콘크리트 균열보수에 대한 일위대가 심사 부적정	주의요구	○ 심사담당자를 대상으로 예정가격 작성요령 등 공사 원가심사 관련 교육 실시	조치완료
18	보수공사 이윤 심사 부적정	주의요구	○ 심사담당자를 대상으로 예정가격 작성요령 등 공사 원가심사 관련 교육 실시	조치완료
19	기술정보도움방 개설 및 심사결과서 작성방식 개선	통보 (모범사례)	○ 2018년 상반기 종합감사 수범사례 표창 상신	조치완료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처분요구 목록

연 번	관련기관 (부서)	지 적 내 용	처분요구			비고
			처분종류	신분	재정	
1	서울시 계약심사과	계약심사 결과 지연통보	주의요구 통보	-	-	
2		일반관리비 계약심사 부적정	주의요구	-	-	
3		공사 경비항목 계약심사 부적정	주의요구	1	-	
4		퇴직공제부금비 계약심사 부적정	주의요구	-	-	
5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약심사 부적정	주의요구	-	-	
6		공사 산재보험료율 계약심사 불철저	주의요구	-	-	
7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된 자재의 계약심사 부적정	주의요구	-	-	
8		재심사 처리절차 불합리	주의요구 통보	-	-	
9		건설폐기물처리용역 계약심사 불합리	통보	-	-	
10		계약심사 근거자료 관리 소홀	통보	-	-	
11		승강장스크린도어 제작설치 사업 계약심사 미흡	주의요구	-	-	
12		계약심사 조정률별 책임설명제 운영 불철저	통보	-	-	
13	서울시설 공단	겸임심사자에 의한 계약심사 미흡	통보	-	-	
14		계약심사 제외대상 지정 불합리	통보	-	-	
15		완제품·단순구매 물품 계약심사 제외 불합리	통보	-	-	
16		설계변경 심사 업무처리 미흡	통보	-	-	
17		콘크리트 균열보수에 대한 일위대가 심사 부적정	주의요구	-	-	
18		보수공사 이윤 심사 부적정	주의요구	-	-	
19		기술정보도움방 개설 및 심사결과서 작성방식 개선	통보 (모범사례)	-	-	

8. 하수관로 정비사업 추진실태 특정감사

감사배경 및 목적

- 하수도관 정비사업의 사업계획, 계약 및 설계·시공 등 전반을 체계적으로 점검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시민불편사항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

추진내용

- 감사대상 : 물순환안전국, 3개 자치구(강북구, 영등포구, 강동구)
- 감사기간 : '18.03.26. ~ 04.27.(25일간)
 - ※ 예비감사 : '18.03.19. ~ 03.23(5일간)
- 감사인원 : 경영감사팀장 외 10명(공익감사단 및 외부전문가 5명 포함)
- 감사범위 : '15.1.1.부터 처리한 하수관로 정비관련 업무
 - ※ 자치구 : 시비투입 사업 해당

감사중점

-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하수도관 정비계획의 적정성
- 공법선정 및 공사계약 관련 규정 준수 여부
- 공사 설계변경(기간, 금액, 공법 등) 적정성 여부
- 공사품질관리, 민원발생사항 등 집중감사

지적사항 총괄

(단위 : 건, 천 원, 명)

합 계			변상 (금액)	징계 (인원)	시정(금액)				주의 (인원)	개선	권고	통보	고발 (인원)	모범 사례 (인원)
총건수	신분상 조치인원	재정상 조치금액			소계	추징 (회수)	감액	기타						
13	10	13,265	0 (0)	0 (0)	1 (13,265)	1 (13,265)	(0)	(0)	10 (10)	0	0	2	0 (0)	1 (0)

□ 감사결과 처분요구내역 및 조치현황

○ 처분요구 사항 일람표

연번	처분요구 제목	처분유형	조치현황	비고
01	「자치구 지선 하수관로 개량 지원」 사업 보조금 부적정	주의	○ 보조금 지원 시 조례 및 시행규칙 준수 ⇒ 시비보조율 내 지원관련 자치구 안내 (‘18.11월) ○ 지선하수관로 개량 지원사업 외 지원은 별도 보조금 심의 및 예산편성 지원 ⇒ ‘19년 보조금 사업 중 “하수관로 유지관리비” 보조금 심의 완료(‘18.11.20)	조치 완료
		통보	○ 서울시 보조금 조례 시행규칙 시비보조율에 대한 해석 명확히 하여 각 부서 통보	조치중
02	신기술공법선정위원회 운영 부적정	주의	○ 동일유사 사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교육 및 업무처리에 철저 ⇒ ‘18.10.26 및 ‘18.10월 중 직원 교육완료	조치 완료
03	폐기물 처리용역 분리발주 미시행	주의	○ 동일유사 사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교육 및 업무처리에 철저 ⇒ ‘18년 분리발주 시행 ○ 담당자 4명 주의촉구(훈계1, 주의3)	조치 완료
		통보	○ 하수도공사 건설폐기물 처리관련 지도점검 및 관리방안 마련 ⇒ 자치구에 관련 지침 통보(‘18.11.21)	조치 완료
04	하도급 계약시 사회보험료 관리 부적정	주의	○ 동일유사 사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교육 및 업무처리에 철저 ⇒ ‘18.10.26, 11.16 및 11.21 직원교육 완료	조치 완료
05	순환골재 등 미사용	주의	○ 동일유사 사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교육 및 업무처리에 철저 ⇒ ‘18.10.26, 11.16, 11.21 직원교육 완료 ○ 담당자 5명 주의촉구, 주의1	조치 완료
06	사급자재 구매 시 관할 중소벤처기업청장과의 협의 미시행	주의	○ 동일유사 사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교육 및 업무처리에 철저 ⇒ ‘18.10.26, 11.16, 11.21 직원교육 완료	조치 완료
07	하수관로 공사 안전관리업무 부적정	주의	○ 동일유사 사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교육 및 업무처리에 철저 ⇒ ‘18.10.26, 11.16, 11.21 직원교육 완료	조치 완료

연번	처분요구 제목	처분유형	조치현황	비고
08	하수관로 공사 품질관리 업무 부적정	주의	○ 동일유사 사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교육 및 업무처리에 철저 ⇒ '18.10.26, 11.16, 11.21 직원교육 완료	조치 완료
09	예비준공검사 부적정	주의	○ 동일유사 사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교육 및 업무처리에 철저 ⇒ '18.10.26, 11.16, 11.21 직원교육 완료	조치 완료
10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부적정	시정	○ 과다하게 지급된 공사비 13,265천원을 환수 ⇒ '18.10.19~11.9 까지 환수 완료 ○ 동일유사 사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교육 및 업무처리에 철저 ⇒ '18.11.16, 직원교육 완료	조치 완료
11	하수도관리 전산시스템(GIS) 공사대장 입력 누락	주의	○ 동일유사 사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교육 및 업무처리에 철저 ⇒ '18.10.26 직원교육 완료	조치 완료

처분요구서

붙임 : 처분요구서 11건
모범사례 1건 끝.

감 사 위 원 회

주 의 요 구 및 통 보

제 목 : 「자치구 지선 하수관로 개량 지원」 사업 보조금 부적정

관 계 기 관 : 물순환안전국, 기획조정실

내 용

물순환안전국은 「서울시 하수도 사용조례」 제5조 제1항에 의거 자치구가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지선하수관로의 개량사업에 대해 동 조례 제5조 제2항30)에 의거 '15년 ~ '18년 까지 '자치구 지선 하수관로 개량 지원' 사업에 총 18,993백만원의 보조금을 편성하여 25개 자치구에 지원하고 있다.

〈표1. '15~'18년 자치구 지선 하수관로 개량 지원 사업 보조금 현황〉

예산과목	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합계	18,993백만원	5,000백만원	4,143백만원	4,000백만원	5,850백만원
자치단체자본보조	18,993백만원	5,000백만원	4,143백만원	4,000백만원	5,850백만원

「지방재정법」 제32조의2 제3항 및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이하 '보조금 관리조례') 제5조 제4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장은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보조금 관리조례」 제7조에 의거 자치구의 지방보조금 대상사업의 범위와 지방보조 사업별로

30)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조례 제5조(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비용배분) ① 「하수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 배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2. 구청장이 부담하는 비용
 가. 내경 900mm 미만 또는 통수 단면적 0.7㎡ 미만 하수관로(중계펌프장 포함)의 설치·개량·수선 및 유지관리비
 나. 내경 900mm 이상 또는 통수 단면적 0.7㎡ 이상 하수관로(중계펌프장 포함)의 수선 및 유지관리비
 다. 빗물펌프장의 수선 및 유지관리비
 라. 빗물펌프장을 제외한 나머지 공작물과 하수도 부대시설의 설치·개량·수선 및 유지관리비
 ② 시장은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구청장의 부담만으로는 공공하수도가 원활히 관리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일부 비용을 구청장에게 보조할 수 있다.

적용하는 시비보조율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 조례 시행규칙 제2조 별표1에 의거 자치구 지선 하수관로 개량 지원 보조금은 시비보조율³¹⁾ 50%(기존 재정수요충족도 100% 이상인 경우 30%)를 정하여 보조하도록 하고 있고 그 밖에 보조금 교부가 필요한 사업은 예산안 편성계획에 대상사업명과 시비보조율을 명시하거나 매년 예산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표2. 보조금 지급대상사업의 범위와 시비보조율(시행규칙 제2호 별표1)〉

사 업 명	시비보조율	비 고
88. 자치구 지선 하수관거 개량 지원	50%	◦ 기준재정수요충족도 100%이상 : 30%지원
95. 그 밖에 서울특별시와 자치구 상호간에 이해관계가 있고 보조금의 교부가 필요한 사업	사업의 수행근거, 법령, 성격에 따라 정률, 정액 또는 차등보조	◦ 서울특별시의 예산안 편성계획에 대상 사업명과 시비보조율을 명시하거나 매년 예산으로 정한다.

그런데 물순환안전국은 지선하수관로 개량 지원을 위한 ‘15~’18년 「지선 하수관로 개량사업 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면서

① 자치구 지선하수관로 사업비 확보액의 50%³²⁾(기존 재정수요충족도 100% 이상인 경우 30%), ② 자치구 하수시설물 유지보수비 확보액을 기준으로 자치구별 차등을 두어 지원금을 산정하거나 ③ 자치구 하수도사업 평가 우수 자치구 및 합동 워크숍 사례발표 자치구를 대상으로 추가 지원금을 산정하고, ④ 관로조사 CCTV 교체지원, ⑤ 하수전문 감리비, ⑥ 간이다짐기 구매 등을 위한 별도의 지원금을 아래 표3과 같이 산출하여 지원하였다.

31)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의 주관부서인 시 재정관리담당관의 유권해석(재정관리담당관-8173, '18.8.8)에 따르면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시비보조율이란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시 보조금과 매칭되는 구비를 포함한 총사업비 중 시 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중을 말하는 것임.
 예) 시비보조율 30% : 총 사업비의 30% 시비 부담, 총사업비(집행액)의 70% 구비 부담
 - '자치구 지선 하수관로 개량사업'은 자치구 사무로 자치구 재원으로 추진하는 원칙이나, 자치구의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시에서 보조하는 사업으로, 시의회 의결을 거쳐 보조사업 예산이 확정된 이후 주관부서에서 해당 예산범위 내에서 자치구 예산 편성 현황 등을 감안하여 구별로 보조하는 것이며, 이 경우 보조되는 시비 50%와 매칭되는 구비를 포함한 사업은 시비보조사업이 되며, 그 외에 자치구에서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추가로 예산을 편성한 것은 구 자체사업이 되는 것

32) 시 보조금과 매칭되는 구비를 포함한 총사업비 중 시 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시비보조율이라는 재정관리담당관의 유권해석과 달리 물순환안전국은 구의 자체사업비 확보액을 기준으로 시비보조율을 적용

〈표3. 연도별 자치구 지선 하수관로 개량 지원 보조금 지원현황〉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합계		5,000백만원	4,143백만원	4,000백만원	5,850백만원
기준1	금액	2,685백만원	1,705백만원	3,499백만원	3,479백만원
	대상	8개 자치구	5개 자치구	10개 자치구	11개 자치구
	배분 방식	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 별표1에 의거 자치구 사업비 확보액의 50% 지원(재정수요 충족도 100% 이상 30%)			
기준2	금액	2,315백만원	1,540백만원		1,390백만원
	대상	24개 자치구	23개 자치구		25개 자치구
	배분 방식	자치구 하수시설물 유지보수비 확보액 기준 (10억 이상 110백만원, 10억 미만 90백만원) ※재정충족도 100% 미만 자치구 중 가장 많은 예산을 확보한 용산구에 잔액 15백만원 추가	자치구 하수시설물 유지보수비 확보액 기준 (10억 이상 80백만원, 10억 미만 60백만원) ※지원액 5억원 이상인 광진구, 강남구는 추가 지원 미적용 ※하수도 특별회계 사업비 최하위인 동대문구에 잔액 40백만원 추가		자치구 하수시설물 유지보수비 확보액 기준 (10억 이상 60백만원, 10억 미만 50백만원)
기준3	금액		410백만원	76백만원	73백만원
	대상		5개 자치구	8개 자치구	5개 자치구
	배분 방식		자치구 하수도사업 평가 인센티브 1~5위 까지 30~150백만원	워크숍 사례발표 자치구 인센티브 최우수(1개) 15백만원 우수(2개) 12백만원 장려(3개) 9백만원, 참가(2개) 5백만원	워크숍 사례발표 자치구 인센티브 최우수 1개 구청 17백만원 그 외 4개 구청 14백만원
목적외 (관로조사 CCTV 교체지원)	금액		488백만원		308백만원
	대상		14개 자치구		7개 자치구
	배분 방식		28백만원 또는 44백만원 지원 현황조사 후 자치구 신청액에 따라 차등지원		44백만원 정액 '16년 대상 제외, 현황조사 후 신청 자치구 대상
목적외 (하수전문 감리비)	금액			300백만원	600백만원
	대상			2개 자치구	4개 자치구
	배분 방식			'17년 하수분야 전문감리 신청한 서대문구, 구로구 150백만원 정액	강남·북 각 2개 시범 자치구 150백만원 정액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목적 외 (간이 다짐기 구매)	금액			125	
	대상			25개 자치구	
	배분 방식			5백만원 정액지원	

위와 같이 조례의 시비보조율 외의 별도의 기준을 방침으로 정하여 '15년 ~ '18년 시비보조금을 산출한 결과 아래 표4와 같이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및 규칙에서 정한 시비보조율을 초과하여 지원하였으며

또한, 관로 조사용 CCTV 교체지원비, 하수전문 감리비 또는 간이다짐기 구매 등과 같이 자치구 지선 하수관로 개량 지원 사업의 목적으로 보기 어려운 항목에 대해 총 1,821백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 예산으로 편성하지 않고 「지선 하수관로 개량사업 보조금 지원계획」에 의거 자치구 지선 하수관로개량지원사업 예산으로 지원하였다.

〈표4. 조례 최대 지원 가능 시비보조금과 실제 지원액 비교(단위:백만원)〉

연번	구 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자치구 확보 예산	시비보조금			자치구 확보 예산	시비보조금			자치구 확보 예산	시비보조금			자치구 확보 예산	시비보조금			
			조례 최대 지원	실제 지원 현황	차액		조례 최대 지원	실제 지원 현황	차액		조례 최대 지원	실제 지원 현황	차액		조례 최대 지원	실제 지원 현황	차액	
계		6,650	4,821	5,000	179	4,722	2,852	4,143	1,291	8,810	6,216	4,000	-2216	8,366	6,355	5,850	-505	
1	종로	100	100	140	40			60	60	0			5	5	88	88	94	6
2	중구		0	90	90			104	104	0			10	10			94	94
3	용산	1,620	1,620	915	-705			88	88	307	307	159	-148	120	120	120	0	
4	성동	560	560	370	-190	35	35	227	192	0			17	17	400	400	250	-150
5	광진	500	500	360	-140	1,100	1,100	594	-506	0			5	5			60	60
6	동대문		0	110	110			0	100	100	300	300	155	-145	480	480	348	-132
7	중랑		0	90	90			0	118	118	630	630	329	-301			224	224
8	성북		0	110	110			0	124	124	275	275	143	-132	250	250	185	-65
9	강북	200	200	190	-10			0	208	208	1,910	1,910	969	-941	1,530	1,530	825	-705
10	도봉		0	90	90			0	108	108	0		5	5	200	200	160	-40
11	노원		0	90	90			0	104	104	0		5	5			64	64
12	은평		0	90	90			0	60	60	0		5	5			254	254
13	서대문		0	90	90			0	88	88	0		155	155			50	50
14	마포		0	110	110			0	80	80	130	130	70	-60			60	60

연번	구 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자치구 확보 예산	시비보조금		자치구 확보 예산	시비보조금		자치구 확보 예산	시비보조금		자치구 확보 예산	시비보조금					
			조례 최대 지원	실제 지원 현황		차액	조례 최대 지원		실제 지원 현황	차액		조례 최대 지원	실제 지원 현황	차액			
15	양천		0	90	90		0	184	184	379	379	207	-172	600	600	350	-250
16	강서		0	110	110		0	88	88	0		5	5			60	60
17	구로		0	90	90		0	60	60	190	190	250	60			108	108
18	금천		0	90	90		0	110	110	0		10	10			94	94
19	영등포		0	90	90		0	88	88	0		5	5			50	50
20	동작		0	90	90		0	88	88	0		5	5	150	150	135	-15
21	관악	170	170	195	25	115	115	181	66	150	150	95	-55	1,030	1,030	592	-438
22	서초	300	300	240	-60	200	200	160	-40	0		14	14			210	210
23	강남	3,200	1,371	960	-411	3,272	1,402	981	-421	4,539	1,945	1,367	-578	3,518	1,507	1,115	-392
24	송파		0	110	110		0	80	80	0		5	5			254	254
25	강동		0	90	90		0	60	60	0		5	5			94	94

※ 물순환안전국 제출 2015~2018년 지선하수관로 개량사업 보조금 지원계획 재구성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결과)

물순환안전국은 자치구의 단위사업인 지선 하수관로 개량 사업비 뿐만 아니라 자치구의 하수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한 연간단가예산 역시 「하수도법」에서 의미하는 하수관로 및 부속시설 개량을 위한 예산이므로 보조금 지원 시 이를 고려하여 지원하였으며 한정된 보조금으로 시비보조율 만큼 모두 지원할 수 없어 보조금 지원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여 하수도 사업평가 우수 자치구 및 합동 워크숍 사례발표 자치구 등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여 보조금을 지원하였고, 또한 관로조사용 CCTV 교체지원비, 하수도 전문감리비, 간이다짐기 구매 등 역시 지선 하수관로 개량 시공품질 개선을 위한 것이므로 자치구 지선 하수관로 개량 지원 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보아서 보조금을 지원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먼저,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조례」 제5조에 내경 900mm 이상 또는 통수단면적 0.7㎡ 이상 하수관로의 설치·개량비의 비용부담은 시장이, 수선 및 유지관리비의 비용부담은 구청장이 부담하도록 구분하여 규정하는 등 개량비와 유지관리비를 명백히 구분하고 있는 바, 하수도 유지보수를 위한 연간단가 예산이 지선하수관로 개량사업비에 포함된다는 물순환안전국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으며

또한 관로조사용 CCTV 교체지원비, 하수도 전문감리비, 간이다짐기 구매 등이 지선 하수관로 개량 시공품질 개선을 위한 사업비로 넓은 의미의 자치구 지선 하수관로 개량 사업비라면 시비보조율 외에 별도로 지원금을 산정할 것이 아니라, 시비보조율에 따라 지원된 보조금 내에서 자치구에서 자율적으로 편성하여 사용함이 타당할 것이다.

물순환안전국은 자치구 보조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지선 하수관로 개량 사업비 예산에서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보조율 외에 별도로 지원할 수 없음에도 관련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한 시비보조대상 사업 및 시비보조율과 다른 자체 방침을 수립하여 보조금을 지원함으로써 법령과 조례에 정한 시의 예산 편성 및 집행 원칙에 혼란을 주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조치할 사항

물순환안전국장은

앞으로 동일·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조금 지원 시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을 준수하여 지원토록 하고, 그 밖에 보조금 지원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 예산으로 편성하는 등 보조금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기획조정실장은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의 시비보조율에 대한 해석을 명확히 하여 각 부서에 통보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감 사 위 원 회

주 의 요 구

제 목 신기술공법선정위원회 운영 부적정

관 계 기 관 강북구청, 영등포구청

내 용

강북구청과 영등포구청은 '16년부터 현재까지 관내 노후 하수관로 정비를 위하여 공사를 시행하면서 신기술이나 특허공법 등을 적용하였다.

〈표 1. 신기술, 특허공법 등이 적용된 공사 내역〉

발주기관	공 사 명	공사기간	사업비(천원)	적용 신기술, 특허
강북구	삼양로117길 5 주변 노후 사각형거 개량공사	'16. 5.23. ~ 10.31.	460,603	ECO TERRA 공법 (특허 제10-1140102호)
	수유2배수분구 하수관거 종합 정비공사(1공구)	'16. 3.15. ~ 11.30.	1,897,478	COSREM 공법 (특허 제10-1051761호)
	수유2배수분구 하수관거 종합 정비공사(2공구)	'16. 3.17. ~ 11.30.	2,267,320	한일레미가드공법 (특허 제10-0515948호)
	수유2배수분구 하수관거 종합 정비공사(3공구)	'16. 3.15. ~ 11.30.	2,671,300	CRM공법 (특허 제10-0876225호)
	송중동 50-1 주변 노후 사각 형거 보수공사	'17. 7. 7. ~ 11. 8.	394,890	Hi-fer 공법 (특허 제10-0933224호)
영등포구	당산동2가 45-5 ~ 164-4 번지 간 원형관로 보수공사	'16. 8.26. ~ 12.12.	462,418	ABL 공법 (환경신기술 제332호)
	양평동3가 59~70-1번지 간 하수관로 개량공사	'16. 8.25. ~ 12.23.	488,180	D-ITL 공법 (환경신기술 제389호)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제5항 등에 따르면 발주청은 신기술이 기존 건설기술에 비하여 시공성 및 경제성 등의 측면에서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신기술을 그가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우선 적용하여야 하고,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공사계약서에 구체적으로 표시하고 기술개발자(해당 신기술을 이용하여 건설공사를 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자를 포함한다)로 하여금 해당 건설공사 중 신기술과 관련되는 공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제3조와 제10조에 의하면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자치구(시비 지원 또는 시비 보조금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한함)가 건설공사를 시행할 경우, 관련 신기술을 사전에 검토하고, 신기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타의 유사 또는 기존 기술을 반영하고자 하는 때는 발주청의
 자체공법선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치게 규정하고 있으며, 신기술의 선정을 위하여
 「신기술 공법선정절차 및 선정위원회 운영기준」을 수립 및 운영하고 있고

건설신기술 활용 종합 개선대책 검토('13. 5.27., 행정2부시장 방침 제 180호)의
 공법선정위원회는 내부 및 외부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으로 하되, 외부위원을 전체위원의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내부위원은 관련부서 기술직 사무관 이상으로 선임하되, 해당 분야 경험 등 전문성을
 고려하여야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강북구청에서는 하수관로정비사업의 공법 선정을 위하여 '16년 ~
 '17년에 걸쳐 공법선정위원회를 3회 개최하면서 신기술 업무 매뉴얼에 따라
 외부위원을 과반수 이상 선임하지 않았으며, 내부위원의 경우에는 기술직 사무관
 이상으로 선임하지 않고 위원회를 구성·운영하였다.

〈표 2. 공법선정위원회 운영내역 및 참여 위원 현황(강북구)〉

개최일시	안건	참석위원
'16. 3.30.(수)	삼양로117길 5 주변 노후 사각형거 개량 공사	위 원 장 : 건설교통안전국장 내부위원 : 도로관리과장 주차장시설팀장 중랑구 치수과장 외부위원 : 갑
	검토 : 건설신기술 2건 + 특허 5건	
'16. 4.21.(수)	수유2배수분구 하수관거 종합정비 공사 1~3공구	위 원 장 : 건설교통안전국장 내부위원 : 도로관리과장 시설관리팀장 주차장시설팀장 외부위원 : 을
	검토 : 건설신기술 2건 + 특허 8건	
'17. 4.26.(수)	송중동 50-1 주변 노후 사각형거 보수 공사	위 원 장 : 건설교통안전국장 내부위원 : 도로관리과장 재생지원팀장 중랑구 치수과장 외부위원 : 병
	검토 : 건설신기술 2건 + 특허 8건	

또한, 영등포구청에서도 하수관로정비사업의 공법선정을 위하여 '16년에 표 3과 같이 공법선정위원회를 개최하였으나, 공법선정위원회 위원 중 외부위원을 과반수 이상 선임하지 않고 위원회를 구성·운영하였다.

〈표 3. 공법선정위원회 운영내역 및 참여 위원 현황(영등포구)〉

개최일시	안건	참석위원
'16. 5.26.(목)	당산동2가 45-5 ~ 164-4 번지 간 원형관로 보수공사	위 원 장 : 부구청장 내부위원 : 안전건설국장 치수과장 외부위원 : 정, 무
	검토 : 건설신기술 3건 + 환경신기술 6건	
	양평동3가 59~70-1번지 간 하수관로 개량공사	
	검토 : 건설신기술 3건 + 환경신기술 6건	

결국 강북구청과 영등포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관내 하수관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공법선정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운영방식은 신기술 업무 매뉴얼을 준용하지 않고 있어 공법선정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조치할 사항

강북구청장은

앞으로 동일·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기술이 포함된 공법선정위원회를 개최 시에는 「신기술 공법선정절차 및 선정위원회 운영기준」을 준용하여 위원회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되도록 직원교육 및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영등포구청장은

앞으로 동일·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기술이 포함된 공법선정위원회를 개최 시에는 「신기술 공법선정절차 및 선정위원회 운영기준」을 준용하여 위원회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되도록 직원교육 및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감 사 위 원 회

주 의 요 구

제 목 폐기물 처리용역 분리발주 미시행

관 계 기 관 영등포구청

내 용

영등포구청은 '14년 ~ '17년 까지 침수 피해 예방 및 생활불편사항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내 빗물받이 및 연결관 준설공사(단가계약)를 포 1과 같이 시행하였다.

〈표 1. 빗물받이 및 연결관 준설공사(단가계약) 시행 내역〉

공사기간	공사명	준공금액(원)	준설량(톤)
'14. 3.14. ~ '15. 2.28.	빗물받이 및 연결관 준설공사(단가계약)	485,300,000	1,084.8
'15. 3. 6. ~ '15.12.31.	빗물받이 및 연결관 준설공사(단가계약)	512,100,000	1,026.4
'16. 2.23. ~ '16.12.31.	빗물받이 및 연결관 준설공사(단가계약)	516,124,600	1,107.5
'17. 2.17. ~ '17.12.31.	빗물받이 및 연결관 준설공사(단가계약)	481,589,100	798.4

※ 입찰참가자격

1.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업체
2.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 소재하며 당해자격을 유지하는 업체
3. 하수도 준설 전용의 고압세정장치 및 공기유도장치를 1대 이상 보유(임차 포함) 업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의하면, 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발생량 중 위탁 처리하는 건설폐기물의 양이 100톤 이상 발생하는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분리 발주하도록 하고 있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건설폐기물의 종류 및 「건설폐기물의 처리 및 재활용 관련 업무처리지침」 [환경부예규 제552호, 시행

‘15. 8.10.)에는 건설공사 중 발생하는 준설토(하수, 해저준설토)를 건설오니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건설업의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에는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으로 11.상·하수도 설비공사업이 있으며, 그 하위 개념인 하수도설비공사는 하수 등의 처리를 위한 기기설치공사, 하수·우수관 부설(옥내급배수설비공사를 제외한다) 및 세척·갱생공사 등이라고 되어 있다.

그런데, 영등포구청에서는 ‘14년 ~ ’17년에 빗물받이 및 연결관 준설공사(단가계약)를 시행하면서 발생한 하수준설토 폐기물이 100톤 이상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폐기물처리용역을 분리 발주하지 않고 준설공사 낙찰업체가 폐기물처리를 직접 수행하도록 하였다.

〈표 2. 빗물받이 및 연결관 준설공사(단가계약) 준공 내역(영등포구)〉

공사 연도	준공금액(원)					
	도급공사비	순공사비	제잡비 등	준설토수수료	품질시험비	부가가치세
2014	485,300,000	301,630,940	119,944,279	19,526,400	80,200	44,118,181
2015	512,100,000	311,294,273	134,650,190	19,500,992	100,000	46,554,545
2016	516,124,600	306,819,007	141,243,324	21,041,851	100,000	46,920,418
2017	481,589,100	298,112,876	124,395,597	15,181,000	118,800	43,780,827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결과)

영등포구청은 빗물받이 준설공사가 오염물질 제거 목적이 아닌 준설작업에서 발생하는 자연상태의 준설토라 건설폐기물로 분류할 수 없어 분리발주를 시행하지 않았다고 하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건설폐기물의 종류(제2조 관련)에 의하여 판단컨대 준설공사에서 나오는 무기성오니와 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그 밖의 폐기물 등을 건설폐기물로 분류하고 있는 점과 그 준설토를 중간적치장에 수납하여 다른 하수준설토와 혼합한 상태로 최종적으로 폐기물로 처리해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위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조치할 사항

물순환안전국장은

하수도 관로정비공사 시 빗물받이 준설토를 자연 상태의 준설토로 오인하여 건설폐기물로 분류하지 않고 처리하는 사례가 있는바, 건설폐기물 처리가 관련 법령 등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되도록 지도점검 및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영등포구청장은

앞으로 동일·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설폐기물 처리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분리 발주 할 수 있도록 직원교육 및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시고(주의),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훈계1명, 주의3명)하시기 바라며, 타 기관 진출자의 경우에는 현 소속기관장에게 훈계 및 주의를 촉구하도록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감사위원회

주의요구

제 목 하도급 계약 시 사회보험료 관리 부적정

관 계 기 관 강북구청, 영등포구청, 강동구청

내 용

강북구청 등 3개 기관(이하 '발주청'이라 한다)에서는 '15년부터 '17년까지 하수관로 신설·보수 공사 등을 실시하면서 총 24건의 하수관로 정비공사에 대해 원도급자로부터 하도급 계약체결사실을 통보받아 하도급계약을 관리하였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7항 등에 따르면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금액을 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에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반영하지 않은 경우 시정명령,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1억원 이하의 과징금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에 따르면 발주청은 공사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계약서 등의 관계 서류에 따라 감독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강북구청 등 3개 기관에서는 삼양로376~수유로53주변 사각형거 보수보강공사 등 총 25개 공사에 대한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간 하도급계약(표 1)을 체결하면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회보험료를 하도급 계약내역서에 반영하지 않은 채 하도급계약이 체결되었음에도 시정 등 행정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 표 1. 하도급 계약체결현황(사회보험료 미반영) 〉

연번	자치구명	계약건명	하도급 계약 명세(단위 : 천원)				
			공종	계약일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1	강북	삼양로376~수유로53주변 사각형거보수보강공사	단면보수	'15.05.07	-	-	-
2	강북	수유2배수분구하수관거종합정비공사(3공구,장기계속5차)	비굴착	'15.05.08			

연번	자차구명	계약건명	하도급 계약 명세(단위 : 천원)				
			공종	계약일	국민연금 보험료	건강 보험료	노인 장기요양 보험료
3	강북	삼양로 159길등 하수관로 정비공사 (1구간)	비굴착 전체	'15.05.26	-	-	-
			비굴착 부분	'15.05.26	-	-	-
4	강북	삼양로 159길 등 하수관로 정비공사 (2구간)	비굴착 전체	'15.06.01	-	-	-
			비굴착 부분	'15.06.01	-	-	-
5	강북	수유1배수분구 하수관로 종합정비 공사	비굴착전체 보수	'15.11.11	-	-	-
6	강북	솔매로노후하수관로정비공사 (1-2공구)	단면 보수	'16.06.10	-	-	-
7	강북	수유2배수분구하수관거종합정비 공사(3공구,장기계속6차)	비굴착 전체보수	'16.10.0 5	-	-	-
			비굴착 부분보수	'16.08.09	-	-	-
			하수암거 보수공	'16.06.20	-	-	-
			압개바닥 보수공	'16.06.13	-	-	-
8	강북	수유2배수분구하수관거종합정비공사(1 공구, 장기계속6차)	비굴착 부분보수	'16.08.09	-	-	-
			하수암거 보수공	'16.06.28	-	-	-
9	강북	수유2배수분구하수관거종합정비공사(2 공구, 장기계속6차)	토공	'16.10.31	-	-	-
			비굴착	'16.10.31	-	-	-
			하수암거 보수공	'16.05.26	-	-	-
10	강북	도로함몰예방 노후하수관로 정비공사 (1권역)	하수관 로공	'17.07.13	-	-	-
11	강북	도로함몰예방 노후하수관로 정비공사 (2권역)	비굴착 부분보수	'17.12.01	-	-	-
			하수관로 설치	'17.06.26	-	-	-
12	영등포	하수시설물 보수공사(연간)	포장	'14.04.08	-	-	-
13	영등포	여의도 국회 의사당 앞 사각형거 개량공사	토공	'15.01.04	-	-	-
14	영등포	양평동4가 101-10 ~ 19번지간 하수 관로 개량공사	배수공	'15.07.14	-	-	-
15	영등포	영등포동8가 58-1~17-1호 간 하수관로 개량공사	배수공	'15.08.06	-	-	-
16	영등포	여의도 배수분구 하수관로 종합정비 사업	단면보수	'15.11.17	-	-	-
17	영등포	영등포구청사거리주변 등 노후하수관로 개량공사(1공구)	상하수도	'15.12.03	-	-	-

연번	자차구명	계약건명	하도급 계약 명세(단위 : 천원)				
			공종	계약일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18	영등포	영등포구청역~양평역간 일대 사각형거 보수보강공사	단면보수	'16.07.04	-	-	-
			단면보수	'16.07.04	-	-	-
			단면보수	'16.07.04	-	-	-
19	영등포	여의공원로13길 외 1개소 하수관로 개량공사	단면보수	'16.07.22.	-	-	-
20	영등포	양평동3가 59~70-1번지간 하수관로 개량공사 도급비	비굴착	'16.09.23	-	-	-
21	영등포	도로함몰예방 노후 하수관로 정비공사(2권역)	토공	'17.08.07	-	-	-
22	영등포	도림1배수분구하수관로종합정비공사(5구역5블록-1차분)	토공 및 상하수도	'14.10.27	20,433	13,948	-
			포장공사	'14.10.27	851	581	-
23	강동구	2015년 관내 하수도구조물 정비공사	포장	'15.04.24.	-	-	-
24	강동구	둔촌동 611-1~611-4일대 원형관로 보수공사	비굴착	'16.09.23	-	-	-
25	강동구	노후불량하수관로 종합정비사업(3권역-명일, 강동)	상하수도	'17.07.01	-	-	-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결과)

강북구청은 원도급 계약 시 하도급 계약부분까지 포함한 총 도급계약 금액 기준으로 사회보험료가 산출내역서에 일괄 반영되어 있어 하도급 계약부분 사회보험료는 준공정산 시 일괄 정산할 사항으로 별도의 시정조치가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7항에 의하면 계약상대자는 해당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시 사회보험료를 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포함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조치할 사항

강북구청장은

앞으로 동일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7항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을 숙지하여 직원교육 및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영등포구청장은

앞으로 동일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7항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을 숙지하여 직원교육 및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강동구청장은

앞으로 동일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7항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을 숙지하여 직원교육 및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감 사 위 원 회

주 의 요 구

제 목 순환골재 등 미사용

관 계 기 관 강북구청, 영등포구청, 강동구청

내 용

강북구청, 영등포구청, 강동구청은 관내 노후 하수관로로 인한 도로침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후 하수관로 정비를 위한 '17년 도로함몰예방 정비사업을 수행하면서, 기초다짐용 및 채움용 등으로 골재를 사용하였다.

〈표 1. 강북구, 영등포구, 강동구 도로함몰예방 정비사업 공사 내역〉

발주기관	공 사 명	공사기간	사업비(천원)
강북구청	도로함몰예방 정비사업(2권역)	'17. 6. 5. ~ 12.27.	742,700
영등포구청	도로함몰예방 정비사업(1권역)	'17. 6. 9. ~ 12.22.	1,051,500
강동구청	도로함몰예방 정비사업(1권역)	'17. 5.24. ~ 12.31.	1,081,700
	도로함몰예방 정비사업(2권역)	'17. 5.19. ~ 12.31.	1,298,160
	도로함몰예방 정비사업(4권역)	'17. 5.23. ~ 12.31.	1,467,840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등에 따르면 발주자는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 건설공사를 발주할 때에는 건설업자에게 품질기준에 맞는 순환골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사용하게 하여야 하며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건설공사의 순환골재·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용도 및 의무사용량에 관한 고시」〔환경부고시 제2014-33호, '14. 3. 6. 시행〕에 따라 하수관로 설치공사(누수 등으로 인한 복구공사 및 긴급을 요하는 공사는 제외)에는 기초다짐용 및 채움용 등으로 골재 사용량의 40% 이상을 순환골재 등을 사용하게 하고 있다.

또한,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 건설공사에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려면 설계 등 용역업자, 건설업자 및 감리자의 검토의견서를 제출받아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에 따른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거나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에 자문하여 그 의견을 받아야 한다고 하고 있다.

〈표 2.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량 적용 기간〉

2014년	2015년	2016년 이후
골재 소요량의 30% 이상	골재 소요량의 35% 이상	골재 소요량의 40% 이상

※ 「(환경부)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건설공사의 순환골재·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용도 및 의무 사용량에 관한 고시」 [환경부고시 제2014-33호, 2014.3.6.시행]

그런데 강북구청(안전치수과)에서는 '17. 6. 5. ~ 12.27까지 도로함몰 예방 정비사업(2권역)(준공금액 742,700천원) 공사를 시행하면서 당초 설계에는 기초다짐용 및 채움용 등으로 순환골재를 반영하였으나, 실제 공사를 하면서 순환골재를 사용하지 않거나 일부만 사용하였다.

〈표 3. 골재 사용내역(강북구)〉

공사기간	공사명	내역		
		구분	설계	준공
'17. 6. 5. ~ 12.27.	도로함몰예방정비사업 (2권역)	혼합기층재(m³)	203.9	0.0
		보조기층재(m³)	501.6	245.0
		순환골재(m³)	470.3	0.0

또한, 영등포구청(치수과)에서도 '17. 6. 9. ~ 12.22.까지 도로함몰 예방 정비사업(1권역)(준공금액 1,051,500천원)공사를 시행하면서, 순환골재가 설계에 반영되어 있음에도 사용하지 않고 시행하였다.

〈표 4. 골재 사용내역(영등포구)〉

공사기간	공사명	내역			
		구분		설계	준공
'17. 6. 9. ~ 12.22.	도로함몰예방정비사업 (1권역)	혼합기층재(m³)	일반	178.0	1,160.0
			순환	118.7	0
		보조기층재(m³)	일반	295.6	935.4
			순환	197.0	0

마찬가지로 강동구청(치수과, 도로과)에서도 '17. 5.24. ~ 12.31까지 도로함몰 예방 정비사업 1권역(준공금액 1,081,700천원), 2권역(준공금액 1,298,160천원), 4권역(준공금액 1,467,840천원)공사를 시행하면서 순환골재가 설계에 반영되어 있음에도 사용하지 않고 시행하였다.

〈표 5. 골재 사용내역(강동구)〉

공사기간	공사명	내역			
		구분		설계	준공
'17. 5.24. ~ 12.31.	도로함몰예방정비사업 (1권역)	혼합기층재(m³)	일반	465.2	6.2
			순환	310.1	0
		보조기층재(m³)	일반	907.7	23.3
			순환	605.1	0
'17. 5.19. ~ 12.31.	도로함몰예방정비사업 (2권역)	혼합기층재(m³)	일반	522.4	581.3
			순환	348.3	0
		보조기층재(m³)	일반	1,016.4	797.7
			순환	677.5	0
'17. 5.23. ~ 12.31.	도로함몰예방정비사업 (4권역)	혼합기층재(m³)	일반	568.3	23.3
			순환	378.8	0
		보조기층재(m³)	일반	857.8	565.2
			순환	571.9	0

그리고 순환골재 등을 사용하지 아니하려면 설계 등 용역업자, 건설업자 및 감리자의 검토의견서를 제출받아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에 따른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거나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에 자문하여 그 의견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련 위원회에 안건을 부의하지 않았다.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결과)

강북구청 및 강동구청은 소규모 공사현장에 순환골재를 사용하는 것은 여건상 맞지 않는다고 답변하였으나, 관련 법령에는 순환골재 등의 의무사용 예외조항으로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사용으로 인하여 건설공사의 품질확보가 곤란한 경우, 도서지역 등 지역의 특성으로 인하여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수급이 곤란한 경우,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가격이 같은 용도의 다른 골재 및 제품의 가격보다 비싼 경우의 3가지 경우로 명확히 명시하고 있고, 또한 관련 위원회의 심의나 자문을 받아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는 점을 고려하면, 기존 설계에 반영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 여건을 이유로 사용하지 않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조치할 사항

강북구청장은

앞으로 동일·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종 공사에 순환골재 사용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8조 등에 따라 판단하도록 직원교육 및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시고(주의),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주의 1명)하시기 바랍니다.(주의)

영등포구청장은

앞으로 동일·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종 공사에 순환골재 사용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8조 등에 따라 판단하도록 직원교육 및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시고(주의),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주의 2명)하시기 바라며, 타 기관 진출자의 경우에는 현 소속기관장에게 주의를 촉구하도록 통보하시기 바랍니다.(주의)

강동구청장은

앞으로 동일·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종 공사에 순환골재 사용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8조 등에 따라 판단하도록 직원교육 및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시고(주의),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주의 2명)하시기 바랍니다.(주의)

※ 신분상 조치 : 담당자 1명 주의

감 사 위 원 회

주 의 요 구

제 목 사급자재 구매 시 관할 중소벤처기업청장과의 협의 미시행
관 계 기 관 강동구청
내 용

강동구청은 하수관거 종합정비 사업계획에 따라 성내 배수분구 지역 내 수해 예방 및 효율적인 하수처리를 목적으로 표1과 같이 성내 배수분구 하수관거 종합정비공사와 둔촌로 하수암거 신설공사를 시행하였다.

〈표 1. 하수관거 정비공사 시행 내역〉

공 사 명	공사기간	공사예정금액(원)
성내 배수분구 하수관거 종합정비공사(2블록)	‘15. 6.16. ~ 12.31. (1차)	6,475,576,000
	‘16. 3. 3. ~ 12.31. (2차)	
둔촌로 하수암거 신설공사(1공구)*	‘15. 4. 2. ~ 12.31. (1차)	10,510,027,000
	‘16. 2.29. ~ 12.31. (2차)	
	‘17. 2.28. ~ 12.31. (3차)	

* 3차 공사는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기 연장으로 ‘18. 5. 준공 예정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등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장은 예정가격이 40억원 이상인 종합공사와 예정가격이 3억원 이상인 전문공사의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한 제품의 직접구매 여부를 검토하여 해당 공사의 관급자재로 설계에 반영하여 직접구매를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22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공사용자재 직접구매가 곤란할 경우 공공기관의 장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협의한 경우에 직접 구매하지 않을 수 있게 하고 있다.

그리고,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지정내역」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17-18호, ‘17.11. 3. 시행]에는 조립식철근콘크리트 암거블록과 철근콘크리트관이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 품목으로 지정되어 있어, 이 두 자재는 관급자재로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관급자재로 수급이 어려울 시에는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의 협의를 거쳐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에서 제외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표 2.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 품목(일부 발취)>

구분	산업군	제품군	세분류		세부분류		산업분류번호	특이사항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제품명	물품분류번호	품명	세부분류명	세부분류명			
10	콘크리트, 레미콘 등	조립식 철근콘크리트 압거블록	30131514	조립식 철근콘크리트 압거블록	3013151401	조립식 철근콘크리트 압거블록	23325		○
		조립식 철근콘크리트 저류블록	30131598	조립식 철근콘크리트 저류블록	3013159801	조립식 철근콘크리트 저류블록			○
		철근 콘크리트관	40142109	콘크리트관	4014210903	원심력 유공 철근콘크리트관	23325	원심력 철근콘크리트 추진관 제외	○
					4014210901	원심력 철근콘크리트관			○
					4014210902	진동및전압 철근콘크리트관	○		

그런데, 강동구청은 성내 배수분구 하수관거 종합정비공사(2블록)와 둔촌로 하수암거신설공사(1공구)를 수행하면서, 원심철근콘크리트관 등 직접구매대상 품목들을 관급자재를 사용하지 않고 지방중소기업청장과 협의 없이 설계변경 등의 사유로 사급자재를 직접 구매하여 공사에 사용했다.

<표 3. 사급자재 구매 내역>

공사명	품명	규격	수량(본)	단가(원)	금액(원)
성내 배수분구 하수관거 종합정비공사 (2블록)	원심력철근콘크리트관	D 800mm	93	173,762	16,159,866
	원심력철근콘크리트관	D 900mm	32	220,340	7,050,880
	원심력철근콘크리트관	D1,000mm	36	273,703	9,853,308
	원심력철근콘크리트관	D1,200mm	7	383,982	2,687,874
	합계	-	-	-	35,751,928
둔촌로 하수암거 신설공사(1공구)	조립식 철근콘크리트 압거블럭	2.5×2.0m	82	1,701,000	139,482,000

조치할 사항

강동구청장은

앞으로 공사 시행 중 사급자재 구매 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의거 동일·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교육 및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감사위원회

주요요구

제 목 하수관로 공사 안전관리 업무 부적정

관 계 기 관 강북구청, 영등포구청, 강동구청

내 용

강북구청 등 3개 기관에서는 '15년부터 '17년까지 원활한 하수관리를 위해 “수유2배수분구하수관거 종합정비공사(2공구, 장기계속5차) 등 총 32건의 하수관로 정비공사를 시행하였다.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 등에 따르면 건설업자는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조직 등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미리 공사감독자나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검토·확인을 받아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하고, 서울시 '13년도 하수도분야 업무편람에 따르면 하수도 공사장 안전관리사항으로 수급자로부터 건설공사 안전관리 계획서를 착공 전에 제출받아 적정성을 확인토록 하고 있다.

그런데 강북구청 등 3개 기관에서는 삼양로91길22~삼양로376주변 사각형거 보수보강공사 등 32개 공사(표 1)의 경우 계약상대자로부터 상기 공사 착공 전에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받아야 하나 이를 제출받지 아니하였음에도 조치하지 아니하였다.

〈 표1. 안전관리계획서 미제출 명세 〉

연번	자치구명	계약명	착공일자	계약상대자 안전관리계획 제출여부	비고
1	강북	삼양로91길22~삼양로376주변 사각형거 보수보강공사	'15.4.10	미제출	
2	강북	도봉로76길 49~덕릉로 122 주변 사각형거 보수보강공사	'15.4.14	미제출	

연번	자치구명	계약명	착공일자	계약상대자 안전관리계획 제출여부	비고
3	강북	삼양로 159길 하수관로정비공사(1구간)	'15.5.4	미제출	
4	강북	삼양로 159길 하수관로정비공사(2구간)	'15.5.7	미제출	
5	강북	수유1배수분구 하수관로 종합정비공사	'15.10.22	미제출	
6	강북	덕릉로 주변 노후 하수관로 정비공사(2공구)	'16.4.11	미제출	
7	강북	덕릉로 주변 노후 하수관로 정비공사(1공구)	'16.4.14	미제출	
8	강북	솔매로 노후하수관로 정비공사(1-5공구)	'16.5.2	미제출	
9	강북	솔매로 노후하수관로 정비공사(1-2공구)	'16.5.9	미제출	
10	강북	노해로 119주변 하수관로정비공사	'16.5.27	미제출	
11	강북	삼양로91길 주변 하수관로정비공사	'16.6.9	미제출	
12	강북	강북구청사거리주변 노후 수관로정비공사(2구간)	'17.3.29	미제출	
13	영등포	하수도시설물보수공사(연간)	'14.3.5	미제출	
14	영등포	2014년 하수도 준설공사(연간)	'14.3.14	미제출	
15	영등포	빗물받이 및 연결관 준설공사(연간)	'14.3.7	미제출	
16	영등포	빗물받이 및 연결관 준설공사(연간)	'15.3.6	미제출	
17	영등포	2015년 하수도 준설공사(연간)	'15.3.11	미제출	
18	영등포	하수시설물 보수공사(연간단가)	'15.3.6	미제출	
19	영등포	2016년 하수시설물보수공사(연간단가)	'16.2.22	미제출	
20	영등포	2016년 빗물받이 및 연결관 준설공사	'16.2.23	미제출	
21	영등포	2016년 관내 하수관로 준설공사	'16.2.23	미제출	
22	영등포	2017년 하수시설물 보수공사	'17.2.15	미제출	
23	영등포	여의대방로359의사당대로 141외 개소 하수관로 개량공사	'17.4.18	미제출	
24	영등포	2017년 빗물받이 및 연결관 준설공사	'17.2.21	미제출	
25	영등포	2017년 하수관로 준설공사	'17.3.2	미제출	
26	강동구	2015년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	'15.3.19.	미제출	
27	강동구	2015년 관내 하수도준설공사	'15.3.30	미제출	

연번	자치구명	계약명	착공일자	계약상대자 안전관리계획 제출여부	비고
28	강동구	2015년 관내 하수도구조물 정비공사	'16.3.4	미제출	
29	강동구	2016년 관내 하수도준설공사	'16.3.10	미제출	
30	강동구	상내로14길 주변 하수관로개량공사	'16.3.28	미제출	
31	강동구	2017년 관내 하수도준설공사	'17.3.1	미제출	
32	강동구	2017년 관내 하수도구조물 정비공사	'17.3.8	미제출	

조치할 사항

강북구청장은

앞으로 동일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 서울시 지침을 숙지하여 직원교육 및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영등포구청장은

앞으로 동일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 서울시 지침을 숙지하여 직원교육 및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강동구청장은

앞으로 동일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 서울시 지침을 숙지하여 직원교육 및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감사위원회

주 의 요 구

제 목 하수관로 공사 품질관리 업무 부적정

관 계 기 관 강북구청, 영등포구청, 강동구청

내 용

강북구청 등 3개 기관에서는 '15년부터 '17년까지 도로함물 예방 노후하수관로정비공사(2권역) 등 총 45개의 하수관로 정비공사를 시행하였다.

「건설기술 진흥법」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내지 제90조 등에 따르면 건설업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 건설공사의 발주자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검토·확인을 받아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품질시험계획을 검토하여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건설업자로 하여금 보완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56조(품질관리비용의 계상 및 집행)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에 따라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품질관리비”라 한다)을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강북구청 등 3개 기관에서는 도로함물예방 노후하수관로 정비공사(2권역) 등 총 23개 공사(표 1)의 경우 품질시험계획수립 대상공사³³⁾로 계약상대자가 공사 착공 전에 품질시험계획을 제출하지 않았고 또한 품질시험계획을 제출하였으나 품질시험을 미 실시하였음에도 조치를 하지 않았다.

33) 품질시험계획 수립대상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9조(품질관리계획 등의 수립대상 공사) 제2항 총공사비 5억원 이상인 토목공사, 연면적이 66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총공사비가 2억원 이상인 전문공사

〈 표1. 품질시험계획 미제출 및 품질시험 미실시 공사현황 〉

구분	계	품질시험계획 미제출(단위 : 건)			품질시험계획 제출(단위 : 건)
		계	실시	미실시	미실시
계	23	18	4	14	5
강북구청	12	9	4	5	3
영등포구청	9	7	2	5	2
강동구청	2	2	-	2	0

또한 강북구청사거리주변 노후하수관로 정비공사(1구간) 등 총 21개 공사(표 2)의 경우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나, 품질관리비를 공사금액에 반영하지 아니하였다.

〈 표2. 품질관리비 미계상 공사 현황(단위:건) 〉

구분	계	강북구	영등포구	강동구
미계상 공사내역	21	13	6	2

강북구청사거리 주변 노후하수관로 정비공사(1구간) 등 총 32개 공사(표 3)의 경우 계약상대자로부터 착공계 접수시 품질시험계획을 제출받았으나 품질시험계획 내용을 검토하여 승인하는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 표3. 품질시험계획 미승인 공사 현황(단위:건) 〉

구분	계	강북구	영등포구	강동구
품질시험 미승인 공사내역	32	15	7	10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결과)

강북구청은 하수관로 공사 대부분의 자재들이 원형콘크리트흡관 및 단지관, 스틸그레이팅으로서 조달청 인증제품 등을 구매하여 사용하기 때문에 품질시험계획 제출 및 승인, 품질시험이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상기 공사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9조 및 시행규칙 제49조에서 규정한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는 공사³⁴⁾에 해당되지 않으며 또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1조 제1항 및 하수관거공사 표준시방서(환경부, 2010년)에 따르면 품질시험·검사는 건설공사 품질시험 기준에 의거 자재 외에도 되메우기 및 구조물 뒷채움, 보조기층, 휨강도 등 공종별로 품질시험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기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조치할 사항

강북구청장은

앞으로 동일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설기술 진흥법」 제55조 및 제56조,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내지 제91조를 숙지하여 직원교육 및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영등포구청장은

앞으로 동일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설기술 진흥법」 제55조 및 제56조,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내지 제91조를 숙지하여 직원교육 및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강동구청장은

앞으로 동일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설기술 진흥법」 제55조 및 제56조,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내지 제91조를 숙지하여 직원교육 및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34) 품질관리계획 등을 수립할 필요가 없는 공사(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49조) : 1. 조경식재공사, 2. (삭제) 3. 철거공사

감사위원회

주 의 요 구

제 목 : 예비준공검사 미실시

관 계 기 관 : 강북구청, 영등포구청, 강동구청

내 용

강북구청 등 3개 기관에서는 '15~'18년 현재까지 총 97건의 시비가 투입된 하수관로 신설 및 정비공사를 시행하였고 <표1>과 같이 건설사업 관리용역을 시행하였다.

<표1. 건설사업 관리용역 시행 공사 현황>

- 강북구 : 6건

계약명	차수	계약일자 준공일자	계약금액 (천원)	계약 방법	계약 유형	시공 업체명	감리업체
수유2배수분구 하수관거 종합정비공사 (2공구, 장기계속)	5차	2015/02/25 2015/11/30	1,658,525	제한 경쟁	종합	A업체	C업체
	6차	2016/03/17 2016/12/12	2,267,320				
수유2배수분구 하수관거 종합정비공사 (1공구, 장기계속)	5차	2015/02/25 2015/11/15	1,497,120	제한 경쟁	종합	B업체	
	6차	2016/03/15 2016/11/30	1,897,478				
수유2배수분구 하수관거 종합정비공사 (3공구, 장기계속)	5차	2015/02/25 2015/11/15	1,492,194	제한 경쟁	종합	A업체	
	6차	2016/03/15 2016/11/30	2,617,300				

- 영등포구 : 8건

계약명	차수	계약일자 준공일자	계약금액 (천원)	계약 방법	계약 유형	시공 업체명	감리업체
도림1배수분구 하수관로 종합정비공사 (5구역3블록)	1차	2014-06-11 2015-06-05	5,227,300	제한 경쟁	종합	D업체	G 업체
	2차	2015-03-20 2015-12-30	2,032,823				
	3차	2016-03-23 2016-12-30	912,969				

계 약 명	차수	계약일자 준공일자	계약금액 (천원)	계약 방법	계약 유형	시공 업체명	감리업체
도림1배수분구 하수관로 종합정비공사 (5구역 5블록)	1차	2014-06-12 2017-05-26	4,490,330	제한 경쟁	종합	E업체	
	2차	2015-03-20 2015-12-30	1,581,200				
	3차	2016-03-23 2016-12-30	1,253,500				
도림1배수분구 하수관로 정비공사(3구역)	5차	2015/02/25 2015/11/15	1,492,194	제한 경쟁	종합	F업체	
	6차	2016/03/15 2016/11/30	2,617,300				

- 강동구 : 16건

계 약 명	차수	계약일자 준공일자	계약금액 (천원)	계약 방법	계약 유형	시공 업체명	감리업체
성내배수분구 하수관거 종합정비(1블럭)	3차	2015-03-06 2015-12-31	1,403,754	제한 경쟁	종합	H업체	K업체
성내배수분구 하수관거 종합정비(2블럭)	1차	2015-06-16 2015-12-31	970,874	제한 경쟁	종합	I업체	
	2차	2016-03-03 2016-12-31	4,091,890				
성내배수분구 하수관거 종합정비(3블럭)	1차	2017-03-23 2017-12-31	2,806,500	제한 경쟁	종합	J업체	
둔촌로 하수암거 신설 공사(1공구)	1차	2015-04-02 2015-12-31	4,061,800	제한 경쟁	종합	L업체	G 업체
	2차	2016-02-29 2017-03-31	6,392,311				
	3차	2017-02-28 2018-05-15	8,690,336				
암사역 주변 하수암거 신설 공사(1공구)	1차	2015-12-07 2017-12-31	3,600,000	제한 경쟁	종합	M업체	O업체
	2차	2015-12-07 2017-09-30	1,512,800				
	3차	2017-02-17 2017-12-27	903,900				
암사역 주변 하수암거 신설 공사(2공구)	1차	2016-05-23 2017-09-28	2,198,900	제한 경쟁	종합	N업체	
	2차	2017-02-13 2018-05-31	2,637,600				
노후불량 하수관로 종합정비사업(1권역)	-	2017-05-19 2017-12-31	1,081,700	제한 경쟁	종합	P업체	T업체
노후불량 하수관로 종합정비사업(2권역)	-	2017-05-19 2017-12-31	1,298,160	제한 경쟁	종합	Q업체	
노후불량 하수관로 종합정비사업(3권역)	-	2017-05-24 2017-12-31	1,381,160	제한 경쟁	종합	R업체	
노후불량 하수관로 종합정비사업(4권역)	-	2017-05-18 2017-12-31	1,467,840	제한 경쟁	종합	S업체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6조 등에 따라 발주청은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소속직원으로서 하여금 예비준공검사를

시행 하고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준공 2개월 전에 준공기한 내 준공 가능여부 및 미진사항의 사전 보완을 위해 예비 준공검사를 실시토록 준비하고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8조 제2항에 따라 발주청은 건설공사의 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예비준공검사를 할 수 있고 준공검사를 하는 자는 예비준공검사시 지적된 사항의 시정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서울시는 「2013년 예비준공검사 이행실태 보고(문제점 분석 및 향후 개선대책 중심으로)」 [행정2부시장 방침 제27호('14.2.6.)]에 의거 5억원 이상 공사 및 5억 원 미만 주요 구조물 공사 등은 반드시 예비준공검사를 실시해야하며, 5억원 미만은 기관장(부서장) 책임 하에 대상규모 등을 정해서 시행하도록 하고 자체관리 전환에 따른 예비준공검사 이행실태 확인 및 점검을 해당기관 감사부서에서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① 강북구청 예비준공검사 부적정

그런데 강북구청은 '15~'18년 현재까지 준공한 5억원 이상 공사 중, '수유2배수분구 하수관거 종합정비공사(2공구, 5차)' 등 5건의 공사에 대해 예비준공검사를 시행하지 않았으며, 5억원 미만 공사에 대하여 예비준공검사 관련 방침을 수립하지 않아, 공사비 461백만원인 '삼양로117길 5 주변 노후 사각형거 개량공사'는 예비준공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공사비가 108백만원인 '노해로 119주변 하수관로 정비공사'는 예비준공검사를 시행하는 등 일관성 없이 업무를 추진하였다.

〈표2. 강북구 예비준공검사 미실시 현황〉

연번	연도	계약명	계약일자 준공일자	총계약금액 (천원)	건설관리 사업자	비고
1	2015	수유2배수분구 하수관거 종합정비공사(2공구, 장기계속 5차)	2015/02/25 2015/11/30	1,658,525	C업체	
2	2015	수유2배수분구 하수관거 종합정비공사(1공구, 장기계속 5차)	2015/02/25 2015/11/15	1,497,120		
3	2015	수유2배수분구 하수관거 종합정비공사(3공구, 장기계속 5차)	2015/02/25 2015/11/15	1,492,194		
4	2016	솔매로 노후하수관로 정비공사(1-5공구)	2016/04/28 2016/09/30	642,169	-	5억원 이상
5	2016	덕릉로 주변 노후하수관로 정비공사(2공구)	2016/04/07 2016/09/30	361,493	-	
6	2016	삼양로117길 5주변 노후사각형거 개량공사	2016/05/19 2016/10/31	460,603	-	
7	2017	도로함몰 예방 노후하수관로 정비공사(1권역)	2017/05/29 2017/12/27	972,818	-	5억원 이상
8	2017	미아동124-2 주변 외1개소 하수관로 정비공사(비굴착)	2017/10/27 2018/02/26	289,641	-	

또한 위 수유2배수분구 하수관거 종합정비공사(2공구 5차)등 3건의 경우,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시행하였으므로 용역사인 C업체는 준공 2개월 전에 준공기한 내 준공 가능여부 및 미진사항의 사전 보완을 위해 예비준공검사를 준비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건설사업 관리를 소홀히 하였다.

② 영등포구청 예비준공검사 부적정

영등포구청은 「2015년도 구민감사관 운영계획(감사담당관-19715, '14.12.29)」에서 도급비 1억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구민감사관 중 전문감사관이 예비준공검사를 하도록 계획을 수립(연간단가 제외)하였으나 도림1배수분구 하수관로 종합정비공사 5구역 3블록 1차 등 아래 3건의 공사 준공 시 예비준공검사를 시행하지 않았다.

〈표3. 영등포구 예비준공검사 미실시 현황〉

연번	연도	계약명	계약일자 준공일자	총계약금액 (천원)	건설관리 사업자	비고
1	2014	도림1배수분구 하수관로 종합정비공사(5구역3블록-1차)	2014-06-11 2015-06-05	5,227,300	G업체	
2	2014	도림1배수분구 하수관로 종합정비공사(5구역5블록 1차)	2014-06-12 2015-05-26	4,490,330	G업체	
3	2014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사각형거 개량공사	2014-10-07 2015-02-28	529,144		구민감사관 대상사업

또한 위 도림1배수분구 하수관로 종합정비공사(5공구3블럭 1차) 등 2건의 경우,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시행하였으므로 용역사인 G업체는 준공 2개월 전에 준공기한 내 준공 가능여부 및 미진사항의 사전 보완을 위해 예비준공검사를 준비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건설사업 관리를 소홀히 하였다.

③ 강동구청 예비준공검사 부적정

강동구청은 「건설공사 예비준공검사 전면 실시계획[강동구청장방침 제647호 ('12.10.12.)]」에 의거하여 5억 원 미만에 대해서도 모두 예비준공검사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15년~'18년 현재까지 준공한 공사 중, 성내배수분구 하수관거 종합정비사업(1블럭 3차) 등 아래 11건의 공사 준공 시 예비준공검사를 시행하지 않았다. 특히 성내배수분구 하수관거 종합정비 사업은 건설관리사업자인 K업체에서 예비준공검사원을 제출하였으나 예비준공 검사를 시행하지 않는 등

업무에 소홀하였다.

〈표2. 예비준공검사 미실시 현황〉

연번	연도	계약명	계약일자 준공일자	총계약금액 (천원)	건설사업 관리시행	비고
1	2015	성내배수분구 하수관거 종합정비사업(1블럭 3차)	2015-03-06 2015-12-31	1,403,754	K업체	K업체에서 예비준공검사를 제출하였으나 미실시
2	2015	성내배수분구 하수관거 종합정비사업(2블럭1차)	2015-06-16 2015-12-31	970,874		
3	2016	성내배수분구 하수관거 종합정비사업(2블럭2차)	2016-03-03 2016-12-31	4,091,890		
4	2017	성내배수분구 하수관거 종합정비사업(3블럭1차)	2017-03-23 2017-12-31	2,806,500		
5	2015	둔촌로 하수암거신설 공사(1공구-1차)	2015-04-02 2015-12-31	4,061,800	G업체	
6	2016	둔촌로 하수암거 신설 공사(1공구-2차)	2016-02-29 2017-03-31	6,392,311		
7	2015	암사역 주변 하수암거 신설공사(1공구-1차)	2015-12-07 2017-12-31	3,600,000	U업체	
8	2017	노후불량 하수관로 종합정비사업(1권역-천호)	2017-05-19 2017-12-31	1,081,700	V업체	
9	2017	노후불량 하수관로 종합정비사업(2권역-생내둔촌)	2017-05-19 2017-12-31	1,298,160		
10	2017	노후불량 하수관로 종합정비사업(3권역-명일길동)	2017-05-24 2017-12-31	1,381,160		
11	2017	노후불량 하수관로 종합정비사업(4권역-암사)	2017-05-18 2017-12-31	1,467,840		

또한 위 둔촌로 하수암거 신설 공사, 노후불량 하수관로 종합정비사업, 암사역 주변 하수암거 신설공사의 경우 모두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실시한 사업으로 용역사인 G업체 등 3개 업체에서는 준공 2개월 전에 준공기한 내 준공 가능여부 및 미진사항의 사전 보완을 위해 예비준공검사를 준비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건설사업 관리를 소홀히 하였다.

조치할 사항

강북구청장은

앞으로 예비준공검사와 관련하여 동일·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6조 및 제78조 및 「건설공사 예비준공검사 시행방법 개선³⁵⁾(기술심사담당관-10083, '18.6.28)」를 숙지하여 직원교육 및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영등포구청장은

앞으로 예비준공검사와 관련하여 동일·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6조 및 제78조 및 「건설공사 예비준공검사 시행방법 개선(기술심사담당관-10083, '18.6.28)」를 숙지하여 직원교육 및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강동구청장은

앞으로 예비준공검사와 관련하여 동일·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6조 및 제78조 및 「건설공사 예비준공검사 시행방법 개선(기술심사담당관-10083, '18.6.28)」를 숙지하여 직원교육 및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35) 본 감사기간('18.3.26~4.27) 이후 시 주관부서인 기술심사담당관에서 건설공사 예비준공검사와 관련 시행 방법 개선 시행하여 지적사항은 이전 지침에 의거 지적하고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새로운 지침반영

감 사 위 원 회

시 정 요 구

제 목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 부적정

관 계 기 관 : 강동구청

내 용

강동구청은 건설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애 예방을 위하여 '15년 암사역 주변 하수암거 신설공사(1공구) 등 10건의 공사 설계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반영하여 계약하고 아래와 같이 시행하였다.

〈표1. 공사현황〉

연번	연도	계약명	계약일자 준공일자	계약금액 (천원)	업체명
1	2015	암사역 주변 하수암거 신설공사(1공구-1차)	2015-12-07 2017-12-31	3,600,000	A업체
2	2015	암사역 주변 하수암거 신설공사(1공구-2차)	2015-12-07 2017-09-30	1,512,800	A업체
3	2017	암사역 주변 하수암거 신설공사(1공구-3차)	2017-02-17 2017-12-27	903,900	A업체
4	2016	암사역 주변 하수암거 신설공사(2공구-1차)	2016-05-23 2017-09-28	2,198,900	B업체
5	2015	2015년 관내 하수도구조물 정비공사	2015-03-24 2015-12-31	531,840	C업체
6	2016	2016년 관내 하수도 구조물 정비공사	2016-03-07 2016-12-31	40,000	D업체
7	2016	둔촌동 611-1~611-4일대 원형관로 보수보강공사	2016-08-26 2017-01-15	836,100	E업체
8	2016	성내로14길 주변 하수관로 개량공사	2016-03-28 2016-06-30	180,753	F업체
9	2017	노후불량 하수관로 종합정비사업(3권역 - 명일,길동)	2017-05-24 2017-12-31	1,381,160	G업체
10	2017	노후불량 하수관로 종합정비사업(4권역-암사)	2017-05-18 2017-12-31	1,467,840	H업체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이하 '사용기준')」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하여야 하고 사용기준 제7조 제2항³⁶⁾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할 수

36)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사용기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하고자 하는 항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별표 2의 사용불가 내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다.

없으며 수급인이 법 제30조제2항에 위반하여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안전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시공사에서 제출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지출내역 및 증빙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사용기준 제7조 제2항 별표2의 사용 불가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제외하고 정산하여야 한다.

그런데 강동구청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정산하면서 <표2>와 같이 「집행기준」 제7조 제2항 별표2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항목별 사용불가 내역을 총 29건, 15,129천원을 감액하지 않고 그대로 준공정산 하였다.

<표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부적정 항목>

공사명	업체명	사용일	부적정 사용비목	수량	단가	금액	부가세	총계	위반 항목
둔촌동 611-1~4 일대 원형관료 보수보강 공사	E업체	'16.10.07	안전조끼	10	34,000	340,000	34,000	374,000	3-나
		'16.12.27	안전조끼	50	14,000	700,000	70,000	770,000	3-나
		'16.12.27	가제손수건	200	1,200	240,000	24,000	264,000	3-나
		'16.12.5	PE펜스	16	15,000	240,000	24,000	264,000	2-가
		'16.12.2	안전펜스	10	15,000	150,000	15,000	165,000	2-가
		'16.12.27	디자인펜스	20	120,000	2,400,000	240,000	2,640,000	2-가
		'16.12.27	인조잔디패드	10	380,000	3,800,000	380,000	4,180,000	2-나
성내로14길 주변하수관로 개량공사	F업체	'16.4.30	안전테이프	5	25,000	125,000	12,500	137,500	2-나
2015 관내 하수도구조물 정비공사	C업체	'15.4.30	안전조끼	30	10,000	300,000	30,000	330,000	3-나
2016 관내 하수도구조물 정비공사	D업체	'16.4.11	안전조끼	10	10,000	100,000	10,000	110,000	3-나

1. 공사 도급내역서 상에 반영되어 있는 경우
2. 다른 법령에서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3. 작업방법 변경, 시설 설치 등이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일부 향상시킬 수 있는 경우라도 시공이나 작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 포함된 경우
4. 환경관리, 민원 또는 수방대비 등 다른 목적이 포함된 경우
5. 근로자의 근무여건 개선, 복리·후생 증진, 사기진작 등의 목적이 포함된 경우

공사명	업체명	사용일	부적정 사용비목	수량	단가	금액	부가세	총계	위반 항목
암사역주변하 수암거 신설공사 (1공구)	A업체	'16.1.26	안전조끼	20	8,000	160,000	16,000	176,000	3-나
		'16.1.26	햇팩	200	450	90,000	9,000	99,000	3-나
		'16.4.28	보온보냉물통	1	99,000	99,000	9,900	108,900	3-나
		'16.4.9	케이블타이	2	13,000	26,000	2,600	28,600	3-나
		'16.4.9	위험테이프	5	6,000	30,000	3,000	33,000	2-나
		'16.5.20	안전조끼	20	7,500	150,000	15,000	165,000	3-나
		'16.5.20	안전조끼	40	7,500	300,000	30,000	330,000	3-나
		'16.5.20	쿨도시	20	5,000	100,000	10,000	110,000	3-나
		'16.5.20	쿨도시	15	10,000	150,000	15,000	165,000	3-나
		'16.8.8	안전표지판	3	55,000	165,000	16,500	181,500	2-나
		'16.9.7	안전표지판	2	35,000	70,000	7,000	77,000	2-나
		'16.9.22	위험테이프	5	5,500	27,500	2,750	30,250	2-나
		'16.11.18	안전간판	4	50,000	200,000	20,000	220,000	2-나
		'17.3.11	안전테이프	2	5,500	11,000	1,100	12,100	2-나
'17.6.12	안전조끼	20	7,000	140,000	14,000	154,000	3-나		
노후불량 하수관로 종합정비사업 (3권역- 명일,길동)	G업체	'17.10.24	에어간판 (야간)	2	560,000	1,120,000	112,000	1,232,000	2-나
노후불량 하수관로 종합정비사업 (4권역-암사)	H업체	'17.10.31	안전유도등(쫄라)	2	350,000	700,000	70,000	770,000	2-나
		'17.10.31	안전에어지시등	2	560,000	1,120,000	112,000	1,232,000	2-나
		'17.11.30	안전유도등(쫄라)	2	350,000	700,000	70,000	770,000	2-나
					합계	13,753,500	1,375,350	15,128,850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결과)

강동구청(치수과)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사용기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으나, 별표 2의 사용불가 내역은 명확히 숙지하지 못하여 근로자의 안전 및 산업재해예방을 위하는 안전시설물로 판단하여 착오 정산하였음을 인정하였으나,

노후불량 하수관로 종합정비공사(3권역, 4권역)의 경우 시공사에서 제출한 산업 안전보건관리비 누계사용 금액이 설계된 금액을 초과하여 설계된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금액 범위 안에서 지급하여 준공 정산 시, 시공업체에서 지급 요청한 금액보다 과소 지급된 금액이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최종 과다 지급된 부분만 환수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강동구청 치수과의 의견에 따라 아래 두건의 공사에 대해서는 실제 과다 지급된 금액에 대하여 환수함이 타당하므로 정산 부적정 항목 중 준공시 실 지급금액에서 과소 지급된 금액을 제외하고 각각 843,344원 및 1,296,731원을 환수토록 하여야 할 것이다.

〈표3. 노후불량 하수관로 종합정비사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실제 과다 지급금액 산출〉

구 분	노후불량 하수관로 종합정비사업(3권역)	노후불량 하수관로 종합정비사업(4권역)
당초 누계 금액(시공사 요청) (㉑)	17,446,500원	20,412,000원
부적정 사용금액 (㉒)	1,232,000원	2,772,000원
변경 누계 금액 (㉓=㉑-㉒)	16,214,500원	17,640,000원
준공 시 실 지급액 (㉔)	17,057,844원	18,936,731원
실제 과다 지급금액 (㉕=㉔-㉓)	843,344원	1,296,731원

조치할 사항

강동구청장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재검토하여 과다하게 지급된 공사비 13,265천원을 환수하고, 앞으로 동일·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을 숙지하여 직원 교육 및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표4. 업체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수금액〉

공 사 명	업 체 명	환수금액
총 계		13,264,925원
둔촌동 611-1~4 일대 원형관로 보수보강 공사	E업체	8,657,000원
성내로14길 주변하수관로 개량공사	F업체	137,500원
2015 관내 하수도구조물 정비공사	C업체	330,000원
2016 관내 하수도구조물정비공사	D업체	110,000원
암사역주변 하수암거 신설공사(1공구)	A업체	1,890,350원
노후불량 하수관로 종합정비사업(3권역- 명일,길동)	G업체	843,344원
노후불량 하수관로 종합정비사업(4권역-암사)	H업체	1,296,731원

감사위원회

주 의 요 구

제 목 하수도관리전산시스템(GIS) 공사대장 입력 누락
관 계 기 관 영등포구청
내 용

영등포구청에서는 하수도 시설에 대한 설치 및 유지관리 업무처리 절차 등을 체계화하여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하수관로 관련 공사 시행 후 공사 정보를 하수도전산관리시스템(GIS)에 입력·관리해 오고 있다.

「하수도법」 제68조(장부의 기록·보존)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69조 등에 따르면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공공하수도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할 의무가 있고 공공하수도 관리대장의 현황서 및 도면의 기재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 지체 없이 이를 정정하여야 하며, 새로 하수관로를 정비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공공하수도 관리대장을 전산화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서울시 하수도 업무편람(2013) 제6장(하수관거 설계 및 시공)에 의하면 관리청에서 시행하는 모든 하수도공사 사업에 대하여 공사 착공 전까지 하수도전산관리시스템(GIS)상의 공사대장에 공사관련 자료를 입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영등포구청에서는 '15년도 7건, '16년도 3건, '17년도 1건 등 총 11건의 하수관로 공사를 시행하면서 하수도전산관리시스템(GIS)상의 공사대장에 공사자료를 입력하지 않았고, 그 결과 해당 공사에 대한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하는데 있어 지장을 초래하였다.

[표 2] 공사대장 누락 현황

연번	준공년도	계약명	준공일자	총계약금액 (단위: 천원)
1	2015	하수시설물 보수공사(연간)	2015-02-28	208,240
2	2015	빗물받이 및 연결관 준설공사(단가계약)	2015-02-28	109,000

연번	준공년도	계약명	준공일자	총계약금액 (단위: 천원)
3	2015	빗물받이 및 연결관 준설공사(연간단가)	2015-12-31	218,615
4	2015	영등포 7가 43-7~63-46호 간 하수관로 개량공사 (1차)	2015-12-30	676,390
5	2015	여의도 배수분구 하수관로 종합정비 사업	2016-06-04	835,180
6	2015	영등포구청사거리 주변등 노후 하수관로 개량공사(1공구)	2016-06-24	996,259
7	2015	영등포구청사거리 주변등 노후 하수관로 개량공사(2공구)	2016-07-22	1,552,210
8	2015	영등포 7가 43-7~63-46호 간 하수관로 개량공사 (2차)	2017-05-31	444,431
9	2016	2016년 하수시설물 보수공사(연간단가)	2016-12-23	155,877
10	2016	2016년 빗물받이 및 연결관 준설공사	2016-12-31	142,752
11	2016	2016년 관내 하수관로 준설공사	2016-12-31	338,299
12	2017	2017년 하수시설물 보수공사	2017-12-31	312,391

조치할 사항

영등포구청장은

앞으로 동일·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수도법」 제6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9조, 「서울시 하수도 업무편람(2013)」 등을 준수하여 적기에 하수도전산 관리시스템(GIS)에 입력될 수 있도록 직원교육 및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감 사 위 원 회

통보(모범사례)

제 목 설계변경을 통한 예산 절감

관 계 기 관 강동구청

모범 대상자(또는 모범부서) 치수과

모 범 내 용

강동구 치수과는 관내 노후 하수관로 정비를 위하여 '15.6.19.부터 '17.12.31.까지 “성내배수분구 하수관거 종합정비사업(2블록)” 공사를 수행하여, 관내 노후 하수도 6,732m(굴착개량 D600~1,500mm 구간 5,374m, 비굴착전체보수 D600~1,000mm 구간 1,358m)를 개량 및 보수하였다.

상기 공사구간 중 풍성로 보도구간 630m(D 600mm)는 당초 굴착을 통한 하수관로 개량으로 정비하도록 설계되었으나 해당 구간이 지상(가로수, 전주, 신호등)과 지하(통신관, 도시가스관 등)에 지장물이 산재하여 굴착 공사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굴착개량을 하게 되면 지장물의 이설에 따른 공사비 증가와 공사기간 연장이 불가피하여 보도구간에 대한 굴착공사로 인하여 통행하는 많은 시민들의 불편과 보도 대신 차도 이용에 대한 시민의 안전사고 우려가 되어 강동구청 치수과에서는 감리단과의 합동회의와 현장 여건 조사를 통하여 기존 굴착으로 설계되어 있는 부분을 비굴착 전체보수공법으로 설계 변경 및 시공하여 364,745천원의 공사비를 절감하고 시민의 안전사고 예방 및 통행 불편을 최소화하였다.



<그림 1. 풍성로 구간 위치도 및 지장물 현황>

<표 1. 설계변경 내역>

최초설계 - 굴착 개량		설계변경 - 비굴착 전체보수		비 고
순공사비 계	568,093,840원	순공사비 계	203,348,652원	
토공	82,079,818원	관로조사공	3,376,170원	
관로공	78,951,701원	전체보수공	45,578,004원	
구조물공	15,957,279원	합침튜브 제작	144,675,090원	
포장공	67,217,745원	라이닝 제작	586,664원	
가시설공	53,464,950원	관입구 마무리	466,674원	
부대공	270,422,347원	연결관 절단, 보수	2,423,720원	
-	-	부대공	6,242,330원	

조치할 사항(또는 조치사항)

강동구청장은

적극적인 자세로 예산절감하고 시민의 안전사고 예방 및 시민통행 불편을 최소화한 위 부서에 대해 표창하여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통보)

□ 총 평

- 2018년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건설근로자의 노임, 하도급대금 등의 체불 예방을 위하여 서울시에서 발주한 14개 공사현장에 대하여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 대부분의 현장은 하도급 관리, 건설기계 투입, 노무관리 등 분야별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적정하게 현장을 관리하고 있었으나,
 - 일부 공사현장에서는 노무비 지급기일 미준수, 근로계약서 작성 미흡,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미교부, 대금e바로 시스템 입력을 누락하는 등 현장관리가 미흡한 부분이 있었음
 -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 ▶ 노무비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하나 지급기일을 1일에서 최장 58일까지 지연지급 하였으며,
 - ▶ 공사현장에서 건설기계를 임차하여 사용하면서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 ▶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임대료 등 현황을 대금e바로시스템을 적용하도록 되어있음에도 관련 사항을 누락하거나 지연 입력한 사례가 있었음
- 향후, 서울시 공사현장의 건전한 하도급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 서울시에서 발주하는 공사현장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점검 및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 현장에서 지적된 사항은 보완 및 개선토록하고 관련된 모든 부서에 전파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임

□ 점검결과 처분요구 내역

연번	발주처 (부서)	처분요구 내용	처분유형	조치현황	비고
소 계			현지조치 (177건)		
1	도기 기반 시설본부 (토목부)	노무비 지급기일 미준수	현지조치 (1건)	관련자 교육실시	조치완료
2	도시기반 시설본부 (방재시설부)	노무비 지급기일 미준수	현지조치 (1건)	관련자 교육실시	조치완료
3	도시기반 시설본부 (방재시설부)	대금e바로시스템 미적용	현지조치 (6건)	관련자 교육실시	조치완료
4	도기 기반 시설본부 (토목부)	대금e바로시스템 미적용	현지조치 (3건)	관련자 교육실시	조치완료
5	도시기반 시설본부 (도시철도토 목부)	대금e바로시스템 선지급절차 미준수	현지조치 (4건)	관련자 교육실시	조치완료
6	도시기반 시설본부 (도시철도토 목부)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미교부	현지조치 (4건)	관련자 교육실시	조치완료
7	도시기반 시설본부 (방재시설부)	건설기계 계약서 미작성 및 지급보증 서 미교부	현지조치 (77건)	관련자 교육실시	조치완료
8	서울주택 도시공사 (위례사업부)	노무비 지급기일 미준수	현지조치 (1건)	관련자 교육실시	조치완료
9	서울주택 도시공사 (건축사업부)	노무비 지급기일 미준수	현지조치 (1건)	관련자 교육실시	조치완료
10	서울주택 도시공사 (건축사업부)	대금e바로시스템 미적용	현지조치 (21건)	관련자 교육실시	조치완료
11	서울주택 도시공사 (기반시설부)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미교부	현지조치 (3건)	관련자 교육실시	조치완료
12	서울주택 도시공사 (건축사업부)	건설기계 계약서 미작성 및 지급보증 서 미교부	현지조치 (55건)	관련자 교육실시	조치완료

점검결과 처분요구서(현지조치)

현 지 조 치 사 항

일련번호	1	부서·기관명	도시기반시설본부 가부	시행년도 (처분요구일)	'18. 11.
------	---	--------	----------------	-----------------	----------

제 목 : 노무비 지급기일 미준수(시정)

1. 내 용

○ 도시기반시설본부는 '10.3.22. A사 외 2개사(이하 '공동수급인'이라 한다)와 도급계약(준공 '20.8.31., 금액 191,524백만원)을 체결하여 “△△△△△ 건설공사”(이하 '이 건 공사'라 한다)를 시행하고 있으며,

'09.12.31. B사 외 1개사와 이 건 공사의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원수 '20.9.30., 금액 9,848백만원)을 체결하고 감독권한대행 업무를 수행토록 하고 있다.

한편, 공동수급인은 '10.11.1. 이 건 공사 중 “조경공사”(준공 '18.12.31., 금액 2,144백만원)에 대하여 C사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시행하고 있다.

○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제2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의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지급하도록 되어있다.

○ 그런데 이 건 공사의 하수급인은 강○○ 등 8명의 일용직근로자(직영 포함)들과 '18.3.24~'18. 8월까지 매월 10일에 임금을 지급하기로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였으나, 아래 [표 1]과 같이 매월 11~14일 기간 중 부정기적으로 임금을 지급하였다.

[표 1] 임금지급기일 미준수 내역

공사명	관련업체	임금 지급기일	실 지급일	초과일 수	비고
△△△△△ 건설공사	C사	매월 10일	매월 11~14일	1~4일	강○○ 등 8명

그 결과 하수급인과 근로자간 노무비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우려 및 노무비

지급 경로의 투명성 저해를 초래하였다.

2. 조치할 사항

○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건설일용근로자의 임금이 적기에 지급되도록 건설업자(수급인, 하수급인)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관계자(건설업자, 건설사업관리기술자, 공사관리관 등)에게 임금지급 방법 등 근로기준법 준수요령을 지도·교육하시기 바랍니다.

현 지 조 치 사 항

일련번호	2	부서·기관명	도시기반시설본부 나부	시행년도 (처분요구일)	'18. 11.
------	---	--------	----------------	-----------------	----------

제 목 : 노무비 지급기일 미준수(시정)

1. 내 용

○ 도시기반시설본부는 '17.8.31. A사 외 3개사(이하 '공동수급인'이라 한다)와 도급계약(준공 '19.12.31., 금액 20,562백만원)을 체결하여 “▽▽▽▽▽▽ 재생사업(공원 및 주차장)”(이하 '이 건 공사'라 한다)을 시행하고 있으며,

'16.8.26. B사 외 2개사와 이 건 공사의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원수 '19.3.15., 금액 1,706 백만원)을 체결하고 감독권한 대행업무를 수행토록 하고 있다.

한편, 공동수급인은 '17.10.31. 이 건 공사 중 “토공사 및 포장공사, 구조물공사”(준공 '19.2.27., 금액 5,698백만원)에 대하여 C사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시행하고 있다.

○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제2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의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지급하도록 되어있다.

○ 그런데 이 건 공사의 하수급인은 아래 [표 1]과 같이 강☆☆ 등 279명의 일용직 근로자들과 계약하면서 작성한 일용근로계약서에서 임금지급일을 기재하지 아니 하였으며, “하도급 대금지급 알림판”에는 임금지급 기일을 매월 15일로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매월 16~19일에 지급하였다.

그 결과 하수급인과 근로자간 노무비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우려 및 노무비 지급 경로의 투명성 저해를 초래하였다.

[표 1] 임금지급기일 미준수 내역

공사명	관련업체	임금 지급기일	실 지급일	초과일수	비고
▽▽▽▽▽▽ 재생사업	C사	매월 15일	매월 16~19일 ※계약서 미기재	1~4일	강☆☆ 등 279명

2. 조치할 사항

○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건설일용근로자 임금지급일을 적기에 지급되도록 건설업자(수급인, 하수급인)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관계자(건설업자, 건설사업관리기술자, 공사관리관 등)에게 임금지급 방법 등 근로기준법 준수 요령을 지도·교육하시기 바랍니다.

현 지 조 치 사 항

일련번호	3	부서·기관명	도시기반시설본부 나부	시행연도 (처분요구일)	'18. 11.
<p>제 목 : 대금e바로시스템 미적용(시정)</p> <p>1. 내 용</p> <p>○ 도시기반시설본부는 '17.8.22. A사 외 3개사(이하 '공동수급인'이라 한다)와 도급계약(준공 '19.12.31., 금액 20,562백만원)을 체결하여 “▽▽▽▽▽ 재생사업(공원 및 주차장)”(이하 '이 건 공사'라 한다)을 시행하고 있으며,</p> <p>'16.8.26. B사 외 2개사와 이 건 공사의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완수 '19.3.15., 금액 1,706백만원)을 체결하고 감독권한대행 업무를 수행토록 하고 있다.</p> <p>한편, 공동수급인은 '17.10.31. 이 건 공사 중 “토공사 및 포장공사, 구조물공사”(준공 '19.2.27., 금액 5,698백만원)에 대하여 C사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시행하고 있다.</p> <p>○ 「서울특별시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제7조의2(지급확인시스템의 적용 등)에 따르면 공사기간이 30일 이상인 모든 사업에 대하여 대금e바로시스템(지급확인시스템)을 적용하여야 하며, 발주자가 원도급자에게 건설공사 대가를 지급하기 이전에 이루어지는 원도급자, 하도급자, 노무자, 장비·자재업자 간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임대료, 자재대금 등의 지급에도 반드시 대금e바로시스템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수급인 및 하수급인은 대금e바로시스템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발주자·수급인·하수급인은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임대료, 자재대금 등이 적절하게 지급되도록 대금e바로시스템을 수시로 확인하도록 되어 있다.</p> <p>그리고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9조(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 및 업무내용) 제2항 제4호,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조(발주청,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시공자, 설계자의 기본임무) 제2항에 따르면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건설공사의 사업비 관리 등 기본임무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p> <p>또한 공사설명서('17. 7.) 10. 특기사항 23)하도급계약 및 하도급대금지급확인시스템</p>					

(대금e바로)운영 관련사항에 따르면, 이 건 공사는 제휴은행과 연계하여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적정 지급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서울시 대금e바로의 대상사업이며,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대금e바로를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장비·자재업체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그 내역을 발주자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 그런데 이 건 공사의 하수급인은 아래 [표 1]과 같이 '18. 4월분부터 같은 해 9월분까지 총 6회에 걸쳐 각 장비대여업자와 자재납품업자의 인명별 본인계좌를 구분·등록하지 아니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대금e바로시스템을 적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장비임대료, 자재대금 지급경로의 투명성을 떨어뜨리게 되었다.

[표 1] 대금e바로시스템 입력누락 등 적용미흡 내역

공사명	관련업체	대금e바로시스템 미적용 등	비고
▽▽▽▽▽ 재생사업	C사	장비와 자재 미구분 입력 또는 미등록	6건

2. 조치할 사항

○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공사대금은 대금e바로시스템을 적용하여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임대료, 자재대금 등으로 구분 지급토록 건설업자(수급인, 하수급인)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진행중인 모든 건설공사장의 공사관계자(건설업자, 건설사업관리기술자, 공사관리관 등)에 대하여 지도·교육(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현 지 조 치 사 항

일련번호	4	부서·기관명	도시기반시설본부 가부	시행연도 (처분요구일)	'18. 11.
<p>제 목 : 대금e바로시스템 미적용(시정)</p> <p>1. 내 용</p> <p>○ 도시기반시설본부는 '10.3.18. A사 외 2개사(이하 '공동수급인'이라 한다)와 도급계약(준공 '20.8.31., 금액 191,524백만원)을 체결하여 “△△△△△ 건설공사”(이하 '이 건 공사'라 한다)를 시행하고 있으며,</p> <p>'09.12.31. B사 외 1개사와 이 건 공사의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원수 '20.9.30., 금액 9,848백만원)을 체결하고 감독권한대행 업무를 수행토록 하고 있다.</p> <p>한편, 공동수급인은 '15.7.20. 이 건 공사 중 “철근공사”(준공 '18.12.31., 금액 15,560백만원)에 대하여 C사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시행하고 있다.</p> <p>○ 「서울특별시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제7조의2(지급확인시스템의 적용 등)에 따르면 공사기간이 30일 이상인 모든 사업에 대하여 대금e바로시스템(지급확인시스템)을 적용하여야 하며 발주자가 원도급자에게 건설공사 대가를 지급하기 이전에 이루어지는 원도급자, 하도급자, 노무자, 장비·자재업자 간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임대료, 자재대금 등의 지급에도 반드시 대금e바로시스템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p> <p>수급인 및 하수급인은 대금e바로시스템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발주자·수급인·하수급인은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임대료, 자재대금 등이 적절하게 지급되도록 대금e바로시스템을 수시로 확인하도록 되어 있다.</p> <p>그리고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9조(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 및 업무내용) 제2항 제4호,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조(발주청,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시공자, 설계자의 기본업무) 제2항에 따르면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건설공사의 사업비 관리 등 기본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p> <p>○ 그런데 이 건 공사의 하수급인은 아래 [표 1]과 같이 '18. 4월분부터 같은 해 6월분까지</p>					

건설기계 임차대금 각 27,900천원, 62,150천원, 24,800천원 등 계 114,850천원을 각 건설기계 대여업자 인명별 본인계좌로 구분 등록하지 아니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대금e바로시스템을 적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장비임대료 지급경로의 투명성을 떨어뜨리게 되었다.

[표 1] 대금e바로시스템 미적용 내역

공사명	관련업체	대금e바로시스템 미적용 등	비고
△△△△△ 건설공사	C사	장비별 구분입력 미이행	3건

2. 조치할 사항

○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공사대금은 대금e바로시스템을 적용하여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임대료, 자재대금 등으로 구분 지급토록 건설업자(수급인, 하수급인)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진행중인 모든 건설공사장의 공사관계자(건설업자, 건설사업관리기술자, 공사관리관 등)에 대하여 지도·교육(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현 지 조 치 사 항

일련번호	5	부서·기관명	도시기반시설본부 다부	시행연도 (처분요구일)	'18. 11.
<p>제 목 : 대금e바로시스템 선지급절차 미준수(시정)</p> <p>1. 내 용</p> <p>○ 도시기반시설본부는 '09.12.30. A사 외 1개사(이하 '공동수급인'이라 한다)와 도급계약(준공 '18.12.31., 금액 177,793백만원)을 체결하여 “▽▽▽▽▽ ▽▽▽ 3단계 921공구 건설공사”(이하 '이 건 공사'라 한다)를 시행하고 있으며,</p> <p>'09.11.16. B사와 이 건 공사의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원수 '18.12.31., 금액 6,369백만원)을 체결하고 감독권한대행 업무를 수행토록 하고 있다.</p> <p>한편, 공동수급인은 '15.9.26. 이 건 공사 중 “정거장 공중”(준공 '18.12.31., 금액 21,307백만원)에 대하여 C사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등 총 11개 업체와 각각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시행하고 있다.</p> <p>○ 「서울특별시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제7조의2(지급확인시스템의 적용 등)에 따르면 공사기간이 30일 이상인 모든 사업에 대하여 대금e바로시스템(지급확인시스템)을 적용하여야 하며 발주자가 원도급자에게 건설공사 대가를 지급하기 이전에 이루어지는 원도급자, 하도급자, 노무자, 장비·자재업자 간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임대료, 자재대금 등의 지급에도 반드시 대금e바로시스템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p> <p>수급인 및 하수급인은 대금e바로시스템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발주자·수급인·하수급인은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임대료, 자재대금 등이 적절하게 지급되도록 대금e바로시스템을 수시로 확인하도록 되어 있다.</p> <p>그리고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9조(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 및 업무내용) 제2항 제4호,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조(발주청,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시공자, 설계자의 기본임무) 제2항에 따르면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건설공사의 사업비 관리 등 기본임무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p> <p>또한 「서울특별시 대금e바로 운영지침」 제15조(하도급업체) 제2항에 따르면 하도급업체는</p>					

장비대금, 자재대금, 노무비를 선지급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먼저 장비대금, 자재대금, 노무비 지급내역을 대금e바로에 등록한 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 그런데 이 건 공사의 하수급인은 아래 [표 1]과 같이 '18. 5월분부터 같은 해 6월분까지 각 장비·자재대금 등 611,964천원, 노무비 202,042천원 등 계 814,006천원의 공사대금 선지급에 관한 구분·지급내역을 대금e바로에 누락하였다.

그리고 건축석공 공종의 하수급인은 '18. 4월분부터 같은 해 6월분까지 각 장비·자재대금 등 222,309천원, 노무비 142,470천원 등 계 364,779천원의 공사대금 선지급에 관한 구분·지급내역을 대금e바로에 누락하였다.

[표 1] 대금e바로시스템 입력누락 등 적용미흡 내역

공사명	관련업체	대금e바로시스템 미적용 등	비고
▽▽▽▽▽ ▽▽▽ 3단계 921공구 건설공사	C사	공사대금 선지급 내역 누락	2건
	D사		2건

그 결과 장비대금, 자재대금, 노무비 구분 지급내역을 대금e바로에 반영하여 공사대금을 선지급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누락함으로써 공사대금 지급경로의 투명성을 떨어뜨리게 되었다.

2. 조치할 사항

○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공사대금은 대금e바로시스템을 적용하여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임대료, 자재대금 등으로 구분 지급토록 건설업자(수급인, 하수급인)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진행중인 모든 건설공사장의 공사관계자(건설업자, 건설사업관리기술자, 공사관리관 등)에 대하여 지도·교육(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현 지 조 치 사 항

일련번호	6	부서·기관명	서울도시기반시설본부 다부	시행년도 (처분요구일)	18.10.
<p>제 목 :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미교부(시정)</p> <p>1. 내 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시기반시설본부는 '09.12.30. A사 외 1개사(이하 '공동수급인'이라 한다)와 도급 계약(준공 '18.12.31., 금액 177,793백만원)을 체결하여 “▽▽▽▽▽ ▽▽▽ 3단계 921공구 건설공사”(이하 '이 건 공사'라 한다)를 시행하고 있으며, '09.11.16. B사와 이 건 공사의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완수 '18.12.31., 금액 6,369백만원)을 체결하고 감독권한 대행업무를 수행토록 하고 있다.한편, 공동수급인은 '15.9.26. 이 건 공사 중 “정거장 공중”(준공 '18.12.31. 금액 21,307백만원)에 대하여 C사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시행하고 있다.○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 제1항에 따라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의 당사자는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의4(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면제 등)에 따르면 건설업자가 건설기계를 대여하고 대여계약 금액이 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건설업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또는 발주자가 대여업자에게 그 대금을 직접 지급한다는 직불합의서(이하 '직불합의서'라 함)를 교부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건 공사의 하수급인은 '18.4.13 ~ '18.8.25 기간 동안 아래 [표 1]과 같이 건설기계를 임차하여 사용하면서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또는 직불합의서)를 교부하지 않았다. <p>그 결과 하수급인과 건설기계 대여업자간 대여대금에 대한 분쟁 및 그에 따른 건설기계 대여업자의 대여대금이 보호 받지 못할 우려를 초래하였다.</p>					

[표 1]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미교부 내역

연번	건설업자	건설기계	임대업체명	대여기간	임차금액 (천원)	보증서
1	C사	굴삭기	\$\$건설중기 외 3개사	'18.4.13~ '18.8.25	64,000	미교부 4건

2. 조치할 사항

○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건설업자(수급인, 하수급인)로 하여금 건설기계 임대차 지급보증서(또는 직불합의서)를 교부하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진행 중인 모든 건설공사현장의 공사관계자(건설업자, 건설사업관리기술자, 공사관리관 등)에 대하여 관련 법령 준수 및 이행 여부를 점검하도록 지도·교육(감독)을 철저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현 지 조 치 사 항

일련번호	7	부서·기관명	도시기반시설본부 나부	시행년도 (처분요구일)	'18. 11.
<p>제 목 :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 및 지급보증서 미교부(시정)</p> <p>1. 내 용</p> <p>○ 도시기반시설본부는 '13.5.27. A사 외 2개사(이하 '공동수급인'이라 한다)와 도급계약(준공 '19.6.30., 금액 101,841백만원)을 체결하여 “●● ●●●●●●●● 등 방재시설 확충공사”(이하 '이 건 공사'라 한다)를 시행하고 있으며,</p> <p>'13.1.7. B사 외 4개사와 이 건 공사의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완수 '19.6.30. 금액 3,328백만원)을 체결하고 감독권한 대행업무를 수행토록 하고 있다.</p> <p>한편, 공동수급인은 '14.6.11. 이 건 공사 중 “수직구 및 터널공사(1공구)”(준공 '18.8.31, 금액 22,606백만원)에 대하여 C사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등 총 13개 업체와 각각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시행하고 있다.</p> <p>○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건설기계 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 제1항에 따르면 계약당사자간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을 작성하여야 하며,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제1항 및 제6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의4(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면제 등)에 따르면 건설업자가 건설기계를 대여하고 해당 대여계약 금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건설업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또는 발주자가 대여 업자에게 그 대금을 직접 지급한다는 직불합의서(이하 '직불합의서'라 함)를 교부하여야 한다.</p> <p>○ 그런데 이 건 공사와 관련하여 하수급인 C사 등 5개사는 '18.1.5 ~ '18.8.31. 까지 굴삭기 등의 건설기계를 아래 [표 1]과 같이 사용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또는 직불합의서)를 교부하지 않았다.</p>					

[표 1] 건설기계 계약서 및 지급보증서 미교부 내역

연번	건설업자	건설기계	임대업체명	대여기간	임차금액 (천원)	내 용	
						계약서	보증서
소 계(총 77건)						미작성 27건	미교부 50건
1	C사	굴삭기 외 15종	○○○개발 외 24개사	'17.3.1~ '18.9.30	271,941	미작성 23건	미교부 7건
2	D사	지게차	◆◆◆◆중기 외 1개사	'18.7.12~ '18.7.31	418	-	미교부 2건
3	E사	지게차 외 1종	★★★★ 외 1개사	'18.3.10~ '18.7.31	8,800	-	미교부 3건
4	F사	굴삭기 외 3종	□□□□ 외 4개사	'18.2.8~ '18.10.30	41,504	미작성 1건	미교부 5건
5	G사	지게차 외 9종	■■■■■ 외 22개사	'18.3.1~ '18.12.31	639,182	미작성 3건	미교부 33건




그 결과 하수급인과 건설기계 대여업자간 대여대금에 대한 분쟁 및 그에 따른 건설기계 대여업자의 대여대금이 보호 받지 못할 우려를 초래하였다.

2. 조치할 사항

○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건설업자(공동수급인, 하수급인)로 하여금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및 지급보증서(또는 직불합의서)를 교부토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설공사장의 공사관계자(건설업자, 건설사업관리기술자, 공사관리관 등)에 대하여 관련 법령 준수 및 이행여부를 점검하도록 지도·교육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현 지 조 치 사 항

일련번호	8	부서·기관명	서울주택도시공사 가부	시행년도 (처분요구일)	'18. 11.
<p>제 목 : 노무비 지급기일 미준수(시정)</p> <p>1. 내 용</p> <p>○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발주자'라 한다)는 '15. 12. 10. A사 외 1개사(이하 '공동수급인'이라 한다)와 도급계약(준공 '19. 7. 10., 금액 62,266백만원)을 체결하여 “   택지개발사업 단지조성공사(3공구)”(이하 '이 건 공사'라 한다)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 건 공사의 건설사업관리 업무는 서울주택도시공사(위례사업부)에서 직접 수행하고 있다.</p> <p>한편, 공동수급인은 '16. 8. 22. 이 건 공사 중 “하천공사”(준공 '19.7.10, 금액 1,988백만원)에 대하여 B사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등 총 10개 업체와 각각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시행하고 있다.</p> <p>○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제2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의 임금을 매 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지급하도록 되어있다.</p> <p>○ 그런데 이 건 공사의 하수급인 등은 아래 [표 1]과 같이 강○○ 등 242명의 일용직근로자(직영 포함)들과 '18. 1월 ~ 8월까지 일용근로계약서를 체결하면서 임금 지급일을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며, “하도급 대금지급 알림판”에는 임금지급 기일을 매월 5일에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매월 10~27일에 지급하는 등 일정한 날짜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p> <p>그 결과 하수급인과 근로자간 노무비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우려 및 노무비 지급 경로의 투명성 저해를 초래하였다.</p>					

[표 1] 임금지급기일 미준수 내역

공사명	관련업체	임금 지급기일	실 지급일	초과일수	비고
♀♀ ♀♀♀♀ 택지개발 사업 단지조성공사(3공구)	B사	매월 5일 ※계약서 미기재	매월 10~13일	5~8일	강○○ 등 207명
	C사		매월 11~27일	6~22일	박○○ 등 32명
	D사		매월 13일	8일	고○○ 등 3명

2. 조치할 사항

○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은

건설일용근로자의 임금이 적기에 지급되도록 건설업자(수급인, 하수급인)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관계자(건설업자, 공사관리관 등)에게 임금지급 방법 등 근로기준법 준수요령을 지도·교육하시기 바랍니다.

현 지 조 치 사 항

일련번호	9	부서·기관명	서울주택도시공사 나부	시행년도 (처분요구일)	'18. 11.
------	---	--------	----------------	-----------------	----------

제 목 : 노무비 지급기일 미준수(시정)

1. 내 용

○ 서울주택도시공사는 '17. 11. 15. A사 외 2개사(이하 '공동수급인'이라 한다)와 도급계약(준공 '20.4.29., 금액 71,970백만원)을 체결하여 “◆◆◆◆◆개발지구 A1-13단지 공동주택조성공사”(이하 '이 건 공사'라 한다)를 시행하고 있으며, 발주자는 '17. 10. 31. B사 외 6개사와 이 건 공사의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완수 '20.7.14., 금액 4,997백만원)을 체결하고 감독권한 대행업무를 수행토록 하고 있다.

한편, 공동수급인은 '17.11.30. 이 건 공사 중 “토공사”(완수 '20.4.29, 금액 3,731백만원)에 대하여 C사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등 총 11개 업체와 각각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시행하고 있다.

○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제2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의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지급하도록 되어있다.

○ 그런데 이 건 공사의 하수급인은 아래 [표 1]과 같이 '18.3.~'18. 6. 기간 중 근로한 김♠♠ 등 6명의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을 약정된 임금지급일인 매월 말일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3월분 임금을 5. 28일 지급하고, 4월, 6월분 임금을 각각 6.1일, 8.2일 지급하는 등 매월 일정한 날짜에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표 1] 임금지급기일 미준수 내역

공사명	관련업체	임금 지급기일	실 지급일	초과일수	비고
◆◆◆◆◆개발지구 A1-13단지 공동주택조성공사	C사	매월 말일	익월 1~2일	1~2일	김♠♠ 등 3명
	D사		익익월 1~28일	31~58일	김♠♠ 등 3명

그 결과 하수급인과 근로자간 노무비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우려 및 노무비 지급 경로의 투명성 저해를 초래하였다.

2. 조치할 사항

○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은

건설일용근로자의 임금이 적기에 지급되도록 건설업자(수급인, 하수급인)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관계자(건설업자, 건설사업관리기술자, 공사관리관 등)에게 임금지급 방법 등 근로기준법 준수요령을 지도·교육하시기 바랍니다.

현 지 조 치 사 항

일련번호	10	부서·기관명	서울주택도시공사 나부	시행연도 (처분요구일)	'18. 11.
<p>제 목 : 대금e바로시스템 미적용(시정)</p> <p>1. 내 용</p> <p>○ 서울주택도시공사는 '17.12.1. A사 외 2개사(이하 '공동수급인'이라 한다)와 도급계약(준공 '20.8.14., 금액 52,780백만원)을 체결하여 “◇◇◇◇개발지구 A1-3단지 공동주택 건설공사”(이하 '이 건 공사'라 한다)를 시행하고 있으며,</p> <p>'17.12.28. B사 외 1개사와 이 건 공사의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완수 '20.9.19., 금액 3,256백만원)을 체결하고 감독권한대행 업무를 수행토록 하고 있다.</p> <p>한편, 공동수급인은 '18.5.4. 이 건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준공 '20.5.23., 금액 13,130백만원)에 대하여 C사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등 총 11개 업체와 각각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시행하고 있다.</p> <p>○ 「서울특별시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제7조의2(지급확인시스템의 적용 등)에 따르면 공사기간이 30일 이상인 모든 사업에 대하여 대금e바로시스템(지급확인시스템)을 적용하여야 하며 발주자가 원도급자에게 건설공사 대가를 지급하기 이전에 이루어지는 원도급자, 하도급자, 노무자, 장비·자재업자 간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임대료, 자재대금 등의 지급에도 반드시 대금e바로시스템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p> <p>수급인 및 하수급인은 대금e바로시스템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발주자·수급인·하수급인은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임대료, 자재대금 등이 적절하게 지급되도록 대금e바로시스템을 수시로 확인하도록 되어 있다.</p> <p>그리고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9조(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 및 업무내용) 제2항 제4호,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조(발주청,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시공자, 설계자의 기본임무) 제2항에 따르면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건설공사의 사업비 관리 등 기본임무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p> <p>○ 그런데 이 건 공사의 하수급인은 아래 [표 1]과 같이 '18. 7월분 타설작업 근로자 10명에</p>					

대한 노무비 2,280천원, 철근작업 근로자 11명에 대한 노무비 9,975천원 등
 계 12,255천원을 각 근로자 인명별 본인계좌가 아닌 일반계좌 이체를 통하여 일괄
 지급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대금e바로시스템을 적용하지 아니함으로써 노무비
 지급경로의 투명성을 떨어뜨리게 되었다.

[표 1] 대금e바로시스템 미적용 내역

공사명	관련업체	대금e바로시스템 미적용 등	비고
◇◇◇◇개발지구 A1-3단 지 공동주택건설공사	C사	노무비 일반계좌로 입금	21건

2. 조치할 사항

○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은

공사대금은 대금e바로시스템을 적용하여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임대료, 자재대금 등으로
 구분 지급토록 건설업자(수급인, 하수급인)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진행중인 모든 건설공사장의 공사관계자(건설업자, 건설사업관리기술자,
 공사관리관 등)에 대하여 지도·교육(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현 지 조 치 사 항

일련번호	11	부서·기관명	서울주택도시공사 다부	시행년도 (처분요구일)	18. 11.
<p>제 목 :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미교부</p> <p>1. 내 용</p> <p>○ 서울주택도시공사는 '17.07.06. A사 외 1개사(이하 '공동수급인'이라 한다)와 도급계약을 체결(준공 '20.01.10., 금액 35,368백만원)하여 “ㄱㄱ ㄱㄱㄱㄱ 개설회사”(이하 '이 건 공사'라 한다)를 시행하고 있으며,</p> <p>'18.6.16. B사 외 2개사와 이 건 공사의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을 체결(완수 '20.02.03., 금액 2,030백만원)하고 감독권한 대행업무를 수행토록 하고 있다.</p> <p>한편, 공동수급인은 '18.1.8. 이 건 공사 중 “토목공사”(준공 '20.1.10, 금액 1,588백만원)에 대하여 C사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 하여 공사를 시행하고 있다.</p> <p>○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건설기계 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 제1항에 따르면 계약당사자간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을 작성하여야 하며,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제1항 및 제6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의4(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면제 등)에 따르면 건설업자가 건설기계를 대여하고 해당 대여계약 금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건설업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또는 발주자가 대여 업자에게 그 대금을 직접 지급한다는 직불합의서(이하 '직불합의서'라 함)를 교부하여야 한다.</p> <p>○ 그런데 이 건 공사의 하수급인은 아래 [표 1]과 같이 건설기계 대여업자들로부터 건설기계를 임차하였으나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또는 직불합의서)를 정당한 사유 없이 교부하지 않았다.</p>					

[표 1] 건설기계 계약서 및 지급보증서 미교부 내역

연번	건설업자	건설기계	임대업체명	대여기간	임차금액 (천원)	계약서 및 보증서
1	C사	굴삭기 외 1종	♡♡♡♡중기 외 2개사	'18.1.4~ '18.12.31	62,711	미교부 3건

그 결과 하수급인과 건설기계 대여업자간 대여대금에 대한 분쟁 및 그에 따른 건설기계 대여업자의 대여대금이 보호 받지 못할 우려를 초래하였다.

2. 조치할 사항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은

건설업자(공동수급인, 하수급인)로 하여금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및 지급보증서(또는 직불합의서)를 교부토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설공사장의 공사관계자(건설업자, 건설사업관리기술자, 공사관리관 등)에 대하여 관련 법령 준수 및 이행여부를 점검하도록 지도·교육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현 지 조 치 사 항

일련번호	12	부서·기관명	서울주택도시공사 나부	시행년도 (처분요구일)	'18. 11.
<p>제 목 :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 및 지급보증서 미교부(시정)</p> <p>1. 내 용</p> <p>○ 서울주택도시공사는 '18.2.27. A사 외 2개사(이하 '공동수급인'이라 한다)와 도급계약 (준공 '20.8.14. 금액 52,780백만원)을 체결하여 “◇◇◇◇개발지구 A1-3단지 공동주택 건설공사”(이하 '이 건 공사'라 한다)를 시행하고 있으며,</p> <p>'18.1.1. B사 외 1개사와 이 건 공사의 책임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원수 '20.9.19., 금액 3,256백만원)을 체결하고 감독권한 대행업무를 수행토록 하고 있다.</p> <p>한편, 공동수급인은 '18.4.20. 이 건 공사 중 “토공사 및 가시설공사”(준공 '20.5.23. 금액 3,480백만원)에 대하여 C사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시행 하고 있다.</p> <p>○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건설기계 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 제1항에 따르면 계약당사자 간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을 작성하여야 하며,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 제1항 및 제6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의4(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면제 등)에 따르면 건설업자가 건설기계를 대여하고 해당 대여계약 금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건설업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또는 발주자가 대여업자에게 그 대금을 직접 지급한다는 직불합의서(이하 '직불합의서'라 한다)를 교부하여야 한다.</p> <p>○ 그런데 이 건 공사의 하수급인은 '18.4.20 ~ '18.8.30.까지 덤프트럭을 아래 [표 1]과 같이 사용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또는 직불합의서)를 교부하지 않았다.</p>					

[표 1] 건설기계 계약서 및 지급보증서 미교부 내역

연번	건설업자	건설기계	임대업체명	대여기간	임차금액 (천원)	보증서
1	C사	덤프트럭	(주)▼▼토건	'18.4.26~ '18.8.30	205,056	미교부 55건

그 결과 하수급인과 건설기계 대여업자간 대여대금에 대한 분쟁 및 그에 따른 건설기계 대여업자의 대여대금이 보호 받지 못할 우려를 초래하였다.

2. 조치할 사항

○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은

건설업자(공동수급인, 하수급인)로 하여금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및 지급보증서(또는 직불합의서)를 교부토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설공사장의 공사관계자(건설업자, 건설사업관리기술자, 공사관리관 등)에 대하여 관련 법령 준수 및 이행여부를 점검하도록 지도·교육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